

연구보고 2015-22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최은영 이진화 김승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유아교육정책 성과와 과제’는 2010년부터 수행되어 온 연속과제로서 유아교육 관련 통계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을 누적적으로 제시하여 최근 유아교육정책 변동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유아교육정책의 주된 이슈인 정책 현안을 심층분석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자료를 통해 유아교육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심층 주제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현황과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하여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가 최근 유아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아교육 질적 수준의 향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 의견을 개진해주신 시·도 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앙아동보호센터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1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2
4. 연구의 배경	15
II. 중앙정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	17
1. 유치원 설치와 이용	17
2. 유아학비 지원	31
3. 유치원 교원	33
4. 유치원 평가	44
5. 방과후 과정 운영	46
6.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48
7.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50
8. 유아교육 재정	52
9. 주요 지표별 현황 및 소결	56
III. 시·도 교육청 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62
1. 시·도 교육청의 자체사업	62
2.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78
3. 소결	80
IV. 유아교육정책 심층분석: 유치원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	81
1. 아동학대 개념 및 제도	81
2.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	98
3. 소결	123

V. 논의 및 제언	127
1. 유아교육정책의 향후 방향 및 과제	127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133
3. 결어	140
참고문헌	142
부록	153
부록 1. 시·도별 지역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사업 예산(2015)	155
부록 2. 유치원 아동학대 인식조사표(교직원용)	183
부록 3. 유치원 아동학대 인식조사표(학부모용)	192
부록 4. 아동학대 관련 심층면담 분석 내용	200

표 차례

〈표 I-3- 1〉 면담 참여자 정보 및 내용(교직원 및 학부모)	12
〈표 I-3- 2〉 FGI(집단심층면담) 내용	13
〈표 I-3- 3〉 응답자 배경: 교직원/학부모	14
〈표 I-3- 4〉 교직원 및 학부모 설문조사 내용	14
〈표 I-3- 5〉 참여자 정보 및 내용	15
〈표 I-4 1〉 연도별 연구내용 및 심층분석 주제	16
〈표 II-1- 1〉 시·도별 유치원 수 현황: 2014	17
〈표 II-1- 2〉 유치원 수 추이: 2005-2014	19
〈표 II-1- 3〉 유치원 학급 수 현황: 2014	21
〈표 II-1- 4〉 유치원 학급 수 추이: 2005-2014	22
〈표 II-1- 5〉 연령별 유치원 취원율: 2014	24
〈표 II-1- 6〉 시·도별/설립유형별 원아 수: 2014	25
〈표 II-1- 7〉 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 2005-2014	27
〈표 II-1- 8〉 유치원 취원율 변화 추이: 2005-2014	28
〈표 II-1- 9〉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2010-2014	29
〈표 II-1-10〉 공립유치원 현황 연도별 변화 추이	30
〈표 II-2- 1〉 2014년 유아학비 지원 체계	31
〈표 II-2- 2〉 2014년 유아학비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31
〈표 II-2- 3〉 3-5세 유아학비 지원 현황: 2014	32
〈표 II-3- 1〉 시·도의 설립유형별 교원 수: 2014	34
〈표 II-3- 2〉 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 및 교원 1인당 원아 수 추이: 2005-2014	35
〈표 II-3- 3〉 연령별 유치원 교원 수: 2014	36
〈표 II-3- 4〉 직위별 유치원 교원: 2014	37
〈표 II-3- 5〉 수석교사 분포 현황: 2014	37
〈표 II-3- 6〉 유치원 직위별 교원 수 추이: 2005-2014	38
〈표 II-3- 7〉 자격별 유치원 교원: 2014	38
〈표 II-3- 8〉 자격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 2005-2014	39
〈표 II-3- 9〉 경력별 유치원 교원 수: 2014	40

〈표 II-3-10〉 시·도별 교원 학력 분포 현황: 2014	41
〈표 II-3-11〉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교사 비율 추이: 2005-2014	42
〈표 II-3-12〉 연수 이수 교원 현황: 2014	42
〈표 II-4- 1〉 유치원 평가 추진 현황	45
〈표 II-5- 1〉 시·도별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2014	46
〈표 II-5- 2〉 방과후 과정 운영·이용률 추이: 2005-2014	47
〈표 II-6- 1〉 유아교육진흥원·체험교육원(체험센터) 수 및 이용률: 2014	48
〈표 II-6- 2〉 유아교육진흥원·체험교육원(체험센터) 수 및 이용률 추이: 2009-2014	49
〈표 II-7- 1〉 협력 네트워크 현황: 2014	50
〈표 II-7- 2〉 협력 네트워크 현황 추이: 2010-2014	51
〈표 II-8- 1〉 유아교육 지원 사업 구분	53
〈표 II-8- 2〉 2014년도 시·도별 유아교육 재정: 2014년 결산	54
〈표 II-8- 3〉 항목별 예산: 2010-2014	54
〈표 II-8- 4〉 유아 1인당 교육예산: 2010-2014	56
〈표 II-9- 1〉 주요 유아교육 지표: 2010-2014	57
〈표 III-1- 1〉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별 사업 예산: 2015	62
〈표 III-1- 2〉 시·도 교육청 사업: 교직원 운용	63
〈표 III-1- 3〉 시·도 교육청 사업: 교육활동 지원	66
〈표 III-1- 4〉 시·도 교육청 사업: 유아교육비 지원	76
〈표 III-1- 5〉 시·도 교육청 사업: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77
〈표 III-2- 1〉 17개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예산: 2010-2015	78
〈표 IV-1- 1〉 아동학대 유형과 그 적용 법규	88
〈표 IV-1- 2〉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91
〈표 IV-2- 1〉 아동학대의 이해 - 신체학대	99
〈표 IV-2- 2〉 아동학대의 이해 - 정서학대	101
〈표 IV-2- 3〉 아동학대의 이해 - 방임	103
〈표 IV-2- 4〉 아동학대의 이해 - 성학대	104
〈표 IV-2- 5〉 아동학대의 이해 - 유치원	106
〈표 IV-2- 6〉 유치원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인식	108
〈표 IV-2- 7〉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순위 응답)	109
〈표 IV-2- 8〉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110

〈표 IV-2- 9〉 신고의무 대상자로서 교사의 적합성	111
〈표 IV-2-10〉 교사가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111
〈표 IV-2-11〉 신고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및 경로	112
〈표 IV-2-12〉 아동학대 목격 여부 및 목격 시 아동학대 유형	112
〈표 IV-2-13〉 아동학대 행위자	113
〈표 IV-2-14〉 아동학대 조치(중복응답)	113
〈표 IV-2-15〉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114
〈표 IV-2-16〉 원장, 경찰, 기관의 조치	114
〈표 IV-2-17〉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치	115
〈표 IV-2-18〉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 필요한 사항	115
〈표 IV-2-19〉 아동학대 신고 증가의 원인	116
〈표 IV-2-20〉 아동학대예방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 경험	116
〈표 IV-2-21〉 1년 동안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 횟수 및 1회당 평균 참여 시간	117
〈표 IV-2-22〉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알게 된 정도	117
〈표 IV-2-23〉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기관(중복 응답)	118
〈표 IV-2-24〉 향후 학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의향	119
〈표 IV-2-25〉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종류	119
〈표 IV-2-26〉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119
〈표 IV-2-27〉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120
〈표 IV-2-28〉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일	120
〈표 IV-2-29〉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유치원 CCTV설치에 대한 의견	121
〈표 IV-2-30〉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와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122

그림 차례

[그림 II-1- 1] 시·도별 유치원 수 현황: 2014	18
[그림 II-1- 2] 유치원 수 추이: 2005-2014	20
[그림 II-1- 3] 전국 시·도별 국·공립/사립 학급 비율: 2014	21
[그림 II-1- 4] 유치원 학급 수 추이: 2005-2014	23
[그림 II-1- 5] 시·도별 연령별 취원율: 2014	25
[그림 II-1- 6] 시·도별/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2014	26
[그림 II-1- 7] 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 2005-2014	27
[그림 II-1- 8] 유치원 취원아 및 취원율 추이: 2005-2014	28
[그림 II-3- 1] 설립유형별 교원 1인당 원아 수 추이: 2005-2014	35
[그림 II-3- 2] 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원 연령 분포: 2014	36
[그림 II-3- 3] 경력별 유치원 교원 분포: 2014	40
[그림 II-3- 4] 16개 시·도별 교원 학력 분포: 2014	41
[그림 II-3- 5]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교사 비율 추이: 2005-2014	42
[그림 II-8- 1] 항목별 예산 추이: 2010-2014	55
[그림 II-9- 1] 유치원 이용률 추이: 2010-2014	58
[그림 II-9- 2] 유아교육 재정 변화 추이: 2010-2014	59
[그림 II-9- 3] 유아학비 지원을 추이: 2010-2014	59
[그림 II-9- 4] 교사근무 여건: 2010-2014	60
[그림 II-9- 5]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률 추이: 2010-2014	60
[그림 II-9- 6] 유아교육 지원체계 현황: 2010-2014	61
[그림 III-2- 1] 17개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예산 추이: 2010-2015	79
[그림 IV-1- 1] 아동학대 발생 처리 요령(3단계)	90
[그림 IV-1- 2]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처리 절차 ..	93
[그림 IV-1- 3] 네덜란드 아동학대 및 방임 행정 관리 체계	98
[그림 IV-2- 1]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	109
[그림 IV-2- 2]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사항	110
[그림 IV-2- 3] 신고의무대상자로서의 교사 적합성 여부와 부적합성이유	111
[그림 IV-2- 4]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한 아동학대 인지 정도	118

[그림 IV-2- 5]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일 ...	121
[그림 IV-2- 6]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부정적 의견	122
[그림 IV-3- 1]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	123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III-1- 1〉 서울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55
〈부록 표 III-1- 2〉 부산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56
〈부록 표 III-1- 3〉 대구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57
〈부록 표 III-1- 4〉 인천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58
〈부록 표 III-1- 5〉 광주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59
〈부록 표 III-1- 6〉 대전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60
〈부록 표 III-1- 7〉 울산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61
〈부록 표 III-1- 8〉 경기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62
〈부록 표 III-1- 9〉 강원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65
〈부록 표 III-1-10〉 충북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67
〈부록 표 III-1-11〉 충남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69
〈부록 표 III-1-12〉 전북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71
〈부록 표 III-1-13〉 전남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74
〈부록 표 III-1-14〉 경북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79
〈부록 표 III-1-15〉 경남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80
〈부록 표 III-1-16〉 제주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182

요 약

1. 서론

- 본 연구는 2014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수집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심층분석이 필요한 유아교육정책 관련 사안을 분석하여 향후 유아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4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유아교육정책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성과를 진단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며, 심층 주제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유치원 일반 현황 및 중앙정부의 유아교육 사업별 현황을 파악한 후 2005-2014년의 누적 자료를 통해 정책 추이를 확인하고, 국제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분석함.
 -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사업과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2015년 예산집행 성격별로 살펴봄으로써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현황을 파악함.
 - 심층분석 주제로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을 분석하여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분석, 설문 및 면담조사,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함.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내부자료 및 시·도 교육청 보고자료 등 관련 문헌을 분석함.
 -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유치원 교직원(유치원장, 교사 등) 및 학부모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함.

- 유치원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함.
- 연구방향 설정, 설문지 내용 및 문항 검토, 정책제언 관련 자문 등을 위해 유아교육현장 및 학계전문가 대상의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유아교육정책 관련 정보 수집과 연구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함.

2. 중앙정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

- 2014년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교원, 유치원 평가, 방과후 과정 운영,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유치원 일반 현황 및 중앙정부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2005-2014년의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여 성과와 과제를 도출함.
 - 2014년 유치원 수는 8,826개, 학급수는 33,041개로 전년도 대비 증가했고, 취원율은 47.0%로 2013년 46.7%에 비해 0.3%p 증가하였음. 이에 비해 유치원 취원아는 652,546명으로 2013년 658,188명에 비해 5,642명 감소함.
 - 만 5세 취원율은 2013년 56.3%에 비해 1.0%p 증가한 57.3%, 만 4세 취원율은 2013년 50.0%에 비해 1.0% 증가한 51.0%, 만 3세 취원율은 2013년 대비 0.4%p 증가한 33.1%로 나타남.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또한 2014년 10.7%로 2013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나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국공립 원아 분담률이 최소 50%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4년 3-5세 유아학비 지원액은 14,343억 원으로 유치원 취원아 수 대비 교육비 지원아 수 비율은 101.8%로 나타남. 유아학비 지급 금액과 관련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비용이 아니라는 의견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014년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11,931명, 사립유치원 교원은 36,599명으로 사립이 3.1배 많음. 유치원의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2014년 12월 기준 제 3주기 1년차 유치원 평가가 완료됨. 제 3주기 1년차 유치원 평가에는 전체 유치원의 29.7%인 2,635개원이 참여함.

-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은 2014년 전국 97.2%로 모든 시·도에서 93% 이상의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의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급 방식은 보편 지원으로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과 같은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 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은 14개이며, 체험 교육원(체험교육센터) 수도 14개임.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별로 대부분 하나의 기관만이 운영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수는 201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886개로 2013년 691개에 비해 195개 증가함. 이에 비해 관련 예산은 감소 추세이므로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3. 시·도 교육청 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 사업 현황을 알아본 결과, 각 지역별 자체사업의 총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타남.
 - 유아교육 사업을 교직원 운영 사업, 교육활동 지원 사업,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본 결과,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비용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교육활동 지원 사업 중 특히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17개 시·도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지원 현황을 알아본 결과, 지역별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지원예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이 있었으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음.
 -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원칙을 정부 수준에서 확립해야 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유형별(20~30대 대상 학부모, 도시지역 서민,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요구와 집행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2010-2015년 6년간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예산은 시기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향후 유보 통합 시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각 시·도교육청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4. 유아교육정책 심층분석: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

가. 아동학대 개념 및 제도

-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아동학대는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하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압박, 방임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유형화하고 있음(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2015).
-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서로 다른 관련법과 연계해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법적인 처리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가 중요함.
 - 우리나라는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과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함(아동복지법, 2015).
 - 아동학대 전문가와 협조체제를 갖추고 아동의 인권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학대가 벌어진 물리적·정서적 맥락을 파악하여 지원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나.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

-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후 조치 등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유형을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직원이 학부모에 비해 전체적으로 아동학대를 높은 비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가 억지로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고 판단되거나, 아동이 친구들과 앞에서 무안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직원에 비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교사의 신고의무에 대해 교직원과 학부모는 적합하다고는 생각하나, 교직원은 의무로까지 부과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부족,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등을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아동학대를 목격하여 신고를 한 경우, 학부모는 관련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사는 유치원장에게 보고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의 학부모와 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매우 높았으며, 학부모와 교직원은 아동학대 및 상담, 아동학대 발견시 조치 방법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함.
 -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교직원에 비해 학부모는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크게 앞섰으며,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교직원은 교직원의 인권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제시한 반면, 학부모는 사소한 일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시함.

5. 논의 및 제언

가. 유아교육정책의 향후 방향 및 과제

- 유아교육의 공적 인프라 확대
 - 공립유치원의 지속적인 확대
 - 5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 추진
 -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 유아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배분
 - 무상교육으로의 유아학비 현실화
 - 방과후 과정의 차등 지원
- 교원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 교원 1인당 유아 수의 지속적인 감축
 -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의무화 및 컨설팅 지원
- 질 관리 체제의 안정적 정착
 - 유치원평가 제도의 방향성 제고
 - 내부평가자로서 교사, 학부모의 평가 참여방안 마련
- 유아교육 지원체계 확대 및 역할 강화
 - 유보통합을 고려한 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 지역사회 유아교육지원 체계로서 유아교육진흥원 역할 강화

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앙, 지역, 유치원 단위로 나누어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중앙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플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중장기 플랜과 연계한 계획 수립 ▪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아동보호센터 등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아동학대 관련 법적 근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에 아동학대 관련 근거 조항 추가

지역	관할 기관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문가 양성 ▪ 아동학대 교육 및 홍보 강화

유치원	서비스 질 제고 및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질 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 교원의 전문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의 자격 검증 강화 - 신규교사 인턴제 도입 - 아동학대 관련 연수 의무화, 인성교육 강화 등 ▪ 부모와의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자원봉사 활용

□ 중앙정부 차원: 제도적 기반 구축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 아동학대 개념과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전략 모색

- 지방정부 차원: 기관 운영지원 및 지역사회 공조 강화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실화
 - 아동학대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단위 유치원 차원: 서비스 질 제고 및 신뢰형성 노력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교직원 채용 시 확인절차 강화
 - 부모와의 신뢰관계 형성 노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교육 관련 정책의 개발은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국민행복’ 구현의 국정과제 실천과 맞물려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유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선진 유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유아교육정책 방안과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추진하였는데,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2013년 누리과정의 전면 확대 시행, ‘유아교육발전 5개년(13~17) 계획’ 등으로 유아교육에서 획기적인 정책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관련 정책 강화로 인해 사업 규모와 재정 투입이 크게 확대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대비 2013년 만 3세의 취원율은 4.6%p, 만 4세의 취원율은 3.5%p 증가하여 2012년 누리과정 도입·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크게 확대되어 2013년 기준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은 0.3%, 보육 재정을 합산하여 0.9%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 2014년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에 비해 약 1조 6,645억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3-5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것으로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급식 지원이 포함된 교육복지 예산이 전체 유아교육 재정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4년 말 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학부모의 불안을 야기하여 전국 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2-3개월간 편성하기로 결정(중앙일보, 2014. 11. 7)한 바 있으며 이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은 2-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였고, 예산편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어 현장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베이비뉴스, 2015. 2. 11). '14년 12월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의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의 지급을 미루는(한겨레 2015. 3. 9) 가운데,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중단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책 수혜자의 실질 체감도가 높지 않고, 질적 개선을 위한 기제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예산 지원 주체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리과정 시행,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최근 유아교육정책 현황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은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정책 성과와 과제'는 2010년부터 수행되어 온 연속과제로서 유아교육 관련 통계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을 누적적으로 제시하여 최근 유아교육정책 변동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유아교육정책의 주된 이슈인 정책 현안을 심층분석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유아교육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정책성과를 진단하여 향후 추진과제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편 심층분석 주제인 아동학대는 2015년 초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장이 여전함에도 최근까지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부처의 요구를 수용하여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이다.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의 학대 경험은 아동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장화정·윤은영·박은혜, 2013),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현황과 인식을 보고한 연구들은 극히 드물다.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와 아동복지법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법제화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록 되어 있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아동의 방임 및 학대 실태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 보고서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유아교육 종사자가 인식하는 기관 내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정채옥, 2002; 차영숙·문혜련, 2009)가 있으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도와 관련된 연구보고서(한미현, 2013)로 매우 제한적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실태를 보고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보고한 경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현황과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하여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로 유아교육정책 현안을 분석하는 보고서임을 감안하여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현황을 고찰하여 유아의 인권, 복지를 포괄하는 유아교육정책의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지표에 따른 주요 현황(유치원 수, 원아 수 등)을 교육기본통계, 부처 관련 자료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동일 지표를 중심으로 2005년 이후부터의 누적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주요 지표와 관련된 유아교육정책 성과 달성 정도와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성과와 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정책 및 지원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검토하여 변화되거나 강화된 정책 분야를 파악한다.

셋째, 유아교육정책의 주요 이슈인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특정한 유아교육정책을 선별하여 심층 분석한다. 2015년의 심층분석 주제로 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2009-2015년까지의 유아교육정책의 주요 변화 요인들을 검토하여 향후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분석

유아교육정책 성과 관련 내부 자료와 ‘2013~2014 연차보고서’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정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여 비교·분석 한다.

나. 면담 조사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 전문가, 유치원 교직원(유치원장, 교사 등), 부모와 4회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심층면담을 완료한 참여자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3인, 유치원 교직원 15인, 유치원 재원아 학부모 12인이다.

유치원은 기관 설립유형별로 공립병설, 공립단설, 사립법인, 사립사인 각각 한 곳씩 네 곳을 면담하였다. 또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조사를 위해 FGI(집단 심층 면담)를 한 차례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3-1>와 같다.

<표 1-3-1> 면담 참여자 정보 및 내용(교직원 및 학부모)

일시	기관유형	구분	면담 내용
2015.6.1	사립사인	원장, 교사 2인, 학부모 3인	- 아동학대 경험 유무
2015.6.2	사립법인	원장, 원감, 교사, 행정직 1인, 운전기사 1인, 학부모 3인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원인 -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관한 의견 -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
2015.6.3	공립병설	원감, 교사 2인 학부모 3인	- 기관, 지역사회, 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
2015.7.17	공립단설	원장, 원감, 교사 2인, 학부모 3인	

〈표 I-3-2〉 FGI(집단심층면담) 내용

일시	기관유형	구분	면담 내용
2015.5.27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가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및 특성 -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성 및 사례 -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자 특성 및 사례 -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최종 조치(피해아동/학대 행위자/운영자별) 사례 -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 및 정부 지원

다.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 및 방법

심층분석 주제인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총 1000명(교직원 500명,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는 웹설문을 구축하여 2015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하였으며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배경을 살펴보면 <표 I-3-3>과 같다. 학부모 총 500명 중 자녀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22.4%,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77.6%였으며, 맞벌이 가정이 61.4%로 외벌이인 경우 38.6%보다 많았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규모의 경우 중소도시 51.2%, 대도시 42.6%, 읍면지역 6.2%의 순이었으며 연령은 30~39세가 68.6%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의 경우 총 500명 중 국공립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52.6%, 사립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47.4%로 나타났으며 기관소재지는 중소도시 52.8%, 대도시 32.2%, 읍면지역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의 직위는 교사가 62.0%로 가장 많았으며 원장(원감)이 25.2%, 부장교사 11.8%, 수석교사 0.8%, 기타 0.2%의 순이었다.

〈표 1-3-3〉 응답자 배경: 교직원/학부모

단위: 명(%)

구분		학부모	구분		교직원
전체		500(100.0)	전체		500(100.0)
설립 유형	국/공립	112(22.4)	설립 유형	국/공립	263(52.6)
	사립	388(77.6)		사립	237(47.4)
지역 규모	대도시	213(42.6)	기관소재지	대도시	161(32.2)
	중소도시	256(51.2)		중소도시	264(52.8)
	읍면지역	31(6.2)		읍면지역	75(15.0)
가구 유형	맞벌이	307(61.4)	직위	원장(원감)	126(25.2)
	외벌이	193(38.6)		수석교사	4(0.8)
연령	30세 미만	58(11.6)	부장교사	59(11.8)	
	30~39세	343(68.6)	교사	310(62.0)	
	40세 이상	99(19.8)	기타	1(0.2)	

2) 조사 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교직원과 학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마송희·지성애, 2000; 안재진, 2002; 이미훈, 2014;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를 참조하여 초안을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아동학대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북학대), 아동학대 신고(신고 사례, 신고경험), 아동학대 예방(예방교육, 예방대책)에 대한 인식 조사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교수 2인, 공·사립유치원 원장(감) 4인, 교사 4인의 검토를 거쳐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1-3-4>와 같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1-3-4〉 교직원 및 학부모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내용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	- 아동학대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북학대)에 대한 인식
	- 아동학대 신고(신고사례, 신고경험)에 대한 인식
	- 아동학대 예방(예방교육, 예방대책)에 대한 인식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연구방향 설정, 설문지 내용 및 문항 검토, 정책 진단 및 제언 자문 등을 위해 유아교육현장 및 학계전문가 대상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정책 관련 정보 수집과 연구 협력을 위해 시·도교육청 전문직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I-3-5>와 같다.

<표 I-3-5> 참여자 정보 및 내용

일시	대상구분	직위	내용
2015. 5.13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현황(신고사례를 중심으로)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 및 주요 원인 -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 및 행위자 조치
2015. 5.22	경찰청	경감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2015. 11.19	공·사립 유치원	원장(감) 4인/ 교사 3인	- 유치원 아동학대 조사결과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 아동학대 원인 및 예방 대책

4.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정책을 모니터링 하여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연구로 금년이 6차년도이며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교육청의 특색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둘째, 이 중 일부 정책을 선택하여 심층 분석함으로써 개선점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 심층분석은 당해 연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특수시책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 중에서 교육부 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선택하여 이루어졌다. 5차년도까지의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I-4-1>과 같다.

〈표 1-4-1〉 연도별 연구내용 및 심층분석 주제

해당 연도	심층분석 주제	주요 내용 및 결과
1차(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에듀케어 사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유치원 에듀케어의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 제안
2차(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유치원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개선방안 제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3차(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정보공시제 유아교육진흥원과 체험교육원 현황 및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정보공시제가 추구하는 책무성, 효율성, 적시성, 적정성이라는 기본방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 유아교육진흥원 및 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4차(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평가 유치원 정보공시제 안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제안 공시시기의 조정, 공시자료 검증 방안, 정보공시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
5차(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향 및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로드맵 제시

4차년도 연구부터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와의 연계를 위해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을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교원, 유치원 평가, 방과후 과정 운영,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협력 네트워크 운영, 유아교육 재정의 8개 사업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황과 추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6차년도 연구로 연속과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과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II. 중앙정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

본 장에서는 2014년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교원, 유치원 평가, 방과후 과정 운영,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유치원 일반 현황 및 중앙정부의 사업을 중심으로 설립유형별, 시·도별로 자료를 제시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4년 결산 및 2015년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1. 유치원 설치와 이용

가. 현황

1) 유치원 수

유치원은 2014년 4월 기준 전국 8,826개원이 운영되고 있다(표 II-1-1 참조). 전국에서 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137개원(24.2%)이 있으며, 다음으로 많은 곳이 서울 884개(10.0%)이다. 전국에서 유치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30개원이 있으며 전체 유치원 수의 0.3%이고, 다음으로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114개(1.3%)이다. 한편 어린이집은 2014년 12월 기준 전국 43,742개가 운영 중이다.

〈표 II-1-1〉 시·도별 유치원 수 현황: 2014

단위: 개원, %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국립		단설		병설		법인		사인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국	8,826	100.0	3	0.0	228	2.6	4388	49.7	493	5.6	3,714	42.1
서울	884	10.0	-	-	16	7.0	169	3.9	108	21.9	591	15.9
부산	395	4.5	-	-	9	3.9	67	1.5	46	9.3	273	7.4
대구	375	4.2	-	-	5	2.2	121	2.8	26	5.3	223	6.0
인천	412	4.7	-	-	9	3.9	145	3.3	14	2.8	244	6.6

(표 II-1-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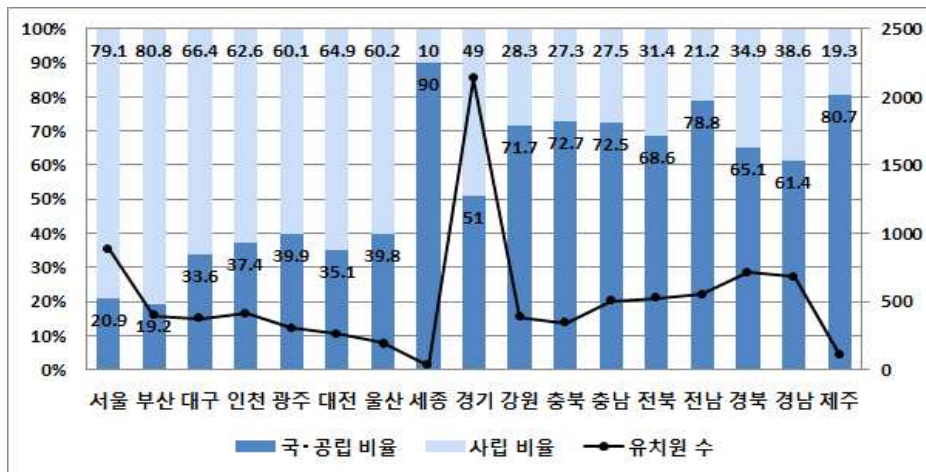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국립		단설		병설		법인		사인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광주	308	3.5	-	-	8	3.5	115	2.6	15	3.0	170	4.6
대전	265	3.0	-	-	7	3.1	86	2.0	15	3.0	157	4.2
울산	196	2.2	-	-	5	2.2	73	1.7	5	1.0	113	3.0
세종	30	0.3	-	-	8	3.5	19	0.4	-	-	3	0.1
경기	2,137	24.2	-	-	49	21.5	1,040	23.7	77	15.6	971	26.1
강원	385	4.4	1	-	14	6.1	262	6.0	20	4.1	88	2.4
충북	344	3.9	1	-	18	7.9	232	5.3	17	3.4	76	2.0
충남	506	5.7	1	-	17	7.5	350	8.0	27	5.5	111	3.0
전북	526	6.0	-	-	16	7.0	345	7.9	23	4.7	142	3.8
전남	551	6.2	-	-	15	6.6	419	9.5	19	3.9	98	2.6
경북	716	8.1	-	-	10	4.4	456	10.4	54	11.0	196	5.3
경남	682	7.7	-	-	22	9.6	397	9.0	14	2.8	249	6.7
제주	114	1.3	-	-	-	-	92	2.1	13	2.6	9	0.2
2013	8,678	100.0	3	0.0	184	2.1	4,390	50.6	470	5.4	3,631	41.8
어린이집 (2014)	43,742	100.0	2,489		5.7		41,253		94.3			

주: 어린이집에서 사립항목에 해당되는 설립유형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을 합산함.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3)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1.



[그림 II-1-1] 시·도별 유치원 수 현황: 2014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이 4,619개원(52.3%), 사립유치원은 4,207개원(47.7%)으로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다소 높다. 각 지역별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90.0%)이며, 제주(80.7%)가 그 다음으로 높다.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70%가 넘는 지역은 전남 78.8%, 충북 72.7%, 충남 72.5%, 강원 71.7%이다.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20% 이하로 낮은 지역은 부산 19.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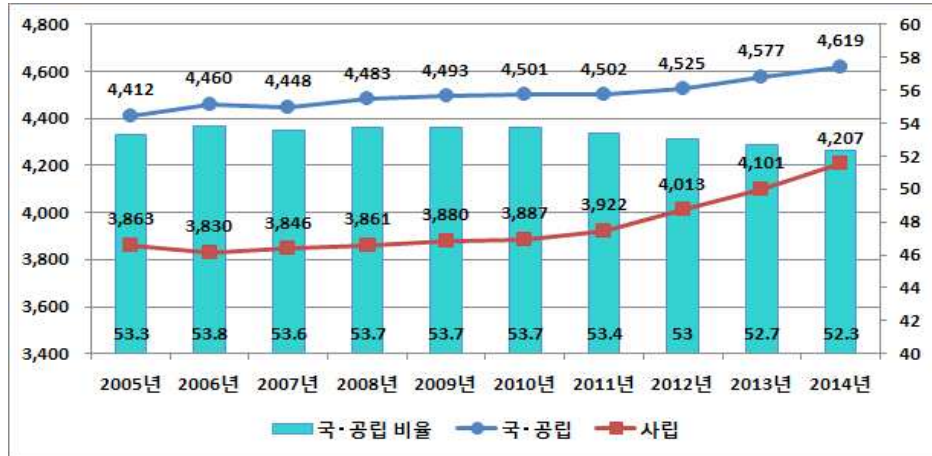
2014년 유치원 수는 8,826개원으로 2013년 8,678개원에 비해 148개원이 증가하였다. 국·공립유치원 수는 2013년 4,577개원에 비해 42개 증가한 4,619개원, 사립유치원 수는 2013년 4,101개원에 비해 106개 증가하여 4,207개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유치원의 경우 2014년 3개원이 운영되고 있어 전년도와 동일하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은 2013년 대비 44개원이 증가한 228개원, 병설은 2개원이 감소한 4,388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으로 인한 수치의 감소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과 사인 모두 2013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법인은 23개원이 증가하여 493개원, 사인은 83개원이 증가하여 3,714개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3년 대비 2014년에 유치원 수가 1.7%p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2013년 52.7%에서 52.3%로 다소 감소하였다. 최근 10년간의 유치원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2006년도에 53.8%로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다.

〈표 II-1-2〉 유치원 수 추이: 2005-2014

단위: 개원, %

구분	전체	국립	공립 (단설)	공립 (병설)	사립 (법인)	사립 (사인)	국·공립 비율
2005	8,275	3	72	4,337	516	3,347	53.3
2006	8,290	3	83	4,374	509	3,321	53.8
2007	8,294	3	94	4,351	503	3,343	53.6
2008	8,344	3	101	4,379	511	3,350	53.7
2009	8,373	3	116	4,374	504	3,376	53.7
2010	8,388	3	131	4,367	498	3,389	53.7
2011	8,424	3	146	4,353	454	3,468	53.4
2012	8,538	3	167	4,355	469	3,544	53.0
2013	8,678	3	184	4,390	470	3,631	52.7
2014	8,826	3	228	4,388	493	3,714	52.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II-1-2] 유치원 수 추이: 2005-2014

2) 학급 수

2014년 유치원 학급 수는 33,041개로 이 중 전체 학급의 27.6%인 9,118개가 경기도, 12.6%인 4,170개가 서울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학급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107학급(0.3%)이며, 그 다음은 제주 251학급(0.8%) 순이다. 설립 유형별 차이를 보면 국·공립이 8,693개, 사립이 24,348개로 사립이 국·공립 보다 2.8배 많은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수가 52.3%로 사립유치원의 수보다 많지만, 1개 원당 학급 수는 국·공립이 1.4~3.4개, 평균 1.9개이고 사립은 4.3~6.6개, 평균 5.8개로 사립유치원의 규모가 국·공립보다 월등히 크다. 지역별, 유형별 학급 수 분포를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학급의 비율이 전체 학급의 50% 이상인 지역은 세종(87.9%), 전남(56.4%), 충북(51.4%), 제주(52.2%)이며, 사립유치원 학급 수의 비율이 80% 이상인 지역은 부산(89.3%), 대구(86.3%), 서울(84.8%), 광주(83.0%), 대전(82.1%), 울산(81.0%), 인천(80.0%)으로 시지역이 도지역보다 사립유치원 학급 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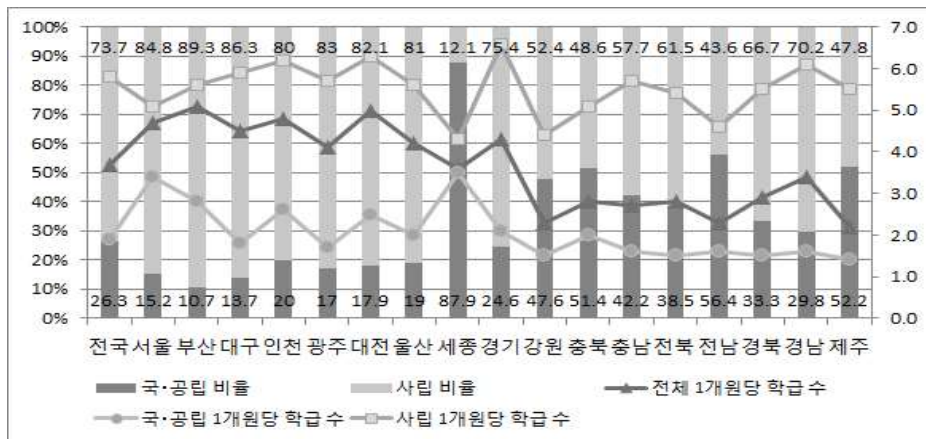
2014년 전국의 유치원 학급 수는 33,041개로 2013년 30,597개에 비해 2,444개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2013년 8,220개에 비해 473개 증가하여 8,693개,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2013년 22,377개에 비해 1,971개 증가하여 24,348개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2013년 대비 2014년에 유치원 학급 수가 8.0%p 증가하였다.

〈표 II-1-3〉 유치원 학급 수 현황: 2014

단위: 학급, %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수	비율	1개원당 학급 수	수	비율	1개원당 학급 수	수	비율	1개원당 학급 수
전국	33,041	100.0	3.7	8,693	26.3	1.9	24,348	73.7	5.8
서울	4,170	12.6	4.7	633	15.2	3.4	3,537	84.8	5.1
부산	2,013	6.1	5.1	216	10.7	2.8	1,797	89.3	5.6
대구	1,690	5.1	4.5	232	13.7	1.8	1,458	86.3	5.9
인천	1,995	6.0	4.8	399	20.0	2.6	1,596	80.0	6.2
광주	1,261	3.8	4.1	215	17.0	1.7	1,046	83.0	5.7
대전	1,313	4.0	5.0	235	17.9	2.5	1,078	82.1	6.3
울산	816	2.5	4.2	155	19.0	2.0	661	81.0	5.6
세종	107	0.3	3.6	94	87.9	3.5	13	12.1	4.3
경기	9,118	27.6	4.3	2,242	24.6	2.1	6,876	75.4	6.6
강원	897	2.7	2.3	427	47.6	1.5	470	52.4	4.4
충북	978	3.0	2.8	503	51.4	2.0	475	48.6	5.1
충남	1,368	4.1	2.7	577	42.2	1.6	791	57.7	5.7
전북	1,456	4.4	2.8	559	38.5	1.5	897	61.5	5.4
전남	1,247	3.8	2.3	703	56.4	1.6	544	43.6	4.6
경북	2,057	6.2	2.9	685	33.3	1.5	1,372	66.7	5.5
경남	2,304	7.0	3.4	687	29.8	1.6	1,617	70.2	6.1
제주	251	0.8	2.2	131	52.2	1.4	120	47.8	5.5
2013	30,597	100.0	3.5	8,220	26.9	1.8	22,377	73.1	5.5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2)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5.



[그림 II-1-3] 전국 시도별 국·공립/사립 학급 비율: 2014

유치원 학급 수의 추이를 보면 전체 학급 수는 유치원 수 증가와 유사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2010년까지 200~800개 정도의 증가폭을 보였으나 2011~2012년 1,300여개, 2012~2014년 2,200~2400여개로 학급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개 원당 평균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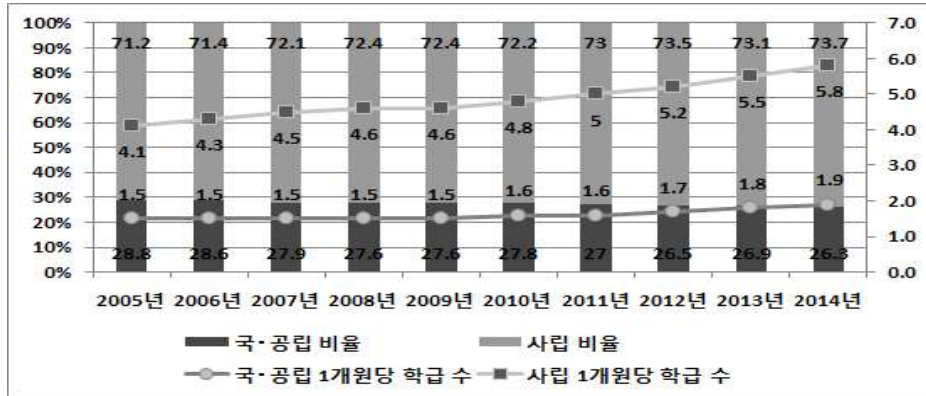
평균 학급 수는 지난 10년간 2005년 2.7개에서 2014년 3.7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설립유형별로 비교하면 국·공립은 학급 수가 지난 10년간 증가하고 있으나 비율은 2005년 28.8%에서 2014년 26.3%로 감소했다. 이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학급 수가 모두 증가했으나 사립유치원 학급 수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개 원당 평균 학급 수도 국·공립은 1.9개, 사립은 5.8개로 2005년도 국·공립 1.5개, 사립 4.1개에 비해 증가했지만 사립유치원의 증가폭이 비교적 크다.

〈표 II-1-4〉 유치원 학급 수 추이: 2005-2014

단위: 학급, 개, %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학급 수	1개원당 학급 수	학급 수	비율	1개원당 학급 수	학급 수	비율	1개원당 학급 수
2005	22,409	2.7	6,451	28.8	1.5	15,958	71.2	4.1
2006	23,010	2.8	6,588	28.6	1.5	16,422	71.4	4.3
2007	23,860	2.9	6,646	27.9	1.5	17,214	72.1	4.5
2008	24,567	2.9	6,789	27.6	1.5	17,778	72.4	4.6
2009	24,908	3.0	6,887	27.6	1.5	18,021	72.4	4.6
2010	25,670	3.1	7,129	27.8	1.6	18,541	72.2	4.8
2011	26,990	3.2	7,279	27.0	1.6	19,711	73.0	5.0
2012	28,386	3.3	7,535	26.5	1.7	20,851	73.5	5.2
2013	30,597	3.5	8,220	26.9	1.8	22,377	73.1	5.5
2014	33,041	3.7	8,693	26.3	1.9	24,348	73.7	5.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II-1-4] 유치원 학급 수 추이: 2005-2014

3) 취원아 수

2014년 전국 유치원 취원아는 652,546명으로 취원 대상 3-5세 유아의 47.0%이다. 이는 2013년 취원아 비율이 46.7%였던 것에 비해 0.3%p가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5세 취원아는 268,328명으로 전체의 57.3%가, 만 4세 취원아는 228,129명으로 51.0%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나 만 3세 취원아는 156,089명으로 33.1%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다른 연령에 비해 취원율이 낮다.

지역별 취원율은 부산이 전체 취원율의 56.0%로 가장 높고 제주가 2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취원율을 살펴보면 만 5세의 취원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71.6%), 경북(70.3%), 울산(69.0%)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지역은 서울(44.5%), 충북(49.0%), 전남(49.0%), 강원(53.2%)이다. 만 4세 취원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66.3%), 부산(63.3%), 대전(61.6%), 경북(61.3%) 순이며, 낮은 지역은 제주(25.2%), 세종(40.7%), 전남(41.2%), 서울(41.4%)이다. 만 3세 취원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39.5%), 대전(39.4%), 부산(38.8%), 광주(36.9%), 경북(36.5%) 순이며 낮은 지역은 제주(8.6%), 세종(25.6%)이다.

2014년 전국 유치원 취원 대상 유아 수는 1,387,037명으로 2013년 1,408,498명에 비해 21,461명 감소하였다. 유치원 취원아 수 또한 652,546명으로 2013년 658,188명에 비해 5,642명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취원아 비율은 0.3%p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4년 만 5세 취원아 수는 2013년(278,484명)에 비해 10,156명이 감소하여 268,328명이나 취원율은 1.0%p 증가하였고, 만 4세 취

원아 수는 2013년(233,926명)에 비해 5,797명이 감소하여 228,129명이나 전년도 대비 취원율이 1.0%p 증가하였다. 만 3세 취원아 수는 2013년(145,778명)에 비해 10,311명이 증가한 156,089명으로 전년도 대비 취원율이 0.4%p 증가하였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만 5세와 만 4세 취원율은 유치원이 각각 57.3%, 51.0%로 어린이집 33.2%, 39.6%보다 높지만, 만 3세의 경우 어린이집 취원율이 56.2%로 유치원 취원율 33.1%보다 높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에 더 많이 재원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1-5〉 연령별 유치원 취원율: 2014

단위: 명, %

구분	전체			만 5세			만 4세			만 3세		
	취원 대상	취원아	취원율	취원 대상	취원아	취원율	취원 대상	취원아	취원율	취원 대상	취원아	취원율
전국	1,387,037	652,546	47.0	467,935	268,328	57.3	447,055	228,129	51.0	472,047	156,089	33.1
		577,862	43.1		155,510	33.2		177,014	39.6		265,338	56.2
서울	239,724	91,195	38.0	80,786	35,930	44.5	76,825	31,782	41.4	82,113	23,423	28.5
부산	78,358	43,909	56.0	26,261	17,609	67.1	24,907	15,754	63.3	27,190	10,546	38.8
대구	62,196	34,554	55.6	21,215	15,186	71.6	19,963	13,237	66.3	21,018	6,131	29.2
인천	81,594	40,369	49.5	27,277	16,823	61.7	26,438	14,371	54.4	27,879	9,175	32.9
광주	44,011	22,288	50.6	14,939	9,006	60.3	14,261	7,810	54.8	14,811	5,472	36.9
대전	45,024	25,024	55.6	15,356	10,113	65.9	14,508	8,941	61.6	15,160	5,970	39.4
울산	34,373	18,336	53.3	11,423	7,872	69.0	11,184	6,669	59.5	11,766	3,805	32.3
세종	4,224	1,699	40.2	1,455	786	54.0	1,354	551	40.7	1,415	362	25.6
경기	379,737	181,812	47.9	128,738	73,689	57.2	122,513	62,598	51.1	128,486	45,530	35.4
강원	37,618	15,947	42.4	12,609	6,708	53.2	12,281	5,391	43.9	12,728	3,848	30.2
충북	43,507	17,489	40.2	14,605	7,162	49.0	14,079	5,871	41.7	14,823	4,456	30.1
충남	59,720	26,096	43.7	20,063	11,071	55.2	19,391	8,979	46.3	20,266	6,046	29.8
전북	48,813	23,296	47.7	16,502	8,910	54.0	15,724	7,832	49.8	16,587	6,554	39.5
전남	47,348	18,951	40.0	15,807	7,734	49.0	15,293	6,302	41.2	16,248	4,915	30.2
경북	66,727	37,274	55.9	22,391	15,749	70.3	21,553	13,206	61.3	22,783	8,319	36.5
경남	96,097	49,011	51.0	32,421	20,618	63.6	30,917	17,375	56.2	32,759	11,018	33.6
제주	17,966	5,296	29.5	6,087	3,302	54.2	5,864	1,475	25.2	6,015	519	8.6
2013	1,408,498	658,188	46.7	494,810	278,484	56.3	467,432	233,926	50.0	446,256	145,778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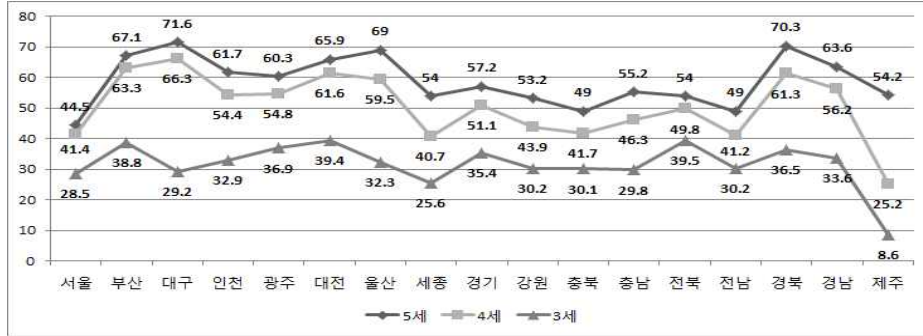
주: 진한 이탤릭체는 어린이집 취원아 및 취원율(2014)임.

자료: 1) 안전행정부(2014). 주민등록 인구통계(2014.12.31. 기준).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3)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4)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8.



[그림 II-1-5] 시·도별 연령별 취원율: 2014

유치원의 시·도별 원아 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7.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4.0%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0.3%), 제주(0.8%)는 원아 수의 비율이 낮았다. 설립유형별로 비교하면 전국 국·공립 원아 수는 148,269명(22.7%), 사립 504,277명(77.3%)으로 사립의 원아 수가 3.4배 더 많았다. 국·공립 원아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85.6%)으로 다음으로 높은 전남(49.6%), 충북(47.9%)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사립 원아 수의 비율은 부산(90.1%), 대구(86.7%), 서울(85.1%)의 순이며, 시 지역은 세종(14.4%)을 제외하고 사립 원아 수 비율이 80%정도로 도 지역에 비해 높았다.

2014년 시·도별/설립유형별 원아 수는 652,546명으로 2013년 658,188명에 비해 5,642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2014년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2013년 142,052명에 비해 6,217명 증가한 148,269명,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2013년 516,136명에 비해 11,859명 감소하여 504,27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13년 대비 2014년에 유치원 원아 수가 0.9%p 감소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원아 수 비율이 1.1%p 감소하였으나,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이 1.1%p 상승하였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만 3-5세 이용아의 16.4%, 전체 연령의 10.6%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 유치원에 비해 국·공립 기관에 재원하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표 II-1-6> 시·도별/설립유형별 원아 수: 2014

단위: 명, %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원아 수	전체 원아 수 대비	원아 수	비율	원아 수	비율
전국	652,546	100.0	148,269	22.7	504,277	77.3

(표 II-1-6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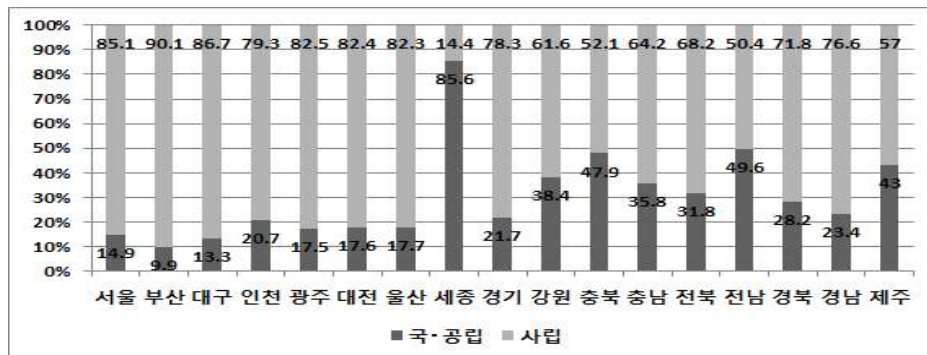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원아 수	전체 원아 수 대비	원아 수	비율	원아 수	비율
서울	91,195	14.0	13,552	14.9	77,643	85.1
부산	43,909	6.7	4,338	9.9	39,571	90.1
대구	34,554	5.3	4,591	13.3	29,963	86.7
인천	40,369	6.2	8,375	20.7	31,994	79.3
광주	22,288	3.4	3,908	17.5	18,308	82.5
대전	25,024	3.8	4,413	17.6	20,611	82.4
울산	18,336	2.8	3,252	17.7	15,084	82.3
세종	1,699	0.3	1,454	85.6	245	14.4
경기	181,812	27.9	39,393	21.7	142,419	78.3
강원	15,947	2.4	6,119	38.4	9,828	61.6
충북	17,489	2.7	8,376	47.9	9,113	52.1
충남	26,096	4.0	9,334	35.8	16,762	64.2
전북	23,296	3.6	7,410	31.8	15,886	68.2
전남	18,951	2.9	9,400	49.6	9,551	50.4
경북	37,274	5.7	10,542	28.2	26,732	71.8
경남	49,011	7.5	11,461	23.4	37,550	76.6
제주	5,296	0.8	2,279	43.0	3,017	57.0
2013	658,188	100.0	142,052	21.6	516,136	78.4
어린이집 전체	1,496,671	100.0	159,241	10.6	1,337,430	89.4
어린이집 (2014) 3-5세	597,862	100.0	98,192	16.4	499,670	83.6

주: 어린이집에서 사립항목에 해당되는 설립유형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을 합산함.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3)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29.



[그림 II-1-6] 시·도별/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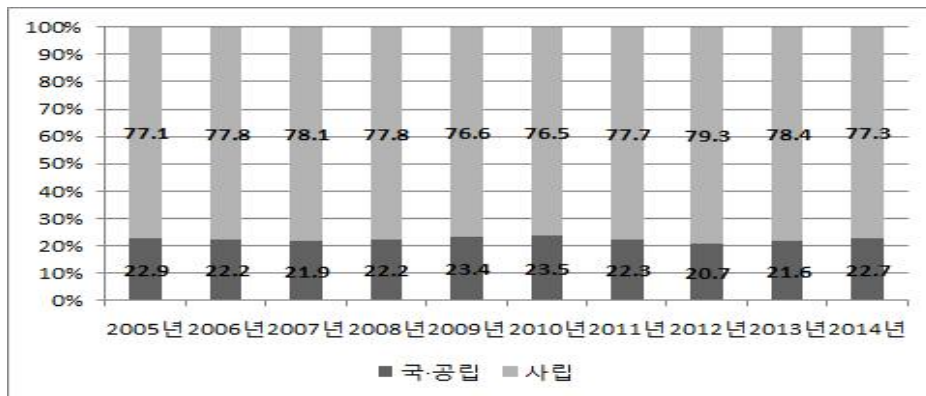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는 <표 II-1-7>과 같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국립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원아 수 대비 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립은 전체 원아 수 대비 취원아 수 비율이 2005년 22.9%에서 2014년 22.7%로 추이에 큰 변화가 없다. 사립유치원에서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체 원아의 75%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

<표 II-1-7> 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 2005-2014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합계		
2005	0.0(253)	22.9(124,030)	22.9(124,283)	77.1(417,320)	100.0(541,603)
2006	0.0(253)	22.2(121,071)	22.2(121,324)	77.8(424,488)	100.0(545,812)
2007	0.0(261)	21.8(118,161)	21.9(118,422)	78.1(423,128)	100.0(541,550)
2008	0.0(249)	22.1(118,879)	22.2(119,128)	77.8(418,694)	100.0(537,822)
2009	0.0(231)	23.3(125,305)	23.4(125,536)	76.6(411,825)	100.0(537,361)
2010	0.0(236)	23.5(126,341)	23.5(126,577)	76.5(412,010)	100.0(538,587)
2011	0.0(240)	22.3(125,855)	22.3(126,095)	77.7(438,739)	100.0(564,834)
2012	0.0(226)	20.7(127,121)	20.7(127,347)	79.3(486,402)	100.0(613,749)
2013	0.0(225)	21.5(141,827)	21.6(142,052)	78.4(516,136)	100.0(658,188)
2014	0.0(258)	22.7(148,011)	22.7(148,269)	77.3(504,277)	100.0(652,546)

주: 기관별 취원율 = (기관별 취원아 수/전체 취원아 수)x100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1-7] 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 2005-2014

유치원 취원율은 2005년부터 2014년의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취원율 추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 3세는 2005년 13.5%에서 33.1%로, 만 4세는 28.3%에서 51.0%로, 만 5세는 46.2%에서 57.3%로 증가했다. 특히 만 3세가 10년간 2.5배 상승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나,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만 4세, 만 5세가 1.0%p 상승하여 만 3세보다 증가폭이 컸다.

〈표 II-1-8〉 유치원 취원율 변화 추이: 2005-2014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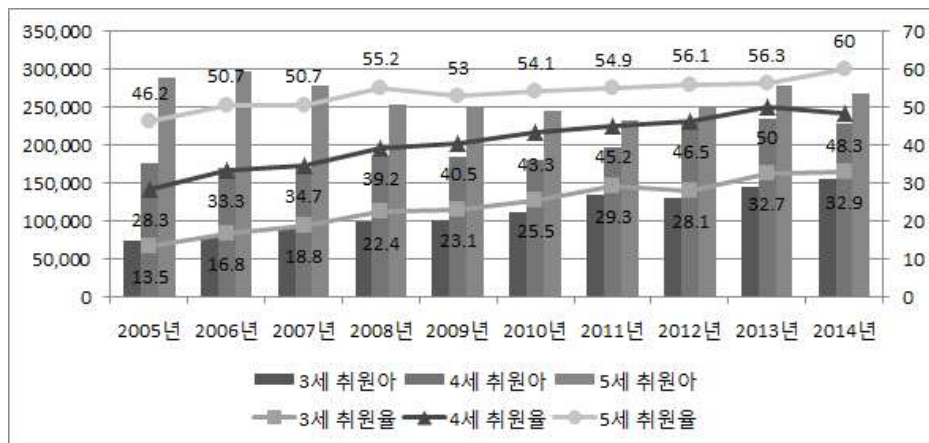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취원아	취원 대상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 대상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 대상아	취원율
2005	74,824	552,396	13.5	176,963	624,442	28.3	289,816	626,631	46.2
2006	77,669	461,161	16.8	170,652	512,465	33.3	297,491	586,441	50.7
2007	93,005	494,348	18.8	170,726	491,882	34.7	277,819	547,636	50.7
2008	99,499	443,361	22.4	184,178	470,166	39.2	254,145	460,634	55.2
2009	100,406	434,080	23.1	185,195	457,676	40.5	251,760	474,727	53.0
2010	111,482	436,773	25.5	181,441	418,993	43.3	245,664	454,264	54.1
2011	133,986	457,953	29.3	196,602	435,184	45.2	233,724	425,872	54.9
2012	130,986	466,807	28.1	229,911	494,388	46.5	251,897	448,774	56.1
2013	145,778	446,256	32.7	233,926	467,432	50.0	278,484	494,810	56.3
2014	156,089	474,932	33.1	228,129	472,731	51.0	268,328	447,531	57.3

주: 연령별 취원율 = (연령별 취원아 수 / 연령별 취원대상아 수) x 100

자료: 1) 2005~2013년: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31.

2) 2014년 취원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3) 2014년 취원대상아: 안전행정부(2014). 주민등록 인구통계(2014. 12. 기준).



[그림 II-1-8] 유치원 취원아 및 취원율 추이: 2005-2014

4)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최근 5년간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다음과 같다(표 II-1-9 참조).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2013년 10.1%에서 2014년 10.7%로 0.6%p 증가하였다.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4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도 대비 이용률이 0.1%~7.4%p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상승하여 2014년에도 0.2%p 상승하여 10.6%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만 3-5세 원아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10년부터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1-9〉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2010-2014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9.7	9.7	9.0	10.1	10.7
서울	4.2	4.1	4.4	4.9	5.7
부산	4.1	4.5	4.3	4.9	5.5
대구	5.9	5.6	5.5	6.5	7.4
인천	9.0	7.9	7.6	9.9	10.3
광주	8.3	8.1	8.1	8.8	9.0
대전	7.9	7.5	7.2	8.5	9.8
울산	8.2	8.3	7.7	8.7	9.5
세종	-	-	-	27.1	34.4
경기	9.8	9.8	8.7	10.1	10.4
강원	15.6	18.0	15.2	16.2	16.3
충북	16.9	18.0	17.6	18.9	19.3
충남	16.4	18.6	14.5	14.9	15.6
전북	13.8	14.6	13.2	14.2	15.2
전남	17.4	18.9	18.1	18.8	19.9
경북	12.2	13.7	13.4	14.7	15.8
경남	12.5	11.8	11.4	11.8	11.9
제주	12.3	11.2	11.1	12.1	12.7
단위: %					
어린이집(2014)					
전체	10.8	10.6	10.1	10.4	10.6
3-5세	15.3	15.3	15.6	15.9	16.4

주: 국·공립유치원 이용률=(국·공립유치원 취원아 수/취원대상아 수)×100

자료: 1) 각 시·도 교육청(2014). 국·공립유치원 취원아 수. 보고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3) 보건복지부(각 년도). 각 년도 보육통계.

국립유치원은 현재 강원, 충북, 충남에 설립되어 있어 전국 총 3개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 강원도 강릉원주대부설유치원, 충북 공주사범대부설유치원, 충남 한국교원대부설유치원이다. 국립유치원은 2014년 현재 4,616개원으로 2010년 이후 기관 수, 학급 수, 원아 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립유치원 기관 수 중 병설유치원의 비율은 95.1%, 단설유치원의 비율은 4.9%로 병설유치원의 비율이 단설유치원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학급 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단설이 17.5%, 병설이 82.5%로 병설유치원의 학급수가 단설유치원 학급 수의 4배 이상 많다. 마찬가지로 원아 역시 병설유치원에서 약 81%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1-10 참조).

〈표 II-1-10〉 국립유치원 현황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개원, 학급, 명)

	기관 수			학급			원아		
	단설	병설	계	단설	병설	계	단설	병설	계
2010	2.9	97.1	100.0(4,498)	10.9	89.1	100.0(7,115)	12.9	87.1	100.0(126,341)
2011	3.3	96.7	100.0(4,499)	12.1	87.9	100.0(7,264)	14.1	85.9	100.0(125,855)
2012	3.7	96.3	100.0(4,522)	13.7	86.3	100.0(7,521)	16.1	83.9	100.0(127,121)
2013	4.0	96.0	100.0(4,574)	14.6	85.4	100.0(8,205)	16.5	83.5	100.0(141,827)
2014	4.9	95.1	100.0(4,616)	17.5	82.5	100.0(8,678)	19.4	80.6	100.0(148,01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나. 성과와 과제

2014년 유치원 수는 8,826개원으로 2013년 8,678개원에 비해 148개원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2013년 대비 2014년에 유치원 수가 1.7%p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2012년 52.7%에서 52.3%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으로 인한 결과이나 공립유치원 설치율이 5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유치원 취원아 수 또한 652,546명으로 2013년 658,188명에 비해 5,642명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취원아 비율은 0.3%p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또한 2013년 10.1%에서 2014년 10.7%로 0.6%p 증가하여 취원아 수,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 수, 원아 수, 교원 수에서는 70%이상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국공립 분담률 68.6% (김영옥 외, 2012)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

를 위해서는 국공립 원아 분담률이 최소 50%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유아학비 지원

가. 현황

2014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만 3-5세 유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본과정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였다. 만 3-5세의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월 6만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22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 이용자에게 국·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7만원의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한다.

〈표 II-2-1〉 2014년 유아학비 지원 체계

연령	구분	지원범위
만3-5세아	유아학비 (기본과정)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취학대상 아동(07.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만 2세아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원아
	방과후 과정비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1일 8시간 이상 시설 운영)이용자에게 방과후 과정비 지원

주: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2항에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 영 시행일 2013년 3월 1일 이후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아 지원 이력부터 적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4).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2.

〈표 II-2-2〉 2014년 유아학비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월 지원금액(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만 3세	2010.1.1~2011.2.28	60,000	220,000
	만 4세	2009.1.1~2009.12.31		
	만 5세	2008.1.1~2008.12.31		

주: 상기 지원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만 지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4).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1.

2014년 3-5세 유아학비 지원액은 14,343억 원으로 유치원 취원아 수 대비 교육비 지원아 수 비율은 101.8%로 집계되었다. 모든 시·도에서 100.5%~114.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00% 초과비율은 전학 등 유아의 이동에 따른 중복집계에 의한 결과이다.

〈표 II-2-3〉 3-5세 유아학비 지원 현황: 2014

단위: 백만 원, 명, %

구분	지원액	지원아 수	취원아 수	지원율
전국	1,434,360	664,230	652,546	101.8%
서울	220,799	92,507	91,195	101.4%
부산	107,936	44,238	43,909	100.7%
대구	81,174	35,021	34,554	101.4%
인천	90,929	40,959	40,369	101.5%
광주	51,701	22,832	22,288	102.4%
대전	59,608	25,473	25,024	101.8%
울산	44,029	18,630	18,336	101.6%
세종	2,573	1,938	1,699	114.1%
경기	380,147	186,209	181,812	102.4%
강원	30,751	31,894	15,947	102.8%
충북	29,693	17,744	17,489	101.5%
충남	52,493	26,238	26,096	100.5%
전북	47,039	23,724	23,296	101.8%
전남	32,026	19,331	18,951	102.0%
경북	84,934	37,800	37,274	101.4%
경남	108,684	49,699	49,011	101.4%
제주	9,844	5,396	5,296	101.9%

주: 1) 취원아 수는 2014. 4. 기준, 지원아수는 2014. 6~8(2분기) 지원액은 2014. 12. 기준임.

2) 유아학비 지원실적에 전년도소급, 예외지원, 방과후 과정교육비는 제외되었음.

3) 지원율 = (유아교육비 지원아 수 / 총 3-5세 취원아 수) × 100

자료: 1) 교육부(2014).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3) KERIS(2014). 유아학비 시·도별 지원아수.

나. 성과와 과제

정부는 2013년부터 만 3~4세 자녀를 둔 가정의 보호자에게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까지 만 3~4세아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만 5세와 동일하게 매

년 인상하여 2012년에는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3~2014년 2년간은 기존의 국고·지방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지원 금액은 2013년 이후 동결되어 22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기에 충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아니라고도 생각하며(신은수·박은혜, 2012), 2014년 말부터 제기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논란으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처럼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3. 유치원 교원

가. 현황

1) 교원 수

2014년 4월 기준 유치원 교원 수는 48,530명으로, 이 중 남자는 931명이며 47,599(98.1%)명이 여성이다. 설립유형별 교원을 비교하면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11,931명, 사립유치원 교원은 36,599명으로 사립이 3.1배 많다. 한편 2014년 유치원 교원 수는 2013년 46,126명에 비해 2,40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13년 대비 2014년에 유치원 교원 수가 5.2%p 증가했다. 2014년 국·공립유치원 교원 수는 2013년 10,997명에 비해 934명 증가한 11,931명, 사립유치원 교원 수는 2013년 35,129명에 비해 1,470명 증가한 36,599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교원 수를 살펴보면 2014년 남성 교원 수는 931명으로 2013년 753명에 비해 178명 증가했으며, 여성 교원 수는 47,599명으로 2013년 45,373명에 비해 2,226명이 증가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경우 남성은 2013년 26명에 비해 140명이 증가한 166명, 여성은 2013년 10,971명에 비해 794명이 증가한 11,76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 중 남성은

2013년 727명에 비해 38명이 증가한 765명, 여성은 2013년 34,402명에 비해 1,432명이 증가한 35,83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2014년 기준 전국 218,589명으로 유치원 교사의 4.5배에 이른다.

〈표 II-3-1〉 시·도의 설립유형별 교원 수: 2014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전국	931	47,599	48,530	166	11,765	11,931	765	35,834	36,599
서울	76	6,575	6,651	4	821	825	72	5,754	5,826
부산	54	3,352	3,406	2	276	278	52	3,076	3,128
대구	85	2,656	2,741	7	332	339	78	2,324	2,402
인천	31	2,654	2,685	1	476	477	30	2,178	2,208
광주	28	1,761	1,789	1	318	319	27	1,443	1,470
대전	47	1,832	1,879	3	279	282	44	1,553	1,597
울산	31	1,193	1,224	1	183	184	30	1,010	1,040
세종	4	151	155	4	133	137	-	18	18
경기	229	12,146	12,375	42	2,776	2,818	187	9,370	9,557
강원	28	1,292	1,320	4	593	597	24	699	723
충북	34	1,405	1,439	6	706	712	28	699	727
충남	81	1,971	2,052	45	836	881	36	1,135	1,171
전북	27	1,994	2,021	4	795	799	23	1,199	1,222
전남	31	1,682	1,713	8	941	949	23	741	764
경북	69	2,788	2,857	8	862	870	61	1,926	1,987
경남	69	3,676	3,745	25	1,170	1,195	44	2,506	2,550
제주	7	471	478	1	268	269	6	203	209
2013	753	45,373	46,126	26	10,971	10,997	727	34,402	35,129
어린이집 (2014)	1,968	216,621	218,589	62	20,419	20,481	1,906	196,202	198,108

주: 1) 어린이집 교사에는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비담임)보조교사가 포함됨.

2) 어린이집에서 사립항목에 해당되는 설립유형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을 합산함.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2014.12.31. 기준).

3)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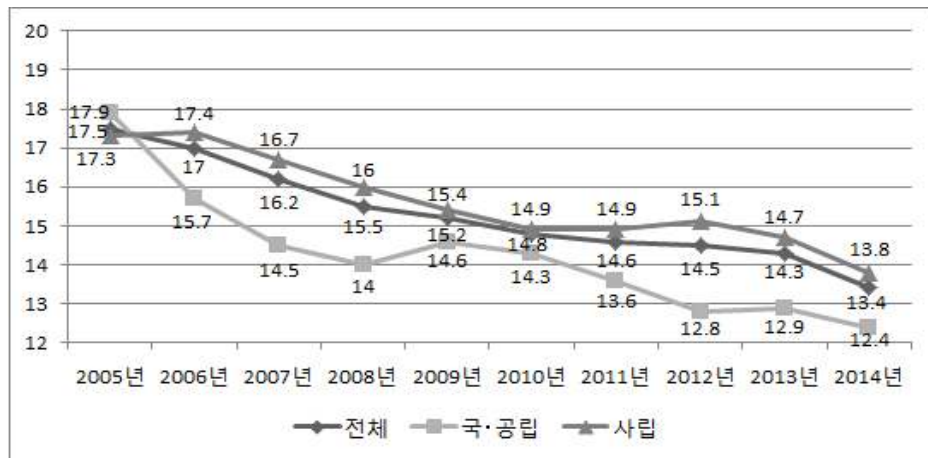
유치원의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5년 17.5명에서 2014년 13.4명으로 4.1명 감소하였다. 국·공립은 2005년 17.9명에서 2014년 12.4명으로, 사립유치원은 2005년 17.3명에서 2014년 13.8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II-3-2〉 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 및 교원 1인당 원아 수 추이: 2005-2014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교원수	원아수	교원1인당 원아수	교원수	원아수	교원1인당 원아수	교원수	원아수	교원1인당 원아수
2005	31,033	541,603	17.5	6,946	124,283	17.9	24,087	417,320	17.3
2006	32,096	545,812	17.0	7,737	121,324	15.7	24,359	424,488	17.4
2007	33,504	541,550	16.2	8,163	118,422	14.5	25,341	423,128	16.7
2008	34,601	537,822	15.5	8,482	119,128	14.0	26,119	418,694	16.0
2009	35,415	537,371	15.2	8,628	125,546	14.6	26,787	411,825	15.4
2010	36,461	538,587	14.8	8,827	126,577	14.3	27,634	412,010	14.9
2011	38,662	564,834	14.6	9,239	126,095	13.6	29,423	438,739	14.9
2012	42,235	613,749	14.5	9,969	127,347	12.8	32,266	486,402	15.1
2013	46,126	658,188	14.3	10,997	142,052	12.9	35,129	516,146	14.7
2014	48,530	652,546	13.4	11,931	148,269	12.4	36,599	504,277	13.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II-3-1〕 설립유형별 교원 1인당 원아 수 추이: 2005-2014

2014년 집계된 연령별 유치원 교원 수를 살펴보면, 24세 이하가 27.7%, 25~29세가 24.4%로 높게 나타났다. 이 때 국·공립유치원 교원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연령 분포에서 차이가 발견되는데, 국·공립유치원은 45~49세가 22.4%, 30~34세가 18.7%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사립유치원 교원은 24세 이하가 35.8%, 25~29세가 28.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평균 연령대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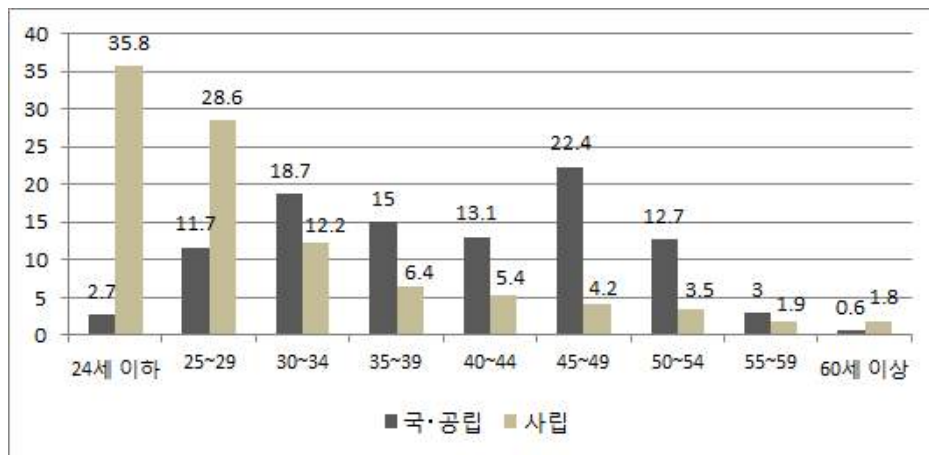
2014년 전체 유치원 교원의 연령 분포는 24세 이하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이어 25~29세 24.4%, 30~34세 13.8%, 45~49세 8.7%, 35~39세 8.5%, 40~44세 7.3%, 50~54세 5.8%, 55~59세 2.2%, 60세 이상 1.5%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유치원 교원의 전체 연령 분포가 24세 이하가 27.6%로 가장 높았고, 25~29세 25.5%, 30~34세 13.8%, 45~49세 9.2%, 35~39세 8.4%, 40~44세 7.4%, 50~54세 5.0%, 55~59세 1.7%, 60세 이상 1.3% 순이었던 점에 미루어볼 때, 2013년 대비 2014년 유치원 교원의 전체 수에는 미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연령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II-3-3〉 연령별 유치원 교원 수: 2014

단위: %, (명)

구분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계
전체	27.7 (13,442)	24.4 (11,852)	13.8 (6,718)	8.5 (4,129)	7.3 (3,543)	8.7 (4,232)	5.8 (2,805)	2.2 (1,072)	1.5 (737)	100.0(48,530)
국·공립	2.7 (327)	11.7 (1,392)	18.7 (2,237)	15.0 (1,792)	13.1 (1,562)	22.4 (2,678)	12.7 (1,514)	3.0 (359)	0.6 (70)	100.0(11,931)
사립	35.8 (13,115)	28.6 (10,460)	12.2 (4,481)	6.4 (2,337)	5.4 (1,981)	4.2 (1,554)	3.5 (1,291)	1.9 (713)	1.8 (667)	100.0(36,599)
2013	27.6	25.5	13.8	8.4	7.4	9.2	5.0	1.7	1.3	100.0(46,126)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2)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43.



[그림 II-3-2] 설립유형별 유치원 교원 연령 분포: 2014

2014년 4월 기준, 유치원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은 48,530명으로 원장 4,379명, 원감 1,489명, 수석교사 42명, 교사 38,042명, 보건교사 2명, 기간제교사 2,397명, 시간강사 88명이다. 2013년에는 수석교사가 전국 29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국·공립 20명, 사립 22명으로 총 42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유치원 교원 수는 48,530명으로 2013년 46,126명에 비해 2,404명이 증가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장은 2013년 3,818명에 비해 561명이 증가한 4,379명, 원감은 1,385명에 비해 104명이 증가한 1,489명, 수석교사는 29명에 비해 13명이 증가한 42명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2013년 37,599명에 비해 443명이 증가한 38,042명, 기간제교사는 2,343명에 비해 54명이 증가한 2,397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경우, 2013년 207명에서 2014년 88명으로 119명이 감소하였으며 보건교사는 2013년, 2014년 모두 2명으로 나타났다.

〈표 II-3-4〉 직위별 유치원 교원: 2014

단위: 명

구분	원장	원감	수석	교사	교사	보건	교사	기간제교사	시간	강사	계
전체	4,379	1,489	42	38,042	2	2,397	88	48,530			
국·공립	362	478	20	7,250	-	2,295	81	11,931			
사립	4,017	1,008	22	30,785	2	102	7	36,599			
2013	3,818	1,385	29	37,599	2	2,343	207	46,126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2)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44.

〈표 II-3-5〉 수석교사 분포 현황: 2014

단위: 명

구분	전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2	5	2	4	2	9	3	3	6	1	1	3	1	2
공립	20	-	-	-	2	4	3	3	1	1	1	2	1	2
사립	22	5	2	4	-	5	-	-	5	-	-	1	-	-
2013	29	4	-	-	5	6	1	1	2	1	3	2	2	2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2)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44.

지난 10년간의 유치원 직위별 교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원장, 원감, 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의 수가 증가했고,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수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0년간 총 교원의 수가 31,033명에서 48,530명으로 1.6배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직위는 기간제 교사(5.2배), 시간강사(3.0배)였

다. 원장(1.3배), 원감(1.7배), 교사(1.4배) 중에서는 원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3-6〉 유치원 직위별 교원 수 추이: 2005-2014

단위: 명

구분	원장	원감	수석 교사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계
2005	3,318	870	-	26,383	3	-	459	29	31,033
2006	3,309	904	-	27,412	3	-	468	25	32,096
2007	3,487	986	-	28,535	3	-	493	35	33,504
2008	3,533	1,033	-	29,460	3	-	572	115	34,601
2009	3,507	1,079	-	30,170	3	1	655	125	35,415
2010	3,658	1,169	-	31,007	4	-	623	163	36,461
2011	3,704	1,248	-	32,792	4	-	914	369	38,662
2012	3,670	1,327	14	35,760	3	-	1,461	356	42,235
2013	3,818	1,385	29	37,599	2	-	2,343	207	46,126
2014	4,379	1,489	42	38,042	2	1	2,397	88	48,53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2014년 자격별 유치원 교원 수를 살펴보면 2급 정교사가 전체의 61.8%로 가장 많았고, 1급 정교사(25.5%) 원장(9.4%), 원감(3.1%)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준교사는 전국에 7명으로 2013년 11명에 비해 감소했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은 1급 정교사가 61.5%, 2급 정교사가 30.0%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급 정교사가 72.2%, 1급 정교사가 13.7%로 국·공립유치원의 1급 정교사 비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4.5배 높았다. 2014년 자격별 유치원 교원 수는 2013년의 자격별 유치원 교원 수(2급 정교사 61.9%, 1급 정교사 26.0%, 원장 8.9%, 원감 3.0%, 기타 0.1%)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 II-3-7〉 자격별 유치원 교원: 2014

단위: 명, %

구분	원장	원감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보건교 사	기타	계
전체	4,571	1,517	12,363	30,008	7	10	37	48,530
자격별								
국·공립	411	560	7,340	3,578	2	7	17	11,931
사립	4,160	957	5,023	26,430	5	3	20	36,599
2013	4,116	1,387	12,002	28,566	11	6	38	42,235
비율								
전체	9.4	3.1	25.5	61.8	-	-	0.1	100.0
국·공립	3.4	4.7	61.5	30.0	-	-	0.1	100.0
사립	11.4	2.6	13.7	72.2	-	-	0.1	100.0
2013	8.9	3.0	26.0	61.9	-	-	0.1	100.0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2)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45.
 자격별 유치원 교원의 10년간 변화 추이의 경우 원장(1.4배), 원감(1.8배), 1급 정교사(1.5배), 2급 정교사(1.6배)가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은 총 교원의 증가 비율인 1.6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준교사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보건교사는 2005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영양교사는 2009년, 2010년과 2014년에만 1명이 있었다.

〈표 II-3-8〉 자격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 2005-2014

단위: 명

구분	원장	원감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타	계
2005	3,286	832	8,084	18,717	10	48	-	56	31,033
2006	3,371	881	8,427	19,326	9	44	-	38	32,096
2007	3,621	973	8,794	20,006	5	68	-	37	33,504
2008	3,674	1,032	9,103	20,749	4	3	-	36	34,601
2009	3,650	1,129	9,527	21,052	10	3	1	43	35,415
2010	3,801	1,159	9,995	21,447	10	4	1	44	36,461
2011	3,834	1,235	10,649	22,872	24	3	-	45	38,662
2012	3,864	1,289	11,253	25,757	21	7	-	44	42,235
2013	4,116	1,387	12,002	28,566	11	6	-	38	46,126
2014	4,571	1,517	12,363	30,008	7	10	1	37	48,53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유치원의 교원 수를 경력별로 살펴보면, 전체 교사 중 5년 미만 경력의 교사가 51.2%, 5~9년 경력 교사가 20.9%로 가장 많았다. 국·공립유치원은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21.5%, 25~29년 경력 교사가 21.4%로 많았으며, 사립유치원은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6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9년 경력 교사가 21.0%로 많았다. 20년 이상 경력 교사는 국·공립유치원이 36.5%로, 사립유치원(5.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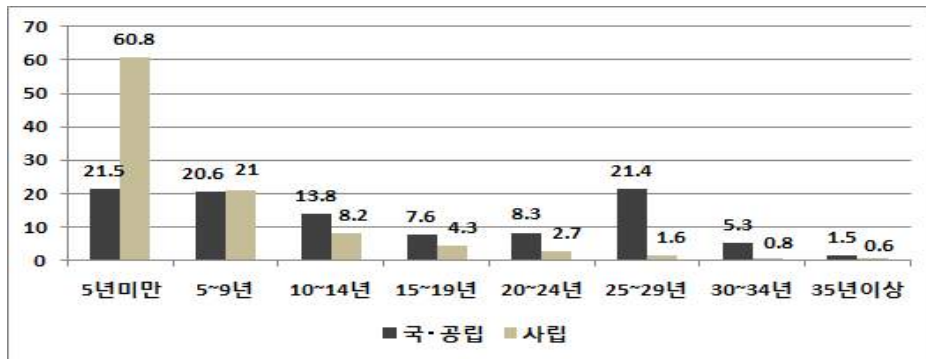
2014년 전체 유치원 경력별 교원 수는 5년 미만 51.2%, 5~9년 20.9%, 10~14년 9.6%, 25~29년 6.4%, 15~19년 5.1%, 20~24년 4.1%, 30~34년 1.9%, 35년 이상 0.8%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유치원 경력별 교원 수 또한 5년 미만 교사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5~9년 21.0%, 10~14년 10.0%, 25~29년 6.7%, 15~19년 5.1%, 20~24년 4.7%, 30~34년 1.6%, 35년 이상 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3-9〉 경력별 유치원 교원 수: 2014

구분	단위: 명, %								계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34년	35년이상	
전체	24,832	10,134	4,638	2,496	1,980	3,120	946	384	48,530
	51.2	20.9	9.6	5.1	4.1	6.4	1.9	0.8	100.0
국·공립	2,568	2,456	1,651	912	985	2,548	635	176	11,931
	21.5	20.6	13.8	7.6	8.3	21.4	5.3	1.5	100.0
사립	22,264	7,678	2,987	1,584	995	572	311	208	36,599
	60.8	21.0	8.2	4.3	2.7	1.6	0.8	0.6	100.0
2013	23,234	9,707	4,616	2,334	2,154	3,071	761	249	46,126
	50.4	21.0	10.0	5.1	4.7	6.7	1.6	0.5	100.0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2)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46.



[그림 II-3-3] 경력별 유치원 교원 분포: 2014

<표 II-3-10>은 전국 유치원 교사 학력 분포 현황이다. 전체 48,530명의 교사 중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는 24,957명으로 51.4%이며 2, 3년제 대학 졸업 교사는 23,555명으로 전체의 48.5%이다. 고졸 이하 학력자는 전국에 18명이 있다.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87.1%로 가장 높고 60% 이상으로 높은 지역이 전남 66.0%, 충북 63.1%, 충남 63.1%이다.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 36.6%, 부산 38.5%, 울산 39.1%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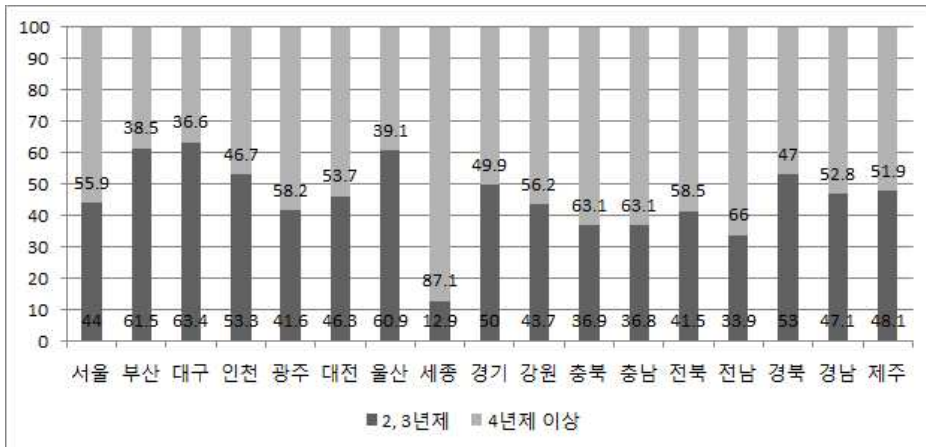
2014년 2, 3년제 대학 졸업 교사 수는 2013년 23,206명에 비해 349명 증가한 23,555명으로 나타났으나 비율은 전년도 대비 1.8%p 감소했다. 이에 비해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는 2013년 22,900명에 비해 2,057명 증가한 24,957명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1.8%p 증가했다. 한편 고졸 이하 학력자는 2013년 20명에서 2014년 18명으로 2명 감소했다.

<표 II-3-10> 시·도별 교원 학력 분포 현황: 2014

단위: 명, %

구분	교원 수				비율			
	고졸이하	2, 3년제	4년제 이상	계	고졸이하	2, 3년제	4년제 이상	계
전국	18	23,555	24,957	48,530	0.0	48.5	51.4	100.0
서울	1	2,929	3,721	6,651	0.0	44.0	55.9	100.0
부산	2	2,094	1,310	3,406	0.1	61.5	38.5	100.0
대구	-	1,739	1,002	2,741	-	63.4	36.6	100.0
인천	1	1,430	1,254	2,685	0.0	53.3	46.7	100.0
광주	2	745	1,042	1,789	0.1	41.6	58.2	100.0
대전	-	870	1,009	1,879	-	46.3	53.7	100.0
울산	1	745	478	1,224	0.1	60.9	39.1	100.0
세종	-	20	135	155	-	12.9	87.1	100.0
경기	5	6,192	6,178	12,375	0.0	50.0	49.9	100.0
강원	1	577	742	1,320	0.1	43.7	56.2	100.0
충북	-	531	908	1,439	-	36.9	63.1	100.0
충남	2	755	1,295	2,052	0.1	36.8	63.1	100.0
전북	1	838	1,182	2,021	0.0	41.5	58.5	100.0
전남	1	581	1,131	1,713	0.1	33.9	66.0	100.0
경북	-	1,514	1,343	2,857	-	53.0	47.0	100.0
경남	1	1,765	1,979	3,745	0.0	47.1	52.8	100.0
제주	-	230	248	478	-	48.1	51.9	100.0
2013	20	23,206	22,900	46,126	0.0	50.3	49.6	100.0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2)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47.



[그림 II-3-4] 16개 시·도별 교원 학력 분포: 2014

최근 10년간 4년제 이상 학력 교사 비율 추이는 <표 II-3-11>과 같다. 2005년에는 4년제 이상 학력 교사 비율이 전체 유치원에서 40.6%, 국·공립에서 76.6%, 사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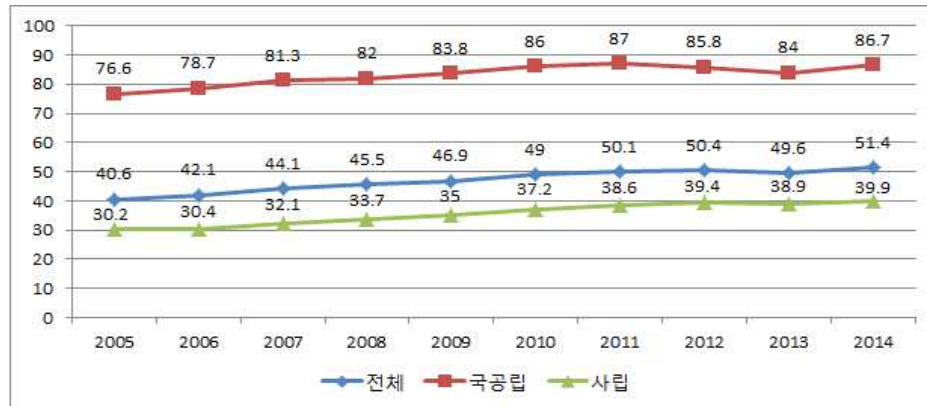
30.2%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유치원에서 51.4%, 국·공립에서 86.7%, 사립에서 39.9%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교사 비율이 약 11%p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비교하면, 국·공립 교사의 4년제 이상 학력 교사 비율이 사립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표 II-3-11〉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교사 비율 추이: 2005-2014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40.6	42.1	44.1	45.5	46.9	49.0	50.1	50.4	49.6	51.4
국공립	76.6	78.7	81.3	82.0	83.8	86.0	87.0	85.8	84.0	86.7
사립	30.2	30.4	32.1	33.7	35.0	37.2	38.6	39.4	38.9	39.9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II-3-5〉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교사 비율 추이: 2005-2014

2) 교원 연수 현황

〈표 II-3-12〉는 2014년 4월 1일 기준 교원 연수 현황으로 총 48,530명 중 62.9%가 지난 5년간 한 번도 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를 받은 집단 중에서 연수를 1회 받은 경우가 11.2%, 2회를 받은 경우가 7.6% 순이다.

〈표 II-3-12〉 연수 이수 교원 현황: 2014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계
전체	62.9 (30,546)	11.2 (5,419)	7.6 (3,706)	5.5 (2,682)	4.1 (1,981)	2.8 (1,383)	5.8 (2,813)	100.0(48,530)

단위: %(명)

(표 II-3-12 계속)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계
설립유형별								
국·공립	29.3 (3,490)	9.9 (1,186)	14.4 (1,714)	14.1 (1,678)	11.4 (1,359)	7.7 (922)	13.2 (1,582)	100.0(11,931)
사립	73.9 (27,056)	11.6 (4,233)	5.4 (1,992)	2.7 (1,004)	1.7 (622)	1.3 (461)	3.4 (1,231)	100.0(36,599)
자격별								
교(원)장	70.5 (3,221)	10.1 (460)	5.3 (242)	3.6 (164)	2.7 (126)	2.4 (112)	5.4 (246)	100.0(4,571)
교(원)감	38.5 (585)	13.5 (205)	9.0 (137)	9.6 (146)	7.1 (107)	7.1 (107)	15.2 (230)	100.0(1,517)
1급 정교사	34.9 (4,322)	12.5 (1,544)	13.4 (1,653)	12.1 (1,492)	9.6 (1,182)	6.2 (766)	11.3 (1,404)	100.0(12,363)
2급 정교사	74.5 (22,371)	10.7 (3,206)	5.6 (1,672)	2.9 (878)	1.9 (564)	1.3 (397)	3.1 (920)	100.0(30,008)
준교사	71.4 (5)	14.3 (1)	14.3 (1)	-	-	-	-	100.0(7)
보건교사	90.0 (9)	-	-	-	-	-	10.0 (1)	100.0(10)
영양교사	100.0 (1)	-	-	-	-	-	-	100.0(1)
기타	86.5 (32)	8.1 (3)	2.7 (1)	2.7 (1)	-	-	-	100.0(37)
2013	48.6 (13,782)	19.4 (8,930)	6.1 (2,792)	3.3 (1,514)	2.2 (1,033)	1.8 (830)	18.7 (8,628)	100.0(46,126)

주: 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국외연수, 기타연수(자격, 직무, 특별, 국외연수를 제외한 그 밖의 연수)를 포함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설립유형별 교원의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은 교원 연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원 비율인 29.3% 다음으로 2회 이상 연수를 받았다는 비율이 14.4%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원 비율이 73.9%에 달하며 교원 연수를 1회 받았다는 비율이 11.6%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 참여율이 국·공립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원 자격별로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에서 한 번도 연수를 받지 않은 교원 비율이 각각 100.0%, 90.0%, 74.5%, 71.4%로 나타나 다른 자격 소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나. 성과와 과제

2014년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11,931명, 사립유치원 교원은 36,599명으로 사립이 3.1배 많다. 한편 유치원의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 인구 수 감소로 인한 영향도 있으나 정부의 학급당 유아 수 감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이 시·도별 편차가 큰 상황(최은영·황성온·황우상, 2012)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유아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최소 기준(범위 설정)이 마련하고, 지역 상황에 따른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연령별 유치원 교원 수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교원은 24세 이하가 35.8%, 25~29세가 28.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평균 연령대가 더 높았다. 경력별로도 사립유치원은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60.8%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 경력 교사는 국·공립유치원이 36.5%로, 사립유치원(5.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저연령, 저경력 교사가 지배적인 이유는 처우와 근로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교사의 이직의도 원인은 보수, 원장, 적성 순으로 직무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전일우, 2003)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함을 반증한다. 또한 교사의 이직은 유아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사립유치원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유치원 평가

가. 현황

유치원 평가는 3년 주기로 전체 유치원의 1/3씩 진행하고 있다. 제2주기 유치원 평가는 전체 유치원의 96.3%가 참여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제 3주기 1년차 유치원 평가가 완료되었다. 제 3주기 1년차 유치원 평가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유치원의 29.7%인 2,635개원이 참여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39.3%인 1,815개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19.5%인 820개원이 참여하였다. 제 3주기 1년차 유치원 평가 완료율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제주가 57.0%로 완료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종 46.7%, 대전 35.1%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완료율이 낮은 지역은 충남 23.9%, 서울 26.1%, 경북 29.1% 순이다.

〈표 II-4-1〉 유치원 평가 추진 현황

단위: %(개원)

시도	제3주기(1년차) 평가완료유치원			완료율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전국	69.2(1,815)	31.3(820)	100.0(2,635)	39.3	19.5	29.7
서울	48.9(113)	51.1(118)	100.0(231)	61.1	16.9	26.1
부산	50.0(64)	50.0(64)	100.0(128)	84.2	20.1	32.4
대구	85.2(104)	14.8(18)	100.0(122)	82.5	7.2	32.5
인천	40.6(52)	59.4(76)	100.0(128)	33.8	29.5	31.1
광주	31.7(32)	68.3(69)	100.0(101)	26.0	37.3	32.8
대전	100.0(93)	-	100.0(93)	100.0	-	35.1
울산	29.4(20)	70.6(48)	100.0(68)	25.6	40.7	34.7
세종	100.0(14)	-	100.0(14)	51.9	-	46.7
경기	54.6(342)	45.4(284)	100.0(626)	31.4	27.1	29.3
강원	76.5(91)	23.5(28)	100.0(119)	32.9	25.9	30.9
충북	100.0(111)	-	100.0(111)	44.2	-	32.3
충남	100.0(121)	-	100.0(121)	32.9	-	23.9
전북	71.6(121)	28.4(48)	100.0(169)	33.5	29.1	32.1
전남	100.0(137)	8.0(11)	100.0(148)	31.6	9.4	24.9
경북	100.0(208)	-	100.0(208)	44.6	-	29.1
경남	69.4(127)	30.6(56)	100.0(183)	30.3	21.3	26.8
제주	100.0(65)	-	100.0(65)	70.7	-	57.0

자료: 교육부(2015). 제3주기(1년차) 유치원 평가. 내부자료.

나. 성과와 과제

3주기 유치원 평가는 시도 교육청이 평가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교육부는 평가 지원하는 체제로,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과 연계한 공개 정보를 활용하도록 개선하고, 유치원 결과 공개, 매년 자체평가를 내실화하여 유치원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여 유치원 운영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교육부 3주기 유치원평가 중앙연수 자료, 2014). 유치원 평가는 현재 3주기 2년차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치원평가 참여율은 1주기 99.8%(최은영·김정숙·송신영, 2013), 2주기 96.3%(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로 대부분의 유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3주기 평가는 제 2주기(2001~2013)의 평가항목과 지표를 통합하여 4개 영역, 11개 지표, 30개 요소로 축소되어 유치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평가를 통한 질 관리 체계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의 내부자의 참여, 부모참여를 통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는 ‘유보통합’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요구를 최대한 고려하여 기관, 교사 격차를 최소화하며,

시설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단계적인 유보통합안을 발표하였다(국무조정실, 2013. 12. 3). 이에 2014년 2월 발족한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3단계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도 자료(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4. 12. 16)에 따르면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공통 핵심사항을 점검·평가하고, 현장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사항 위주로 지표를 간소화하였다. 통합평가는 2015년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업을 통한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시범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질 제고 기제로서의 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 방과후 과정 운영

가. 현황

2014년 전국의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은 전체 97.2%며 모든 시·도에서 93% 이상으로 대부분의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강원이 99.2%로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93.3%로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5-1〉 시·도별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2014

																	단위: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율	97.2	96.6	99.2	98.1	97.6	98.4	97.7	95.9	93.3	97.1	99.2	98.3	93.9	98.1	95.3	97.2	97.5	98.2

주: 방과후 과정 운영비율=(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수/총 유치원 수)×100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과정 관련 현황. 내부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은 2013년 대비 0.8%p 감소하였으나 이용률은 4.7%p 증가하였다.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73.3%에서 2014년 97.2%로 크게 증가하여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이용률 역시 2005년 20.8%에서 2014년 67.5%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1-5-2〉 방과후 과정 운영·이용률 추이: 2005-2014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	73.3	82.6	90.9	95.5	98.1	97.6	98.1	98.0	97.2
방과후 과정 이용률	20.8	25.4	28.3	36.1	44.8	52.6	47.4	62.0	62.8	67.5

단위: %

주: 1) 방과후 과정 운영비율=(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수/총 유치원 수)×100

2) 방과후 과정 이용률=(방과후 과정 등록 취원아 수/총 취원아 수)×100

자료: 1)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40, p.54.

2) 각 시·도 교육청(2014). 방과후 과정 등록 취원아 수. 보고자료.

나. 성과와 과제

방과후 과정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되며, 금액은 국·공립유치원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70,000원이다. 방학기간 중에도 1일 8시간 이상, 교육활동 및 그 밖의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방과후 과정비가 지원(교육부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015. 1)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요구가 커짐에 따라 유치원의 돌봄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2005년 20% 정도에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약 70%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만 3-5세 취원아의 10중 7명이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방과후 과정비의 무상지원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도입된 이후 방과후 과정의 개념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방과후 과정에 특성화 활동이 포함되면서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의 심화, 돌봄보다는 초등학교 방과후의 특별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어, 특성화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실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방과후 과정은 교육기회 균등의 차원과는 다른 개념으로 부모들의 불필요한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6.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가. 현황

2014년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진흥원은 14개이며, 체험 교육원(체험교육센터)은 14개이다. 진흥원 이용아 수는 총 229,242명, 체험원 이용아 수는 총 120,552명이다. 전체 유치원 취원아 652,546명 중에서 53.6%가 유아교육진흥원과 체험교육원(체험센터)을 이용하여 유아 이용률이 전년도 대비 13.7%p 증가하였다.

〈표 II-6-1〉 유아교육진흥원·체험교육원(체험센터) 수 및 이용률: 2014

단위: 개원, 명, %

구분 지역	유아교육 진흥원 수	체험 교육원 (체험교육센터) 수	진흥원 이용아 수	체험원 (체험교육센터) 이용아 수	취원아 수	유아 이용률
전체	14	14	229,242	120,552	652,546	53.6
서울	1	-	46,290	-	91,195	50.8
부산	1	1	24,013	18,410	43,909	96.7
대구	1	-	16,165	-	34,544	46.8
인천	1	-	-	-	40,369	-
광주	1	-	18,946	-	22,288	85.0
대전	1	-	17,043	-	25,024	68.1
울산	1	-	22,213	-	18,336	121.1
세종	-	-	-	-	1,699	-
경기	- ³⁾	1	-	36,018	181,812	19.8
강원	1	-	9,916	-	15,947	62.2
충북	1	-	10,483	-	17,489	59.9
충남	1	1	21,453	10,348	26,096	121.9
전북	1	-	25,461	-	23,296	109.3
전남	1	-	5,459	-	18,951	28.8
경북	-	9	-	37,234	37,274	99.9
경남	1	2	7,592	18,542	49,011	53.3
제주	1	-	4,190	-	5,296	79.1
2013	15	13	206,126	56,578	658,188	39.9

주: 1) 인천, 경기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사·부모연수만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이용률이 제외됨.

2) 경북 지역은 유아교육체험센터 형태로 9개가 운영되고 있음.

3) 2015년 3월에는 경기도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폐지하여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는 전국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14개가 운영 중인.

4) 유아 이용률 =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이용아 수/취원아 수)×100 기준일: 2014. 9.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3). 각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 교육원 운영현황. 내부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취원아 수.

3)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56.

2014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경기, 경북을 제외한 14개 지역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되어 있다. 지역별 유아 이용률을 살펴보면 충남 121.9%, 울산 121.1%, 전북 109.3%, 경북 99.9% 순으로 높았고, 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19.8%, 전남 28.8% 순이다. 2014년 유아교육진흥원 수는 14개로 2013년 대비 1개 줄었으며, 진흥원 이용아 수는 2013년 206,126명에 비해 23,116명 증가한 229,242명이며, 체험교육원(체험교육센터) 이용아 수는 56,578명에 비해 63,974명 증가한 120,552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체험교육센터)의 이용아 수의 증가로 인해 유아 이용률도 2013년 39.9%에서 13.7%p 증가한 53.6%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체험센터) 수 및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6-2>와 같다. 유아교육진흥원 수는 2010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체험교육원의 수 또한 2010년 대비 9개소가 증가하였다. 진흥원 이용아 수는 2012년 183,784명에서 2014년 229,24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체험원 이용아 수는 2012년 84,925명에서 2013년 56,57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20,55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6-2> 유아교육진흥원·체험교육원(체험센터) 수 및 이용률 추이: 2009-2014

단위: %(개원)

구분 지역	유아교육 진흥원 수	체험 교육원 수	진흥원 이용아 수	체험원 이용아 수	취원아 수	유아 이용률
2014	14	14	229,242	120,552	652,546	53.6
2013	15	13	206,126	56,578	658,188	39.9
2012	12	13	183,784	84,925	613,749	43.8
2011	7	4	-	-	564,834	49.5
2010	5	5	-	-	538,587	-

- 자료: 1)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56.
 2)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58.
 3) 김은설·황성온·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 46.
 4) 김은설·이윤진·김경미(2011).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36.
 5)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38.

나. 성과와 과제

유아교육진흥원이 시·도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역 규모에 따라서 하나의 기관으로 시설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도시 지역의 체험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체험교육원 설치도 바람

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경북 지역은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9개의 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진흥원을 본원으로 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연수,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분원 형태의 체험교육원 및 체험센터를 설치하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경기교육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를 분리·신설하고, 이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폐지하는 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논란이 뜨거웠다(에듀뉴스, 2015. 1. 5). 향후 유보통합을 고려한다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역사회 유아교육 지원체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지역사회지원을 위한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영유아, 학부모들을 위한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7.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가. 현황

2014년 7월 기준으로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는 총 88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5,052개 유치원이 참여하였다. 네트워크의 수는 경남 312개, 경기 238개, 경북 132개 순으로 많았고, 참여 유치원 수는 경남 1,766개, 서울 878개, 경북 464개 순으로 많았다. 2014년 전체 협력 네트워크 예산은 6,114,326천 원이었으며 경기도 2,975,000천 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남이 100천 원으로 가장 작았다.

〈표 II-7-1〉 협력 네트워크 현황: 2014

단위: 개, 개원, 천 원

구분 지역	네트워크 수	총 참여 유치원 수	네트워크 당 참여유치원 수		예산
			최소	최대	
전체	886	5,052	1	700	6,144,326
서울	11	878	47	103	577,600
부산	5	71	10	22	5,000
대구	-	-	-	-	-

(표 II-7-1 계속)

구분 지역	네트워크 수	총 참여 유치원 수	네트워크 당 참여유치원 수		예산
			최소	최대	
인천	18	400	42	301	53,140
광주	7	14	2	2	1,200
대전	12	151	10	101	39,567
울산	19	194	2	44	413,260
세종	8	16	2	2	25,000
경기	238	368	1	6	2,975,000
강원	15	86	3	8	154,000
충북	10	75	6	17	100,000
충남	37	160	34	61	29,998
전북	28	299	47	69	32,834
전남	26	52	27	39	100
경북	132	464	3	5	831,300
경남	312	1,766	6	700	506,327
제주	8	58	4	10	400,000
2013	691	3,912	1	431	8,393,005

자료: 각 시·도 교육청(2014).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현황. 보고자료.

2014년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수는 886개로 2013년 691개에 비해 195개 증가하였으며, 네트워크 당 참여유치원 수 또한 2014년 최대 700개로 2013년 431개에 비해 269개 증가했다. 참여유치원 수는 5,052개로 2013년 3,912개에 비해 1,140개 증가하였으나, 예산의 경우 6,144,326천 원으로 2013년 8,393,005천 원에 비해 26.8%p 감소하였다.

<표 II-7-2> 협력 네트워크 현황 추이: 2010-2014

단위: 개, 개원, 천 원

구분 지역	네트워크 수	총 참여 유치원 수	네트워크 당 참여유치원 수		예산
			최소	최대	
2014	886	5,052	1	700	6,144,326
2013	691	3,912	1	431	8,393,005
2012	521	4,111	1	269	10,853,970
2011	505	4,533	347	802	8,536,730
2010	808	-	-	-	11,060,574

자료: 1)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58.
 2)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60.
 3) 김은설·이운진·김경미(2011).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 37.
 4)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 38.

나. 성과와 과제

유아교육은 교육적 기능 외에도 맞벌이 가정 지원 및 저출산 대응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역 내 상호협력을 통한 유치원간 교육격차 완화 및 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 사업과 연계하여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었다. 공·사립유치원 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공유, 인정·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경영 협력, 교원 전문성 신장,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의 문제점으로 거점 유치원의 업무 과중, 예산 지원 부족이 지적된 바 있다(김은영·최은영·조혜주, 2010). 2014년까지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예산을 감소하는 있는 추세로 협력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가 낮은 지역 등 지역별로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8. 유아교육 재정

가. 현황: 2010-2014

유아교육 재정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자체예산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 개설편의 시설의 다섯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세부사업별 유아교육 지원 사업의 구분은 <표 II-8-1>과 같다. 2013년부터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농어업인 유아학비 지원, 맞벌이가구 유아학비 지원 등 기타 지원금 항목은 삭제되었으며,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 내 유아교육진흥 사업으로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예산이 추가되었고,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 누리과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예산이 추가되었다.

〈표 II-8-1〉 유아교육 지원 사업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인적자원 운용	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 정규교직원 인건비, 기타 공립유치원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 기간제(시간제)교사 인건비, 기타 공립유치원 비정규직 인건비
교수-학습 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운영비,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유치원 정보공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 네트워크, 유치원 종합건설당단,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 수석교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유치원 교원동아리, 유치원 교원멘토링,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희망유아교육사, 누리과정 교원연수, 누리과정 자료보급,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 유치원 교재교구, 방과후과정반 시설환경 개선,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공립단설유치원 제외),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기타 유아교육진흥 사업비
교육복지 지원	누리과정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3-4세 유아학비 지원, 3-5세 방과후과정비 지원, <u>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u> , 기타 유아학비 지원 사업비
	급식지원	저소득층 유아 급식비 지원, 기타 유아 급식 지원 사업비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기타 공립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비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학생수용시설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기타 원아수용시설 설립비,
	교육환경개선시설	공립 단설유치원 환경 개선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 기타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주: 밑줄은 2013-2014 추가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60.

2014년도 유아교육 예산 전체 결산액은 약 4조 9,814억 원이다. 지역별로 결산액의 절대규모를 비교하면 경기 예산이 약 1조 3,298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약 6,785억 원), 경남(약 3,707억 원), 경북(약 2,790억 원) 순이다. 결산액의 절대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으로 약 611억 원이며 다음으로 제주가 약 656억 원, 울산이 약 1,191억 원, 대전이 약 1,537억 원으로 작게 나타났다.

〈표 II-8-2〉 2014년도 시·도별 유아교육 재정: 2014년 결산

(단위: 백만 원)

시·도 교육청	결산액
서울	678,521
부산	259,044
대구	200,555
인천	234,210
광주	167,272
대전	153,741
울산	119,138
세종	61,147
경기	1,329,808
강원	216,560
충북	181,148
충남	237,271
전북	223,214
전남	204,294
경북	279,088
경남	370,777
제주	65,683
총 합계	4,981,471

자료: 교육부(2015). 유치원 14년 결산. 내부자료.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아교육 항목별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2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7.4% 증가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2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년도와의 항목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육비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8-3〉 항목별 예산: 2010-2014

단위: 백만 원

구분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2010	567,573	53,102	667,431 ¹⁾	211,912	1,500,018
2011	815,144	46,987	795,008	266,764	1,923,903
2012	720,019	395,261	1,618,939	287,008	3,021,225
2013	661,737	351,608	2,128,615	403,597	3,545,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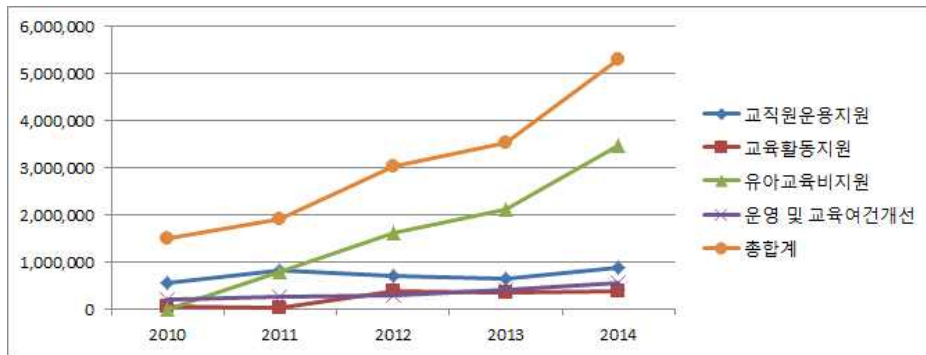
(표 II-8-3 계속)

구분	교직원운용지원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총합계	
2014 ²⁾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개선	5,304,268
	896,579	377,710	3,466,699	193,955	369,325	

주: 1) 2010년 유아교육비지원은 유아학비 및 종일반비 지원임.

2) 2014년 단위사업 구분이 변경으로 교육복지지원에 누리과정과 급식지원이 포함되었으
며,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분리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각 년도). 유아교육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별. 내부자료.



[그림 II-8-1] 항목별 예산 추이: 2010-2014

2014년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에 비해 약 1조 1,645억여 원 증액되었으며 2013년 전체 유아교육 재정 중 공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약 1조 3,177억 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약 1조 6,580억 원이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 보면 3-5세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급식 지원이 포함된 교육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지원 예산도 확대 되어 누리과정 지원뿐 아니라 일부 시도에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여건개선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 1인당 교육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279만원이었으며,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급격히 증가해 2014년 56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8-4〉 유아 1인당 교육예산: 2010-2014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유아 1인당 교육예산	2,785	3,406	4,870	6,289	5,624

단위: 천 원

주: 유아 1인당 교육예산=유아교육 예산/취원아 수

자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 17.

2013년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은 0.3%이며 여기에 보육 재정을 합하면 GDP 대비 0.9%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이는 2013년 시행된 3-5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비용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성과와 과제

유아교육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아학비 지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2015년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되던 3~4세 어린이집 기관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교육교부금으로 통합되어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2~2016년도 사이에 2배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비 지원은 국가의 재정 형편에 따라 시간, 또는 대상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시간 중 반일제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일반은 유상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박은혜·신은수, 2012). 국가 재정이 투입될 경우,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전달체계를 단순화해서 재정의 중복 투입과 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재정지원 과정이 투명하여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누리과정 운영에 적합한 표준 유아교육비가 산출되어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재정지원과 기관의 질 제고 방안이 연계되어야 한다.

9. 주요 지표별 현황 및 소결

본 장에서 논의한 유아교육정책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의 유아교육 성과 지표를 <표 II-9-1>에 제시하였다.

<표 II-9-1> 주요 유아교육 지표: 2010-2014

지표 영역	유아교육 세부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출처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치원 수	8,388개원	8,424개원	8,538개원	8,678개원	8,826개원	유치원 통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학급 수	25,670개	26,990개	28,386개	30,597개	33,041개		
	유치원 이용률	만 3세	22.6%	30.3%	28.1%	32.7%		33.1%
		만 4세	40.5%	44.4%	46.5%	50.0%		51.0%
		만 5세	56.4%	53.7%	56.1%	56.3%		57.3%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23.5%	22.3%	20.7%	21.6%	22.7%		
교사 1인당 유아 수	14.8명	14.6명	14.5명	14.3명	13.4명			
유아 교육 재정	GDP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	0.127%	0.149%	0.206%	0.289%	0.291%	교육부	
	총 교육재정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	3.5%	4.1%	5.2%	7.6%	8.7%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 ¹⁾	2,785천원	3,264천원	5,097천원	4,521천원	7,637천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비율 ²⁾	43.8%	52.6%	49.5%	40.1%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	72,296백만원	65,582백만원	30,888백만원	35,424백만원	63,989백만원		
유아 학비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율 ³⁾	49.5%	53.0%	87.2%	101.8%	101.8%	교육부	
	3, 4세 유아학비 지원율 ⁴⁾	53.6%	51.3%	43.4%	102.4%	(3-5세)		
교사 근무 환경	유치원 교원 수	36,461명	38,662명	42,235명	46,126명	48,530명	유치원 통계 시·도 교육청 교육부	
	유치원 교원급여	공립	-	385만원	385만원	423만원 ⁵⁾		-
		사립	-	214만원	214만원	236만원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 ⁶⁾	225천원(월)	251천원(월)	326천원(월)	328천원(월)	345천원(월)		
사립교사처우개선수당지급교사 비율	90.2%	100%	100%	100%	100%			
방과후 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98.1%	99.5%	98.1%	98.0%	97.2%	유치원 통계 시·도 교육청	
	방과후 과정 이용률	54.8%	47.4%	62.0%	62.8%	67.5%		
유치원 평가	유치원평가 참여 비율	99.8% (1주기 3년차)	26.4% (2주기 1년차)	61.8% (2주기 2년차)	96.3% (2주기 3년차)	29.7% (3주기 1년차)	유치원 통계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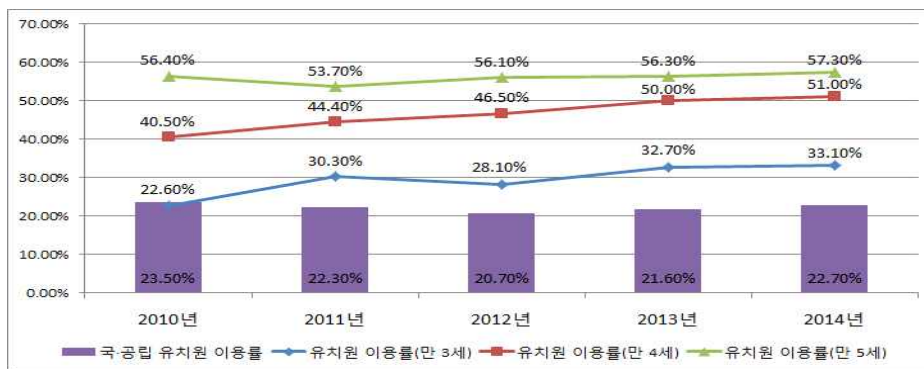
(표 II-9-1 계속)

지표영역	유아교육 세부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출처
유아교육지원체계	유아교육진흥원 수	8개	16개	13개 ⁷⁾	15개	14개	교육부
	체험교육원 수	3개	6개	13개	13개	14개	교육부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 참여유치원 비율	36.8%	55.7%	48.1%	45.1%	57.2%	시·도 교육청

주: 1) 2012년은 교육부 예산 어린이집 지원금액 포함하여 산출, 2013년은 교육부 예산 중 유치원 지원금액만 산출함.
 2)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유치원 지원 총 금액x100, 교육부 사정으로 2014년 자료는 수 집계되지 않음.
 3) 5세 유아학비 지원아 수/총 5세 취원아 수x100, 유아의 기관이동에 따른 중복 집계로 인해 100%가 초과됨.
 4) 3, 4세 유아학비 지원아 수/총 3, 4세 취원아 수x100, 유아의 기관이동에 따른 중복 집계로 인해 100%가 초과됨.
 5) 공립유치원정규교직원인건비만 포함, 기간제 교사 제외, 2014년에는 조사되지 않음.
 6) (Σ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결산액)/교사 수/12개월
 7) 경남유아교육원 포함 수치로 유아교육진흥원 수는 12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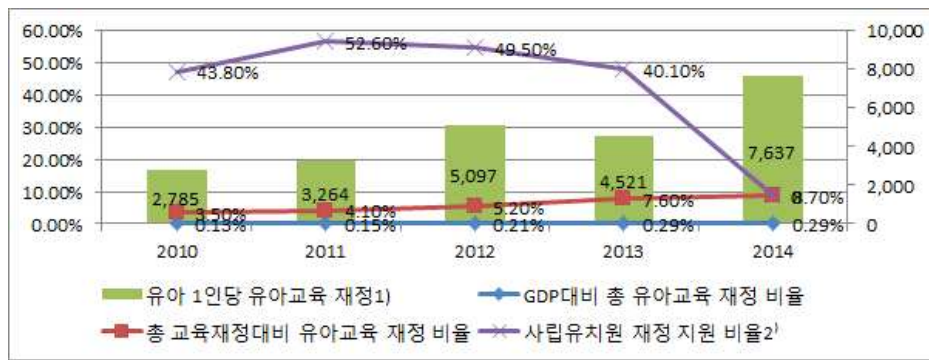
자료: 1)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190.
 2)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147.
 3)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75.
 4)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73.

유치원 설치와 이용 측면에서는 유치원 수, 학급 수 모두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 수는 2010년 8,388개원에서 2014년 8,826개원으로 증가했으며, 학급 수 또한 2010년 25,670개에서 2014년 33,041개로 확대되었다. 만 3세부터 5세 취원율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3~4세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의 상승폭이 컸던 것에 비해 2014년 상승폭은 크지 않다. 만 5세 취원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2010년 23.5%에서 2014년 22.7%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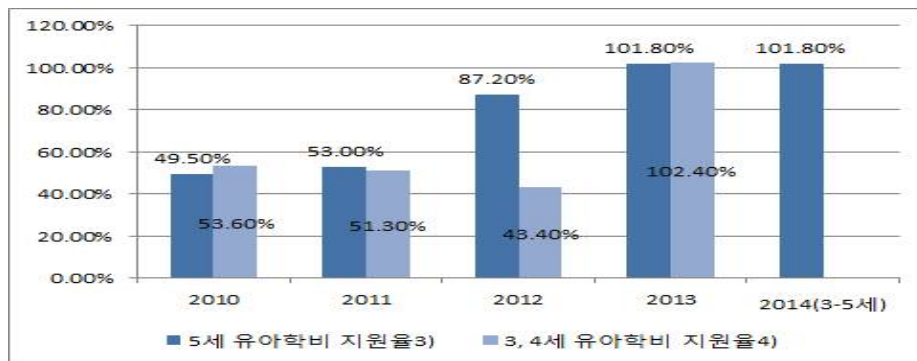
[그림 II-9-1] 유치원 이용률 추이: 2010-2014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 비율은 2010년 0.127%에서 2014년 0.291%로 증가하였으며 총 교육재정대비 유아교육 재정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4년 8.7%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0년 유아 1인당 유아교육 재정은 2,785천원이었으며, 2014년 7,637천원으로 2010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는 2010년 72,296백만 원에서 2014년 63,989백만 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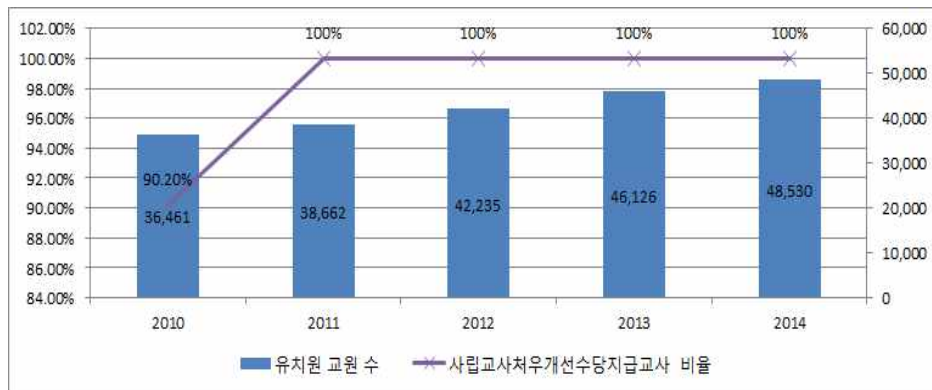
[그림 11-9-2] 유아교육 재정 변화 추이: 2010-2014

유아학비지원 지표를 살펴보면, 5세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율은 2010년 49.5%에서 2012년 87.2%로 급증했고, 2014년에는 101.8%로 증가하였다. 유아학비 지원율은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13년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취원아 전체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림 11-9-3] 유아학비 지원율 추이: 2010-2014

유치원 교원 수는 2010년 36,461명에서 2014년 48,53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수당액도 2010년 275천원에서 2014년 345천원으로 증가하였다. 교사 처우개선 수당지급 비율은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사 전체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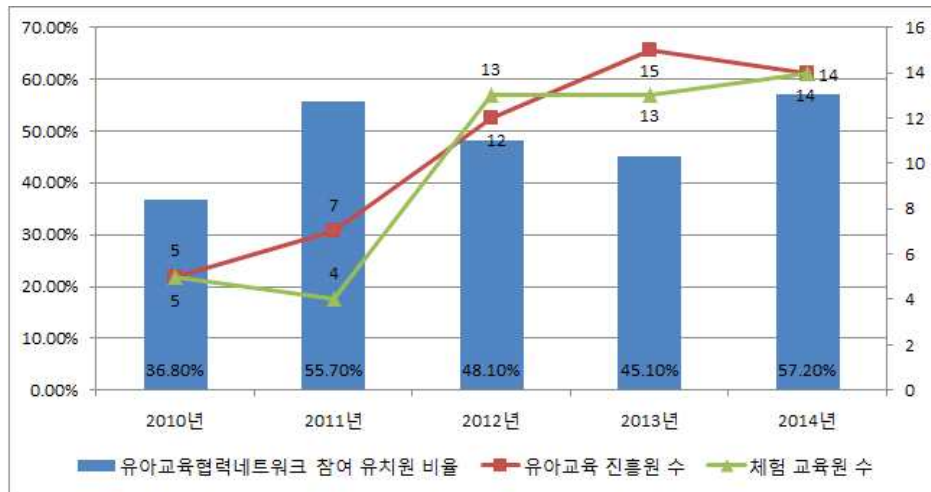
[그림 II-9-4] 교사근무 여건: 2010-2014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은 2010년 98.1%에서 2014년 97.2%로 대부분의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2010년 54.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67.5%로 전체 취원아의 약 70%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5]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률 추이: 2010-2014

유아교육 지원체계인 유아교육진흥원과 체험교육원 수는 각각 8개, 3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4년 유아교육진흥원 14개, 체험교육원 14개로 확대되었다.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참여유치원 비율도 2010년 36.8%에서 2014년 57.2%로 확대되었다.



[그림 11-9-6] 유아교육 지원체계 현황: 2010-2014

유아교육 지표별 2010-2014년 현황을 종합하면 유치원 설치와 이용, 유아교육 재정, 유아학비 지원, 교사근무환경, 방과후 과정,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지원 체계의 7개 분야 모두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특히, 2012년 누리과정 도입, 2013년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아학비가 전 계층에 지원되고, 관련한 유아교육재정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GDP 대비 유아교육 재정이나 교육재정 대비 재정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유아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향후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합리적인 배분의 문제가 관건이긴 하지만 최근 5년 간 유아교육정책의 변화는 유아교육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정책 변화로 기록될 만하다.

Ⅲ. 시·도 교육청 사업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유아교육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수립·집행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 교육청은 개별 예산으로 유아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유아학비 지원과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시책 사업의 경우 국가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시·도 교육청 사업과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사업을 2015년 예산의 예산집행 성격별로 살펴봄으로써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1. 시·도 교육청의 자체사업

17개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 자체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총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약 6억 1천 4백만 원부터 3천 2백 38억여 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시·도의 규모와 특성, 예산 편성의 기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 예산만을 근거로 단순히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다. <표 Ⅲ-1-1>을 중심으로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규모가 큰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지역의 예산이 1000억 이상으로 나타났고, 세종의 예산은 10억미만이였다.

<표 Ⅲ-1-1>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별 사업 예산: 2015

단위: 백만 원

지역	총계(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지역	총계(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서울	323,815	경기	150,311
부산	30,493	강원	73,539
대구	13,408	충북	9,469
인천	23,094	충남	202,318
광주	55,117	전북	22,303
대전	12,042	전남	29,823
울산	11,548	경북	31,152
세종	614	경남	322,444
		제주	5,538

자료: 각 시·도교육청(2015). 지자체 지원 사업 현황, 보고자료(7. 31 기준). 교육부 내부자료.

주: 시·도별 지역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사업 예산현황은 부록에 제시함.

가. 교직원 운용 사업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직원, 기타 교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강사 등의 인건비를 자체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과정 인건비 지원은 전남 약 1백7억원, 경남은 약 99억원, 강원 약 90억원, 전북 약 72억원, 광주 약 71억원, 부산 약 68억원, 경북 약 67억원, 인천 55억 3천만원, 충남 55억 2천 5백만원, 대구 약 52억원, 충북 약 35억원, 울산 약 33억원, 경기 약 2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방과후과정 인건비 지원 외에 서울은 단설유치원 행정실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9천2백만원, 인천은 학급보조자인건비로 41억 1천 4백만원을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표 III-1-2〉 시·도 교육청 사업: 교직원 운용

				단위: 백만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15년예산
서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립 (단설)	단설유치원 행정실 인력 지원	92
	방과후과정강사 인건비지원	공립	방과후 과정강사 인건비 지원	3,905
부산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인건비 보조금	공·사립	전담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	2,851
대구	방과후과정 강사 인건비	공립	방과후과정 강사 인건비 지원	5,155
인천	학급보조자인건비	공립	학급보조자인건비지원	4,114
	방과후과정강사인건비	공립	방과후과정강사인건비지원	5,530
광주	시간제 기간제교사 (유치원방과후과정) 인건비	공립	시간제 기간제교사 (유치원방과후과정) 인건비	5,410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인건비	공립	방과후과정 강사 인건비	1,721
울산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인건비 (위탁강사인건비포함)	공립	방과후 과정 운영 전담인력인건비지원	3,308
경기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공립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보조	2,880
강원	방과후교육인건비지원	공립	방과후과정 운영 시 인력지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무기계약직 방과후 교육사)	8,991
충북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실무원 인건비(147명)	3,538
충남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공립	방과후과정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 (시간제기간제교사)	5,525

(표 III-1-2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15년예산
전북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공립	방과후과정운영전담인력인건비 지원(시간제기간제교사 200명,시간제강사295명)	7,248
전남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 지원	공립	방과후 시간제 근무기간제교사 지원	10,663
경북	방과후시간강사인건비	공립	방과후 시간강사인건비	6,713
경남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인건비	공립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인건비	9,963

주: 1) 2015. 1월부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2개 시·도가 비정규직채용(방과후 전담사 등) 명칭이 '교육공무직원'으로 바뀜.

2) 강원은 단설유치원에 영양교사, 조리사, 교무행정사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소관 부서가 달라 예산이 미포함됨.

자료: 각 시·도교육청(2015). 지자체 지원 사업 현황, 보고자료(7. 31 기준). 교육부 내부자료.

나. 교육활동 지원 사업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원역량 강화, 수업지원 활동 지원 관련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표 III-1-3>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유치원 종합컨설팅단, 누리과정 교원연수 및 자료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단기대체 교사 지원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원비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카드납부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특광역시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 1백86억여 원, 에듀케어자원봉사단 운영 31억여원, 공립유치원 교수학습활동비 지원 13억여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부산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1백35억여 원,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원 24억여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18억여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대구는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84억원,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원에 19억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 인건비보조에 약 1백 21억원, 공립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에 5억2천8백만원, 납입금 동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3억 2천 6백억여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광주는 사립

유치원 지원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32억여 원, 납입금 동결 사립유치원 운영비 16억여원을 지원하였다. 대전은 원비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7억7천5백만원, 공립유치원 15개원에 대한 유치원 통학차량지원 5억5천2백만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울산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46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다음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11억여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세종은 공립단설 유치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안전지킴이 사업에 1억7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다.

한편 도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와 단기 대체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 4백76억여원, 방과후 과정 운영 59억여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강원은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비 지원과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에 각각 약 34억여원, 방과후운영비 지원 10억여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충북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약 43억원,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약 11억원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충남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에 약 78억원, 공립유치원통학차량 지원 29억원, 사립유치원 원비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24억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전북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72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 다음 공립유치원 통학 편의 및 운영비 지원 25억여원,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유치원 지원금 17억여원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전남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47억여원, 공립유치원 방과후운영비 지원 37억여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34억여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경북은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 97억여원, 유치원 교원 명예퇴직 수당 40억여원,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에 38억여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경남은 사립유치원 지원과 방과후과정 운영 예산의 비중이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 제고 사업에 약 174억여원, 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활동비 33억여원, 돌봄 유치원 운영지원 17억여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지원 14억여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의 비중이 높으며,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9억 8천 2백만원,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에 4억 3천 9백만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표 III-1-3〉 시·도 교육청 사업: 교육활동 지원

단위: 백만 원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종합컨설팅지원단 운영	공·사립	컨설팅지원단 운영	42
	교육과정연수운영	공·사립	교원연수	28
	겸직관리자직무연수	공립	겸임 교장, 교감 연수	13
	유치원안전교육직무연수	공·사립	전문직, 교원 대상 안전연수	5
	수석교사 연수	공립	수석교사 역량강화 연수	1
	연구유치원 운영	사립	유치원 연구학교 운영	8
	장학자료개발	공·사립	안전교육 장학자료 개발·보급	16
	유치원 에듀케어	공·사립	공립에듀케어 신증설 및 사립에듀케어 지원	1,151
	엄마품은중일돌봄교실운영	공·사립	엄마품은중일돌봄교실 운영	585
	에듀케어자원봉사단 운영	공·사립	방과후 과정 자원봉사보조인력 지원	3,090
서울	교수학습활동동bez 지원	공립	공립유치원학습자료 구입 및 현장학습지원	1,296
	유치원운영위원회 연수	공·사립	유치원운영위원 및 관계자 연수	6
	지역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사업	공·사립	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운영	300
	지역거점 유치원 버스 운영	공립	공립(단설) 현장학습 버스 지원	293
	유아학비부대경비	사립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분담금 및 사립유치원 카드수수료 지원	276
	교원인건비 지원	사립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보조	18,585
	단기대체 교사 지원	사립	병가, 출산등으로 수업결손이 발생한 유치원 강사비지원	123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지원	사립, 교육 지원청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지침서 보급 및 연수	1
	유아교육위원회	유아 교육 위원회	유아교육위원 수당 및 운영비	2
	유치원교단지원자료보급	공·사립	교단 지원자료 보급	11
부산	유치원사이버연구회	공·사립	사이버 장학자료 개발수당 등	5
	수업연구발표대회	공·사립	우수수업영상제작, 심사수당 등	4
	유치원운영종합계획보급	공·사립	유치원 종합계획책자 보급	2
	숲교육유치원운영	공·사립	숲교육유치원 운영비 지원	50
	생태유아교육거점유치원 운영	공·사립	생태유아교육거점유치원 운영비 지원	25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부산	부산유아체험학습교육원프로그램운영	부산유치원연합회	부산유아체험학습교육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00	
	유아교육홈페이지유지보수	공·사립	유아교육 홈페이지 관리비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공·사립	편성운영지침 개발보급 및 해설서 지도서 보급 등	24	
	유치원 컨설팅 지원단 운영	공·사립	컨설턴트 수당 지급	4	
	유치원 교육과정 워크숍	공·사립	워크숍 운영비 지원	3	
	공립 현장체험학습 차량비 지원	공·사립	공립 현장체험학습 차량비 지원	226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공·사립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1,645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공·사립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452	
	온종일 돌봄유치원 운영	사립	온종일 돌봄유치원 운영 지원	490	
	아침 돌봄유치원 운영	공·사립	아침 돌봄유치원 운영 지원	152	
	저녁 돌봄유치원 운영	사립	저녁 돌봄유치원 운영 지원	189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1,831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공립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지원(일부)	747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원	사립	학급담임수당(월 110천원)	2,361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립	원장,원감,담임(월 400천원), 비담임(월 250천원)	13,538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립	단기대체교사 인건비(일 50천원)	167	
	신용카드납부수수료	사립	유아학비초과분수수료지원	3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립	납임금 동결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월 250천원)	1,363	
	대구	수업기술나눔기 카페운영	공·사립	교수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에서의 장학 지원	비예산
		수업연구교사제 운영	공·사립	수업연구교사의 수업기술 향상지원	2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공·사립	유치원 교사 동화구연대회 운영	2	
유치원교사 수업발표대회		공·사립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발표대회 운영	3	
유치원교육과정협의회운영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협의회 운영	3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공·사립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4	
오감만족열두달 자연놀이즐기기 우수 학급운영		공·사립	특색 있는 자연놀이 즐기기 활동 우수 학급 선정 운영	33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대구	대학생 유치원 자원봉사제	공·사립	대학생 유치원 자원봉사	비예산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립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운영비	18
	컨설팅장학운영	공·사립	컨설팅 지원단 운영비	22
	유치원세대간지혜나눔	공·사립	연수 및 운영비 지원	37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공·사립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830
	사립 담임수당 지원	사립	학급담임수당	1,900
	사립 처우개선비 지원	사립	처우개선비 지원	8,443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립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51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사립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지원	19
	돌봄유치원 지원	공·사립	아침,저녁 돌봄유치원 운영	863
	사립유치원운영비 지원	사립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998
	사립 교원처우개선비	사립	사립 교원처우개선 인건비 보조	12,092
	사립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사립	사립 단기대체인건비 보조	130
	사립유치원 운영비	사립	납입금 동결유치원 운영비 지원	326
	사립 신용카드수수료 지원	사립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 지원	12
	수업중심유치원 운영비	공립	수업중심유치원 운영비 지원	10
	유치원	공·사립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 운영비 지원	25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	공·사립	창의인성체험중심유치원 운영비 지원	6
	창의인성체험중심 유치원운영	공·사립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유치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528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공립	유치원 교사 대상 안전연수	1
유치원 안전교육 연수	공·사립	유치원 안전교육 및 관리계획 검토 및 지원	2	
유치원 안전컨설팅	공·사립			
인천	아동학대 피해유치원 지원	피해 유아	아동학대 피해유아 심리치료지원	1
	인성교육세미나	공·사립	인성교육 관련 세미나 개최	2
	누리과정교과연구회 지원	공립	공립교과연구회 지원	5
	유치원행정협의회 지원	공립 유치원 행정협 의회	행정협의회 지원	1
	유아교육운영계획발간	공·사립	인천유아교육운영계획서 발간	1
	위원회 운영	공·사립	유아교육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1
	유치원 장학협의	유아 교육 전문직	우수교육기관탐방 및 협의	1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인천	유치원컨설팅장학	공·사립	유치원컨설팅장학 수당지급	0.4
	수업연구발표대회	공·사립	수업연구발표대회 심사수당	2
	누리과정컨설팅단 운영	공·사립	누리과정 컨설턴트 연수, 평가회	2
	유치원동화구연대회지원	공·사립	유치원교사대상 동화구연대회	1
유치원 교원 연수 지원		공립	유치원장 자격연수 지원(2명)	12
		공립	유치원감 자격연수 지원(3명)	4
		사립	유치원장 자격연수 지원	47
		사립	유치원감 자격연수 지원	34
		사립	교원 처우개선비지원	3,162
	사립유치원 지원	사립	출산대체 기간제 교원 인건비지원	27
		사립	납입금동결유치원 운영비 지원	1,560
광주	학교운영비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공립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409
	누리과정자료개발	공·사립	누리과정장학자료개발	8
	누리과정 장학활동 지원	공·사립	누리과정담당교원연수	4
		공·사립	누리과정직무연수	12
		공립	연구시범유치원운영	6
	유치원 장학활동 지원	공·사립	유치원운영계획설명회	4
		공·사립	유치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개발	4
	유아교육각종대회운영지원	공·사립	유치원수업연구대회	3
		공·사립	교육과정우수사례발표대회	1
	유아교육과정운영지원	공·사립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3
	돌봄유치원운영지원	공·사립	저소득층 및 맞벌이 학부모 아침 및 야간 돌봄 지원	17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지원	사립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시 보조금)	838
	대전	교사수업연구 보고대회	공·사립	수업연구보고대회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
방과후과정담당자연수		공·사립	방과후과정 담당교사의 질 제고	1
유치원운영위원연수		공·사립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1
컨설팅강사요원연수		공립	컨설팅 강사요원의 질 향상	3
겸임관리자직무연수		병설	누리과정 연수 실시	13
안전연수		공·사립	유치원교원 안전 역량강화	26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립	교원의 전문성 진단과 교육의 질 향상 (99개원 :공립 95개원, 사립 4개원)	0.5
유아교육자료구입		공·사립	유치원 학급경영의 활성화	6
도서구입		공·사립	독서교육활성화	74
사립유치원교원자격연수		사립	원장 자격 인정 대상자 연수비 지원	35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대전	유치원통학차량지원	공립 (15개원)	통학차량임차비 및 운영비 지원	552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사립	원비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	775
울산	유치원교사 직무연수	공·사립	한국교원대 및 자체연수 지원	7
	겸임관리자 직무연수	공립	겸임원장(감) 누리과정 연수	5
	안전교육 직무연수	공·사립	유치원교원 안전교육 역량 강화	8
	사립유치원 행정인력인건비 지원	사립	사립유치원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72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공립	교원의 전문성 진단과 교육 질 향상(공립유치원69개원)	35
	수석교사연구활동비지원	공립	수석교사 2명 12개월 지원	10
	장학자료 개발	본청	누리과정 장학자료 개발	4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공립	통학차량임대비 및 운영비 지원	1,094
	유아자연체험원설립 T/F팀운영	본청	T/F팀4명운영,선진지견학, 협의회, 계획수립 등	11
	컨설팅장학운영	본청	컨설턴트 여비, 수당 지원	10
	아침돌봄유치원 운영비	공립	돌봄운영비 지원	29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사립	사립유치원담임수당(670명)	884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사립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935명)	4,622
	사립유치원 운영비지원	사립	원비 동결유치원 운영비 지원	310
사립유치원 돌봄운영비	사립	사립유치원 돌봄운영유치원 운영비 지원	429	
사립유치원 대체교사인건비	사립	자격연수 등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인건비지원	9	
공립유치원 행정지원인력	공립	공립3학급 이상 유치원 행정인력 자원봉사자 지원(20명)	105	
세종	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공립(병 설·단설)	공·사립유치원 순회수업및 업무지원과 자료대여 사업	17
	안전지킴이	공립 단설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 및 근절	176
경기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지원	공·사립	유치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16
	누리과정지도서보급	공·사립	신설유치원 지도서, 해설서 보급	11
	유치원교육과정 연구지원	공립	학습공동체 지원	20
	경기도유치원역사연구	공·사립	유치원역사연구 자료 탑재	23
	유치원평가	공·사립	유치원 평가	145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모교육	3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공·사립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10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경기	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연수	공·사립	상반기(2015.5월~2015.8월) 225명 하반기(2015.10월~2016.1월)225명	181
	혁신유치원 운영	공·사립	신규 혁신유치원 지정 및 운영비 지원	103
	유아교육연구	공·사립	혁신유치원 관련 연구	10
	유아교육홍보	공·사립	경기유아교육홍보 리플릿외 1	8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공립	행복한올타리 방과후과정 외 2건	5,866
	사학기관운영관리	사립	유치원 회계교육 및 업무담당자 직무연수	8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지원	사립	교사 처우개선비 및 단기대체인건비 지원	47,624
	변화와 혁신 리더십 연수운영	공·사립	변화와 혁신 리더십 연수(18시간)	20
	유치원 교원 정보활용 직무연수 운영	공·사립	정보활용 연수 운영(15시간,2회)	14
	방과후과정운영비 지원	공·사립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1,036
	통학차량 지원	공립	통학편의 및 운영지원	3,351
	탑승도우미 지원	공립	통학차량에 대한 인력 지원	480
	사립 처우개선비	사립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3,433
	사립 교원 연찬회 지원	사립	사립유치원 교원 연찬회 지원	22
강원	단기대체교사 지원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 휴가 휴가 및 연수 시 인력 지원	49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공·사립	유치원종합컨설팅 운영 및 지원	586
	유아체험학습장 운영	공·사립	유아 체험학습을 위한 권역별체험학습장 운영	83
	보결전담강사 운영	공립	공립유치원교사 보결 지원	255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공·사립	공·사립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비 지원	199
	누리과정 교원연수	공·사립	공·사립유치원교원	96
	엄마품온종일 돌봄유치원 지원	공·사립	공·사립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360
	야간돌봄유치원 지원	공·사립	공·사립 야간돌봄 유치원 운영 지원	420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립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663
	교원연수지원	공·사립	교원국외연수	20
충북	교실수업개선지원	공·사립	수업연구발표대회	1
	수석교사제운영	공립	수석교사지원	14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공립	유아교육연구회운영지원	3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충북	유치원교육과정운영	공·사립	유치원현장지원단	3
		공·사립	유치원교육과정운영	10
		공·사립	누리과정수업연구회	3
	유아교육위원회	공·사립	유아교육위원회업무추진	1
	유아교육협력체제운영	공·사립	유아교육협력체제운영	50
	유치원교원연수	공·사립	누리과정위탁연수	26
			교원능력개발평가연수지원	50
			홍보및시스템운영연수	2
			유치원학습연구년제운영	16
			컨설팅장학요원연수	8
			유치원안전교육직무연수	10
			교원능력개발평가기반조성	13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공·사립	방과후과정 교사연수	3
		공·사립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1,050
사립유치원지원	사립	사립유치원역량제고	16	
	사립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4,260	
충남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공·사립	국·공·사립유치원	52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 운영 유치원 운영비 지원	
	유치원교육과정운영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10
	유아교육운영계획수립	공·사립	유아교육운영계획 개발 보급	8
	유치원컨설팅장학	공·사립	컨설팅지원단 운영	5
	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 육위원 회	유아교육위원 수당 및 운영비	7
		정책자 문위원 회	정책자문위원 수당 및 운영비	
	방학중돌봄운영	공립	방학중 돌봄 강사비 지원	658
	엄마품온종일돌봄운영	공·사립	온종일, 아침, 저녁 돌봄유치원 운영 지원	383
	방과후과정운영비	공립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527
3세대하모니운영	공·사립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활동비지원	2,000	
통학차량지원	공립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2,900	
통학차량안전요원	공립	안전요원 인건비	360	
유아교육지원센터운영	공·사립	공·사립유치원 업무지원	178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사립	원비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 (카드 수수료 포함)	2,430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충남	사립유치원교재교구지원	사립	교재교구비 지원	402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사립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단기대체교사 포함)	7,758
	유아학비부대경비	공·사립	e-유치원시스템 운영 분담금	78
	누리과정 홍보캠페인	공립	유치원 누리과정 홍보	40
	누리과정위탁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위탁 연수 지원	61
	연령별전담유치원지원	공립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전담유치원 운영비 지원	60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연수	공·사립	교육지원청별(5권역구성) 연수 지원	6
	놀이와 체험중심교육과정 운영	공·사립	유치원컨설팅 및 자체연수 지원 교원연수 및워크숍지원	23
	유치원컨설팅장학	공·사립	컨설팅지원(30회) 및 컨설팅트 연수(2회)	7
	교원 직무연수	공·사립	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직무연수	21
전북	독서문화조성및독서교육	거점	독서거점유치원 운영(20개월)	40
	엄마품돌봄교실운영 지원	공·사립	운영비 지원(40개월)	1,022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급	사립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165개월)	7,164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지원 지원	공·사립	사립 납입금 동결유치원 지원금	1,676
	신용카드수수료 지원	사립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81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공립	공립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2,54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립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원	34
	유치원 평가	공·사립	유치원 평가	58
	학습연구년제 시범 운영	공립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우수 교원 지원	5
	수업동아리 운영	공·사립	수업동아리 운영 지원(29팀)	36
전남	부모교육홍보자료	공·사립	교육과정 이해 홍보자료 배부	29
	숲꿈유치원	공·사립	숲꿈유치원 운영 지원(6개월)	60
	사립유치원 교원 단기대체강사비 지급	사립	사립유치원 교원 단기대체강사비 지급	51
	유치원 도서관 지원 사업	단설	도서실 신규 조성	110
	유치원 스마트교육시스템 구축	단설	스마트교육시스템 조성	240
	누리과정 성과발표회	단설	성과발표 운영 지원	12
	유아교육정책연구용역비	분청	전남형 공립유치원 설립모형 연구	30
	유아교육자료개발보급	공·사립	교육과정 관련 장학자료 개발 보급	15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본청	교육과정 관련 운영위원회 운영	17
	유치원 교원역량강화 지원	공·사립	교원역량강화 연수 운영	17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본청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3
	종합컨설팅단 운영	본청	사립,공립 신규교사 컨설팅 지원	14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공·사립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	490
	유아교육발전 TF 운영	본청	방과후과정 발전 TF 운영	2
	유치원 학급증설 교재 교구 확충	공립	학급증설 교재교구 확충	80
	빛가람 혁신도시 유아교육 지원	단설	자연생태프로그램 및 방과후 운영 지원	25
전남	누리과정 정착 지원	공·사립	누리과정 연수 지원	25
	도지정 연구학교 운영	공·사립	도지정 연구학교 운영 지원	28
	수업선도교사제 운영	공·사립	수업선도교사 지원	27
	교과교육연구회운영	공·사립	유아교육분야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21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립	납입금 동결 사립유치원 지원	1,722
	유치원 교원 국외연수	공·사립	테마형 국외연수비 지원	10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공립	유치원 원아 통학 편의 제공	3,419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지원	공립	학습준비물 및 체험학습 지원	694
	교원처우개선비 지원	사립	담임수당 및 교직수당	4,735
	공립방과후과정운영비지원	공립	방과후과정 운영비	3,650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사립	방과후과정 운영비	345
	유치원교원명예퇴직수당	공립	유치원교원명예퇴직수당	4,030
	교원능력개발평가	공·사립	교원능력개발평가	10
	교원인사관리	공립	교원인사관리	28
	교육상시상(우수유치원)	공·사립	교육상시상(우수유치원)	17
	유치원체험시설운영	공·사립 9개청	유치원체험시설운영	966
	유치원교수용S/W개발	공·사립	유치원교수용S/W개발	31
경북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연수	공·사립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연수	48
	유아교육위원회운영	공·사립	유아교육위원회운영	2
	교육과정위원회	교육 과정 위원회 위원	유치원교육과정위원회	4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공·사립	경북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1
	초임교사멘토링제	초임 교사	초임교사멘토링제	30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경북	수업개선실천사례 발표대회	공립	수업개선실천사례 발표대회	1
	교재교구지원	공립	유치원교재교구지원	100
	학급신증설교재교구	공립	학급신증설교재교구	
	유치원시스템 시도분담금	공·사립	유치원시스템시도분담금	112
	누리과정연수	공·사립	누리과정연수	60
	사립 단기대체교사 지원	사립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지원	221
	신용카드수수료 지원	사립	사립유치원신용카드수수료지원	13
	사립유치원운영비 지원	사립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3,764
	사립교원 처우개선	사립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	9,662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	사립	사립유치원담임수당	1,783
	사립유치원 엄마품돌봄	사립	사립유치원돌봄	318
	공립유치원 엄마품돌봄	공립	공립유치원돌봄	153
	사립종일반 보조교사인건비	사립	사립종일반 보조교사인건비	610
	휴가중 계절유치원운영	공립	휴가중 계절유치원 운영	1,637
	교육과정네트워크운영비	공립	유치원교육과정네트워크운영비	442
	교육부맞춤형중앙연수	공·사립	누리과정연수	264
경남	교원연수지원	공·사립	안전교육직무연수 안전교육자체연수	42
	교육과정운영	공·사립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개발보급 및 연수	7
			경남유아교육계획서 발간 보급	4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공·사립	교육부자료 개발 인쇄	22
			수업연구교사제 및 명사제운영	2
	유아교육지원	공·사립	지역단위소규모체험학습장운영비	28
			지역거점운영비지원	176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공·사립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1
			돌봄유치원운영지원	1,723
	사립유치원지원	공립	방학중방과후과정지원	1,430
			기타교육활동전문가선정	1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공·사립	방과후과정자원봉사자활동비	3,254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인건비	67
	바른인성 생활본 제작 배부	공·사립	사립유치원교원역량제고사업	17,440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5
	제주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	공립	유치원교원평가담당자연수
공립			시스템사용료지원	10
		사립	인성 생활본 제작 배부	982
		사립	담임수당, 교직수당, 기타수당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제주	단기대체교사지원	사립	대체교사 지원	21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립	급당 20~30만원 차등지원	439
	교원전문성 강화 연수	공·사립	공·사립유치원교원 연수	

자료: 각 시·도교육청(2015). 지자체 지원 사업 현황, 보고자료(7. 31 기준). 교육부 내부자료.

다.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표 III-1-4>는 17개 시·도의 사업 중 학비와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 사업 현황이다. 서울(2천9백75억여원), 광주(4백8억여원), 경기(9백31억원), 강원(4백70억여원), 충남(1천7백46억여원), 경남(2천8백72억여원)에서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에 서울은 3억9천9백만원, 충남은 2억 1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강원은 사립유치원에 급식비지원(46억7천2백만원), 전남은 공립 단급학급유치원에 무상급식비(1억3천3백만원)를, 제주는 공·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비(35억여원)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I-1-4> 시·도 교육청 사업: 유아교육비 지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단위: 백만 원 '15년 예산
서울	만3~5세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지원	공·사립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399
	만3~5세아 유아학비지원	공·사립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121,679
광주	만3~5세아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175,782
	누리과정지원	공·사립	만3~5세아 교육과정비 지원	31,955
	누리과정지원	공·사립	만3~5세아 방과후과정비 지원	8,886
경기	누리과정지원	공·사립, 어린이집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93,100
강원	유아학비지원	공·사립	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 학비 지원	47,043
	사립 유치원 급식비	사립	사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	4,672
충남	만3~5세 유아학비 지원	공·사립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66,539
	만3~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108,027
전남	만3~5세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립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216
전남	무상급식비 지원	공립	무상급식비 지원(단급학급 유치원)	133
경남	누리과정 지원	공·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287,174

(표 III-1-4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제주	친환경 무상급식비지원	공·사립	친환경급식비를 포함한 무상급식비지원	3,542

주: 강원도의 급식비지원 예산은 국·공·사립유치원의 설립형태, 지역, 유아 수 등으로 지원 단가가 모두 다르게 지원되고 있고 2015년에 6,171백만원을 편성·지원하였으나 업무 부서가 달라 유아교육예산에 미편성 됨.

자료: 각 시·도교육청(2015). 지자체 지원 사업 현황, 보고자료(7. 31 기준). 교육부 내부자료.

라.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표 III-1-5>와 같다.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에 배정이 되어 있으며, 광주,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 시설환경개선비에 예산을 편성했다. 전북이 실외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환경개선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다. 다음으로 강원이 신증설학급 환경개원 지원과 노후 유원장 개선에 9억8천만원, 전남이 실외놀이기구 확충에 6억8천만원, 충남이 유치원 CCTV지원과 노후시설환경 개선에 6억6천4백만원, 경남이 유치원 노후환경 개선과 방과후과정 시설환경 개선에 5억4천만원, 세종이 방과후과정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 4억 2천1백만원, 인천이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에 1억9천9백만원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표 III-1-5> 시·도 교육청 사업: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

단위: 백만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부산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공·사립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150
	시설환경개선비	공립	공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50
대구	노후시설개선 지원	공립	공립유치원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24
인천	방과후과정 환경개선비 지원	공·사립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지원	199
광주	유치원환경개선지원	공립	유치원도서관 구축지원	120
세종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사업	공립병설 및 단설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 및 바깥놀이 시설 개선 사업	421

(표 III-1-5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15년 예산
강원	유치원교육환경개선	공립	신증설학급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 지원	910
	유원장 개선	공·사립	노후 유원장 개보수 지원	70
충북	실외종합시설지원	공·사립	실외종합시설비 지원	40
	CCTV설치지원	공립	유치원CCTV설치지원	42
충남	유치원CCTV지원	공·사립	유치원CCTV교체비 지원	214
	노후시설환경개선	공립	유치원 노후환경개선비	450
전북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공립	어린이놀이시설 설치(111개원)	2,029
전남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공립	실외놀이기구 확충	680
	유치원교육여건개선	공립	유치원노후환경개선비	290
경남	방과후과정 환경개선비지원	공·사립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지원	250

자료: 각 시·도교육청(2015). 지자체 지원 사업 현황, 보고자료(7. 31 기준). 교육부 내부자료.

2.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본 절에서는 지방정부 행정체계에 속하는 시·도청이 유아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17개 시·도별로 살펴보았다. <표 III-2-1>는 해당 시의 시군구청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2010년과 2015년도 사업 예산을 정리한 것이다. 2015년 17개 시도의 유아교육 지원 예산 현황에 의하면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은 편성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1〉 17개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예산: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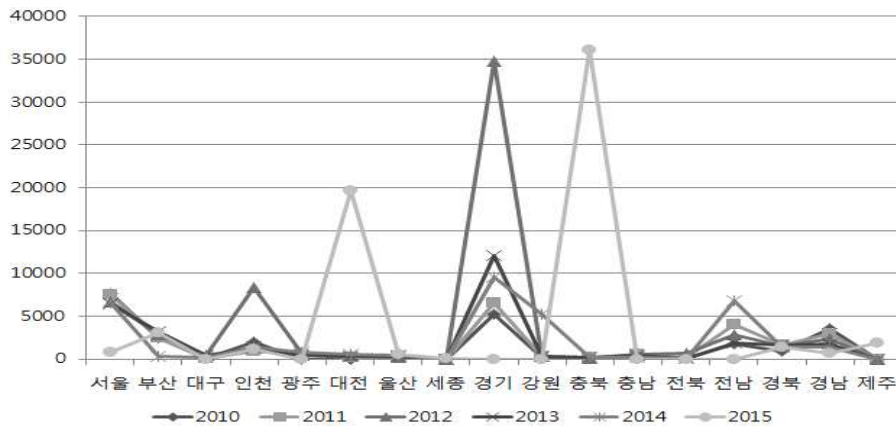
지역	단위: 백만 원, %					
	2010 ¹⁾	2011 ²⁾	2012 ³⁾	2013 ⁴⁾	2014 ⁵⁾	2015
서울	7,705	7,471	6,699	6,441	6,554	780
부산	2,430	2,476	2,784	3,261	287	3,071
대구	100	132	400	400	200	0
인천	1,958	879	8,319	1,227	1,419	1,205
광주	2	523	663	460	818	0
대전	0	232	489	305	538	19,607
울산	161	271	229	264	413	562
세종	-	-	-	-	-	29
경기	5296	6,610	34,782	12,093	9,530	0

(표 III-2-1 계속)

지역	2010 ¹⁾	2011 ²⁾	2012 ³⁾	2013 ⁴⁾	2014 ⁵⁾	2015
강원	153	288	287	320	5,290	0 ⁶⁾
충북	216	183	122	218	175	36,079
충남	137	577	614	492	214	7
전북	55	157	668	88	120	0
전남	1,777	4,048	2,827	1,906	6,816	0
경북	905	1,640	1,487	1,614	1,400	1,386
경남	3,556	2,931	2,359	1,801	1,395	692
제주	-	-	-	-	-	1,825
전체	24,451	28,418	62,729	51,024	35,171	65,249

- 주: 1) 김은설(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p. 56-59 데이터.
 2)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p. 77-84 데이터.
 3)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98 데이터.
 4)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p. 92-93 데이터.
 5)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p. 85-86 데이터.
 6) 강원도청이 강원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자료: 각 시·도교육청(2015). 지자체 지원 사업 현황, 보고자료(7. 31 기준). 교육부 내부자료.



[그림 III-2-1] 17개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예산 추이: 2010-2015

3. 소결

17개 시·도별로 각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교직원 운용 사업, 교육활동 지원사업, 유아교육비 지원사업,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양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직원 운용 사업에는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 운영비, 돌봄 유치원 운영 등의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는 학비 외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일부 시도에서는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운영 및 교육개선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 실외놀이기구 확충에 지원이 되고 있다. 2010-2015년 6년간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 예산은 시기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향후 유보통합 시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각 시·도교육청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IV. 유아교육정책 심층분석: 유치원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개념을 고찰하고, 아동학대 관련 국내의 제도를 살펴 보았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 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현황과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아동학대 개념 및 제도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각각의 주체들이 놓여있는 입장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 이는 아동학대가 갖고 있는 복잡한 관계와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아동학대의 의미와 유형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겠다. 또한 이를 근거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근거를 제시하겠다. 또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가. 아동권의 존중과 아동학대의 의미

1) 아동권의 존중 배경

아동학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맥락 속에 있는 모든 주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인간 생애에서 아동기를 하나의 주체적인 발달과정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아동기가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 및 교육,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아동'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나아가 사회적인 요구로 인해 아동기의 특수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적 힘의 우위에 있는 성인과 그 외의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강압과 회유, 협박 등으로 자신들의 의

사결정권과 행동권을 박탈당하거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윤호열, 2015; 정웅성, 2014).

이와 같은 아동 권리와 존중에 대한 인식에 관한 관심은 192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다. 특히 1922년에 애글란 타인 잭(Eglantyne Jabb)여사는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발표하였고, 1924년에는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을 채택하였다(정웅성, 2014). 또한 그 이후에도 1959년에 UN에서 ‘UN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채택하였고, 그 이후로 20년이 지난 1979년에는 유엔이 ‘세계 아동의 해’를 선포하면서 아동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강동욱·문영희, 2011). 그 이후로 10년이 지난 1989년 UN이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공포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으며, 우리나라도 1990년 9월 25일에 “UN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2월 20일부터 해당 협약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양영임·우남희, 2005).

이후에도 UN, UNICEF, UNESCO 등과 같은 세계기구에서는 전 세계 아동 특히 저개발국, 분쟁지역 등의 아동권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아동권을 확보 및 신장하기 위해 법체계와 행·재정적 제도 마련과 지속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의미

아동권의 존중과 반대 축에 있는 개념이 아동학대(Child Abuse)이다. 아동권에 대한 핍박과 강탈, 방임, 부정적인 성장 등은 아동권과는 반대되는 아동학대의 주요 핵심어라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를 정의하는 데 이와 같은 주요 핵심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학대는 이들 주요 핵심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우선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학대를 “자기 자신, 타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힘 또는 권력의 의도적인 사용과 위협이며, 결과적으로 상해, 죽음, 심리적인 해, 발육불량, 또는 결핍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의하였다(김상원·이양희, 2014). 이와 같은 개념은 유엔 아동폭력 실태조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김잔디(2014)는 일본의 아동학대 정의를 1983년 아동학대조사연구회가 정의한 것으로 소개하였는데, “아동학대라 함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에

의한 비우발적(단순한 사고가 아닌 고의를 포함한)인 아동에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 보호의 태만 또는 거부, 성학대, 심리적 학대 등을 말한다”고 하였다.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는 아동학대방지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1995)에서 제안한 정의를 인용하여 “아동에게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과 이유 없이 비우발적(고의성이 포함된)인 해를 입히거나 지속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NAEYC, 1996, 2009). NAEYC는 아동학대를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어린이들이 성인과 사회에 갖고 있는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해자가 누구이든지, 장소가 어디이든지, 어떠한 형태의 부정적인 해가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안 됨을 역설하였다.

또한 1974년에 제정된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제 111조의 “아동학대는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혹은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강동욱·문영희, 2011). 강동욱(2014)은 이 의미는 곧 아동에게 유해하면, 즉 아동의 심신에 주관적 내지 객관적인 상해가 인지되면 모두 학대에 포함되어, 단순한 신체적 상해와 물리적 방임에서 나아가 광의의 개념으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학대방지국가위원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는 학대와 방임은 아동에게 가장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였다. 불특정한 성인 혹은 성인 집단, 또래 집단 혹은 또래에게서 가정, 교육기관 혹은 지역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아동에게 해를 입히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NSPCC,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들이 고의적·우발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물리적 폭력, 정서·심리적 폭력, 방임 등의 행위로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신체·정서·성학대 등의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는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아동학대는 물리적인 폭

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압박, 방임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여러 유형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영국의 UK Government guidance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2006)은 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무시(방임)와 괴롭히기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신체적 학대, 보호의 태만 또는 거부, 성학대, 심리적 학대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김잔디, 2014). 호주에서도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에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물리적 방임 등이 아동학대 유형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유형화하고 있다(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2015).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을 여기서는 NSPCC(2009)의 Child protection fact sheet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겠다.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이다. 신체적 학대는 때리기, 잡아 흔들기, 던지기, 독극물 혹은 약물 먹이기, 물에 빠뜨리기 등 신체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이들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인 해를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NSPCC, 2009). 또한, NSPCC는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동을 고의적 혹은 우발적이든 균이나 병에 감염될 수 있는 신체적인 학대를 일으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이다. 정서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장애를 주는 형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무가치한', '사랑할 가치가 없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도 포함이 되며, 아동에게 발달이나 연령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대나 요구를 하는 것도 해당된다. 이 외에도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정을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도록 만드는 모든 형태는 정서적 학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다른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성적 학대(Sexual abuse)이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성적인 활동이나 유사 성행위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아동 자신이 성적 혹은 유사 성적인 행위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다.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을 취하는 행위 즉, 입맞춤하기, 아이의 성기나 가슴 등 신체적 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아이에게 포르노

를 보게 하거나 포르노와 같은 영상에 출연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성행위를 지켜보게 하거나 성행위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형태도 포함된다.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함께 유기와 방임도 아동학대의 중요한 유형이다. 유기와 방임(Neglect)은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기와 방임은 신생아 시기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 외의 교육기관에서도 불건전하고 청결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교육기관 종사자 특히 교사들이 아동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부적절한 돌봄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이 유형의 아동학대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괴롭히기(Bullying)이다. 괴롭히기는 의도적으로 상처가 되는 행동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로 아동이 이러한 괴롭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처리하기가 힘들 때, 아동학대로 분류된다. 괴롭히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나 일반적으로 가벼운 형태이나 지속적으로 때리기, 발로차기, 흠치기 등과 같은 신체적 괴롭히기, 사회적 활동이나 또래 집단에서 배척해서 따돌리는 것과 같은 정서적 괴롭히기, 위협하기, 별명 부르기, 인종차별 혹은 혐오적인 언어표현 등의 언어적 괴롭히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상의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정의 혹은 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 및 제도

1) 아동학대의 법적 성격 고찰

우리나라는 아동 권리와 존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유의 가족 중심의 양육 문화와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개입, 아동은 성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편견은 아동학대로 인한 문제들을 소극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아동학대 사건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강동욱, 2014).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적 내용은 아동복지법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변경되고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박지민·이종원, 2014). 이처럼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아동 권리의 존중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 다루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정웅성, 2014). 그러나 2000년 아동복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2013년 12월 31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강동욱, 2014; 김잔디, 2014; 이무선, 2015).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은 아동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적 개념은 사회통념이나 이론적 정의에 근거하고 있으나, 법적개념 특성상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 3조(정의)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3조 7항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제시된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을 대상으로 ‘주체’, ‘범주’, ‘방법’,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먼저 아동학대를 범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범하는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다. 이는 아동학대를 범하는 주체가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부모 등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대 행위를 말한다.

다음은 ‘범주’와 ‘방법’이다.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혹은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범주 즉 ‘유형’과 ‘어떻게’ 라는 방법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범주로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폭력 혹은 가혹행위는 방법론적인 것을 의미한다. 보호자에 의한 유기 또는 방임 역시 범주와 방법적 측면으로 아동에게 아동학대 이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 17조 6호에 의하면 ‘방임’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들 범주와 방법론적인 내용의 정의는 명확하나,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

권, 교육기관의 교사 교육권 등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아동학대를 규정하거나 이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이승희, 2014).

마지막으로 '결과'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즉,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사회·정서·물리적 복지 등이 저해되어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서 아동학대의 경험은 현재 아동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결과 뿐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엄중한 행위이다(윤호열, 2015).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은 대상과 범위, 그 결과가 매우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폭넓은 법해석을 위한 여지가 있는 반면에 구체적인 아동학대 상황을 정의하고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인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발생 시 구체적인 처벌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집행에서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2) 아동학대의 법 제도 및 예방대책 및 사후관리

가) 아동학대 관련 법 제도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서로 다른 관련법과 연계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는 형법 등에 근거한 폭행, 폭행치사, 영아유기, 유기등 치사상, 체포감금, 미성년자 약취 및 인신매매, 미성년자 간음 등 형법 제 2편에 근거하여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벌 규정에 관련한 특례법은 가정, 교육 및 보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강동욱, 2014).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정들을 정리하여 아동학대 유형과 그 적용 법규에 따라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IV-1-1>과 같다(이무선, 2015).

〈표 IV-1-1〉 아동학대 유형과 그 적용 법규

구분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규정없음 (형법 적용)	규정없음 (형법, 아동복지법 적용)
	(존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상해 (폭행치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 3년이상 징역
중상해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존속) 2년이상 징역		
상해(폭행) 치사	3년이상 징역	규정없음 (형법 적용)	제4조(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존속)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기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제17조 제6호 (유기 및 방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존속)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벌금		
영아유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학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 제4호(성학대),	규정없음 (형법, 아동복지법 적용)
	(존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아동혹사	5년 이하 징역	제5호(정서적 학대)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유기(학대) 치사	7년 이하 징역	규정없음 (형법 적용)	
	(존속) 3년 이상 징역		
유기(학대) 중상해	규정없음(≡중상해, 상동)	규정 없음 (형법 적용)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 3년이상 징역
유기(학대) 치사	3년 이상 징역		제4조(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존속)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표 IV-1-1 계속)

구분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체포(감금)	(존속)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	규정 없음 (형법 적용)	규정 없음 (형법 적용)	
	(존속)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체포 (중감금)	7년 이하 징역			
	(존속) 2년 이상 징역			
특수체포 (특수감금)	1/2가중			
체포(감금) 치상	1년이상 징역			
체포(감금) 상해	2년이상 징역			
체포(감금) 중상해	규정없음 (☞중상해, 상동)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 3년 이상 징역
체포(감금) 치사	3년이상 징역			제4조(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존속)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자료: 이무선(2015). 소위 아동학대특별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경희법학, 50(1), p.62-63.<별표> 아동학대유형과 그 적용법규.

아동학대 처벌이나 행정조치 등을 위해 법률을 검토하고 적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건의 주체인 ‘아동’이다. 학대피해자인 아동의 주체성이 인정되고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아동학대 징후 및 예방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아동학대 발생 이후 사후관리를 세심하고 배려있게 진행하여 아동학대 피해자, 가해자뿐 아니라 모든 관련 주체들이 일상으로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은 교육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간에 종사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징후를 발견하게 되는 즉시 신고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영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장, 교사, 직원 등에게 부

여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행태이므로 이로 인한 아동의 부적응행위나 이상행동을 포착하거나 징후가 의심되면 즉각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교육부·충남교육청, 2015). 일본에서도 아동학대방지법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와 유사하게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김잔디, 2014).

가정의 부모 혹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홍보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한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행의 의무를 유치원장이 갖고 있어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매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아동복지법, 2015). 특히 교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전력과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아동복지법, 2015).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 신고를 크게 3단계로 제시하면 [그림 IV-1-1]과 같다.



자료: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제작 홍보자료(2014).

[그림 IV-1-1] 아동학대 발생 처리 요령(3단계)

이 같은 신고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았다(교육부·충남교육청, 2015; NSPCC, 2009).

〈표 IV-1-2〉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구분	신체적 징후	학대로 인해 변화된 행동 징후
신체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로 보기에 뭔가 미심쩍은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퇴행성 행동 - 가출 - 접촉이 있거나 다가갈 때 두려움으로 움찔함 - 우울감 -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데 주저주저함
정서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 특정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 갑작스런 폭력성향과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머리를 쥐어뜯거나 벽에 부딪힘 - 놀이가 불가능한 상태 - 실수에 대한 두려움 - 자신의 행동에 보이는 부모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성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기 주변의 통증이나 가려움증 - 성기 주변의 상처나 혈흔, 정액 - 성매개 질환 - 질내 혹은 방광 감염 - 복부 통증 - 걸거나 앉는 데 불안정함 - 찢기거나 손상된 치녀막 - 입천장의 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이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 특정한 사람 혹은 집단과 함께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 악몽/가출/야뇨증/약물중독/자해 - 연령이나 발달 수준에 안 맞는 성적 지식 - 성적인 그림묘사나 언어 사용 - 거식증 혹은 음식거부 - 자기만의 비밀이 있다고 말할 때 - 갑작스럽게 알 수 없는 출처의 돈 -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 친구교제 - 성인에게 성적인 표현으로 행동
유기 및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 성장장애 - 기아, 지속적인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 피로, 불안정감 호소

(표 IV-1-2 계속)

구분	신체적 징후	학대로 인해 변화된 행동 징후
유기 및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저체중 - 건강상태 불량 -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을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 조는 태도 - 유치원에 일찍 오고 늦게 가기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 친구가 거의 없음 - 혼자 남아 있다거나 아무도 - 돌봐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아이가 언급함
괴롭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찢리거나 타박상을 입고 귀가 - 옷이 찢어져 오기 - 갑자기 신체적으로 위축되거나 정서적으로 조용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상 - 낮은 자아존중감 - 부끄러움/ 수치심 - 낮은 학업성취 및 발달정도 - 고립 - 자살 위협이나 시도 - 어린동생들에게 공격적 행동 - 수면문제/ 걱정/ 퇴행성 행동 - 훔친 물건 대체 요구하기

자료: 교육부·충남교육청(2015). 건강·안전길라잡이. p. 92~97과 NSPCC(2009). Child protection fact sheet.p.3-7을 재구성함.

이상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가 발생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호자와 성인의 의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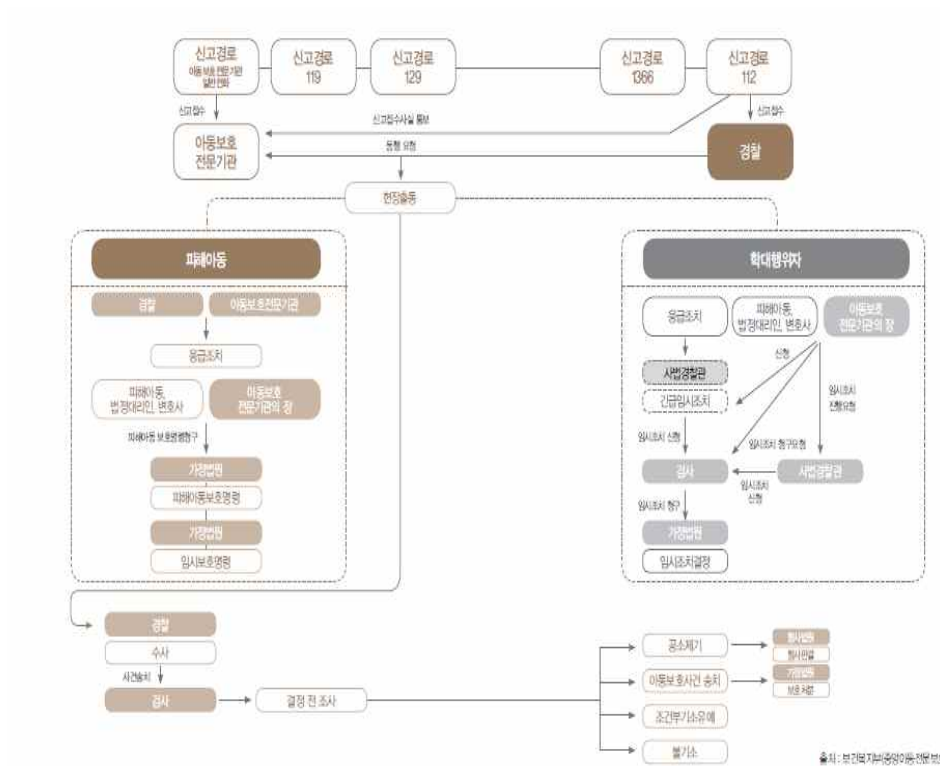
다) 아동학대 사후관리

아동학대 발생 이후, 신고처리와 이를 위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역의 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아동학대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사후관리 대상이다. 피해자에게는 아동학대에서 받은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심리치료,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도 처벌과 함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가해자 역시 정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는 양육효능감이 매우 떨어지고 자신감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결과(윤호열, 2015)가 있다. 따라서 학대 가해 부모에

계는 처벌과 함께 양육효능감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예방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역시 매우 섬세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사후처리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 [그림 IV-1-2]와 같다.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그림 IV-1-2]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처리 절차

피해아동에게는 아동학대 전문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학대 행위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과 함께 필요에 따라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이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외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피해자인 어린 유아의 회복 뿐 아니라 기관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동학대를 단순한 행정적인 처리의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전문가와 협조 체제를 갖추고 아동의 인권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학대가 벌어진 물리적·정서적 맥락을 파악하여 지원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아동학대 관련 외국의 제도

아동기의 존엄과 이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전 세계적인 화두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서는 총 54개 조항으로 아동권리의 주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기본 원칙으로는 무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생명·생존·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제안하였다(도남희, 2015).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권 존중과 아동학대를 예방 혹은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네덜란드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도 등을 살펴보겠다.

1) 미국

미국에서는 1974년에 아동학대 방지 및 치유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이 제정되었으며 2010년에 개정되었다(박지민·이종원, 2014). 이 법은 연방차원에서 아동학대를 다룬 법령이며 모든 주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갖추고 있다. 이 법 이후의 후속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비처벌원칙과 치료적 접근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교육, 가족보존 프로그램 등 사례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무선, 2015).

어린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와 직원의 특성, 열악한 물리적 환경, 질 낮은 프로그램 등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학대 및 방임에 까지 이르게 한다. NAEYC(전미유아교육협회)는 1996년에 유치원 교사들을 비롯한 유아교육전문가들이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position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문에서 NAEYC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AEYC, 1996, 2009).

- 유치원과 같이 유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자격 있는 교직원을 채용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유치원의 실내와 실외 환경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 구조 즉, 사적이고 숨겨진 공간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모든 유치원의 직원, 교사, 자원봉사자, 대체인력은 (a)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b) 유치원 프로그램 안내와 적절한 정책설명, (c) 유치원의 집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아동학대 예방 방법, (d) 잠재적 학대 징후 확인하는 방법, (e)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 유아교육기관, 학교, 가정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교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자격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장학 및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 유치원 프로그램들은 아동학대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NAEYC는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유치원은 모든 종류의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확인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모든 종류의 교직원들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이전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전력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범죄와 폭력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 모든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이전의 근무지 고용자, 어린이의 부모들, 선생님들로부터 적어도 3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유치원은 이를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 새로운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수습기간을 가져야 한다. 수습 기간동안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어린 유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평가 받아야 한다.
- 유치원은 역량 있는 교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급여, 근무시간 등 좋은 처우를 위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아동학대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절차는 부모와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NAEYC에서는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을 위한 권고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건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부모와 다른 교사들과의 공간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유치원에 CCTV 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동아일보, 2015, 5, 1).

2) 네덜란드¹⁾

네덜란드는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이나 법적 처벌 규정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국가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은 성학대 혹은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인 학대가 이루어질 때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의성을 갖고 아동에게 피해를 가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아동을 방임 혹은 유기 한 부모를 대상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에서 매해 약 5~8만정도의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실시된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연령별 발생 비율에서 5세 이하의 영유아 대상이 약 40.7%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최근에 아동학대 신고와 보고 의무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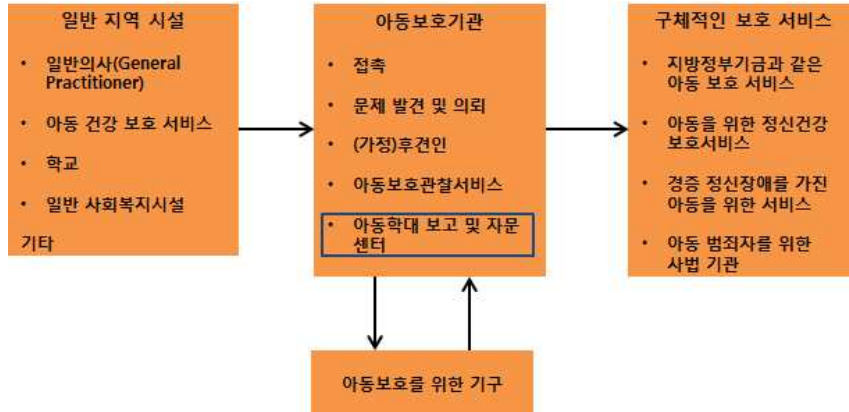
1) Netherland Youth Institute(2007).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s. 발췌하여 정리함 (2015. 6. 30).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 규정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이 아동학대라고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는 사안을 발견하였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과 지침들을 명문화되어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의 징후를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 및 방임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The Advice and Reporting Centre for Child Abuse(ARCAN)를 설립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원한다. 네덜란드의 각 지역에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관할하는 지역센터들이 Youth Care Agency의 한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전역에 약 14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신고와 지원 등의 관리 과정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신고는 전화로든 면대면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하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거점센터에서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었어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이나 절차에 착수하는 데는 신중을 기한다. 다음으로 아동학대를 해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행동이나 절차를 진행한다.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아동 주변 환경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이나 행동이 필요한 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상황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Youth Care Agency에서 파견하는 사회복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정책의 주된 목표는 아동학대 발생 비율을 매해 줄여나가는 데 있다. 따라서 2000년 초반까지 아동학대가 가정의 문제였다면 그 이후로 사회적·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Youth and Family Centres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체계 과정에서 가족지원, 아동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자료: Netherland Youth Institute(2007).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 p22.

[그림 IV-1-3] 네덜란드 아동학대 및 방임 행정 관리 체계

2.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

아동학대의 일반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 80%의 학대는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기준으로 보면 0.01%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영유아기의 아동학대는 생애초기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수치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최근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이용률이 전체 영유아의 90%에 이르고, 기관에 머무는 시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현황과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본 절에서는 심층분석 주제인 아동학대의 현황과 인식을 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에 한정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제시되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유치원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의 인권, 복지를 포괄하는 유아교육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후 조치 등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1) 전반적인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외형적으로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을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신체 학대 유형으로 제시한 11가지에 대해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아동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와 교직원의 가장 인식의 차가 많이 나는 유형은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으로 비율에서 36%이상 차이를 보여, 학부모가 교사에 비해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개 항목에서는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찌르는 행동,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이 99%이상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게 인식되는 신체학대 유형은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부모는 신체학대는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찌르는 행동, 팔이나 다리를 묶는 행동 등을 98%이상으로 높게 신체학대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사는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때리는 행동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98%이상으로 신체학대 유형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아동학대의 이해 - 신체학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①+	④+	계(수)	$\chi^2(df)$
	전혀 학대가 아니다	학대가 아닌 것 같다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학대인 것 같다	확실한 학대다	②	⑤		
a.	1.2	13.9	15.1	27.3	42.5	15.1	69.8	100.0(1,000)	
학부모	1.2	22.0	23.4	33.2	20.2	23.2	53.4	100.0(500)	222.584(4)***
교직원	1.2	5.8	6.8	21.4	64.8	7.0	86.2	100.0(500)	
b.	0.1	0.7	1.8	15.0	82.4	0.8	97.4	100.0(1,000)	
학부모	0.0	1.2	3.2	21.2	74.4	1.2	95.6	100.0(500)	48.854(4)***
교직원	0.2	0.2	0.4	8.8	90.4	0.4	99.2	100.0(500)	
c.	0.1	0.9	3.1	18.9	77.0	1.0	95.9	100.0(1,000)	
학부모	0.2	1.8	5.0	28.6	64.4	2.0	93.0	100.0(500)	92.046(4)***
교직원	0.0	0.0	1.2	9.2	89.6	0.0	98.8	100.0(500)	

(표 IV-2-1 계속)

구분	① 전혀 학대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④ 학대인 것 같다	⑤ 확실한 학대다	①+ ②	④+ ⑤	계(수)	$\chi^2(df)$
d.	-	0.5	26	11.3	85.6	0.5	96.9	100.0(1,000)	
학부모	-	1.0	4.2	16.4	78.4	1.0	94.8	100.0(500)	43.920(3)***
교직원	-	0.0	1.0	6.2	92.8	0.0	99.0	100.0(500)	
e.	0.1	0.4	3.9	14.5	81.1	0.5	95.6	100.0(1,000)	
학부모	0.2	0.8	7.2	22.2	69.6	1.0	91.8	100.0(500)	90.120(4)***
교직원	0.0	0.0	0.6	6.8	92.6	0.0	99.4	100.0(500)	
f.	-	0.5	3.4	15.6	80.5	0.5	96.1	100.0(1,000)	
학부모	-	1.0	5.0	21.6	72.4	1.0	94.0	100.0(500)	43.757(3)***
교직원	-	0.0	1.8	9.6	88.6	0.0	98.2	100.0(500)	
g.	-	-	1.9	12.3	85.8	-	98.1	100.0(1,000)	
학부모	-	-	2.6	17.2	80.2	-	97.4	100.0(500)	25.754(2)***
교직원	-	-	1.2	7.4	91.4	-	98.8	100.0(500)	
h.	-	0.4	0.7	6.5	92.4	0.4	98.9	100.0(1,000)	
학부모	-	0.8	1.0	8.2	90.0	0.8	98.2	100.0(500)	10.355(3)*
교직원	-	0.0	0.4	4.8	94.8	0.0	99.6	100.0(500)	
i.	-	0.5	1.8	9.5	88.2	0.5	97.7	100.0(1,000)	
학부모	-	0.8	2.2	11.4	85.6	0.8	97.0	100.0(500)	7.255(3)
교직원	-	0.2	1.4	7.6	90.8	0.2	98.4	100.0(500)	
j.	-	-	0.7	3.7	95.6	-	99.3	100.0(1,000)	
학부모	-	-	1.2	4.6	94.2	-	98.8	100.0(500)	5.966(2)
교직원	-	-	0.2	2.8	97.0	-	99.8	100.0(500)	
k.	-	0.2	0.7	4.4	94.7	0.2	99.1	100.0(1,000)	
학부모	-	0.4	1.2	5.8	92.6	0.4	98.4	100.0(500)	10.492(3)*
교직원	-	0.0	0.2	3.0	96.8	0.0	99.8	100.0(500)	
전체	0.1	1.6	3.2	12.6	82.3	1.8	95.0	100.0(1,100)	
학부모	0.1	2.7	5.1	17.3	74.7	2.9	92.0	100.0(5,500)	
교직원	0.1	0.6	1.4	8.0	90.0	0.7	97.9	100.0(5,500)	-

* $p < .05$, *** $p < .001$

주: 1) a.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동 b.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동 c. 꼬집거나 핥키는 행동 d. 발로 차거나 깨무는 행동 e. 빗자루,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동 f. 밀쳐서 신체의 일부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행동 g. 몸에 물건을 던져서 맞히는 행동 h. 팔이나 다리를 묶는 행동 i. 밀폐된 공간 속에 가두는 행동 j.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k.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찌르는 행동

2) 음영은 신체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99%이상 나타나는 유형임.

다음은 아동학대 유형중 정서학대이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현적으로 관찰이 어려우며, 종종 정서학대로 나타난 결과나 징후들이 영유아의 성격이나 기질적 특성으로 오인되는 경향도 있다. 정서학대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표 IV-2-2> 와 같다. 신체학대와 유사하게 학부모에 비해 교직원이 정서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6개 항목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정서학대로 인식하는 유형은 ‘나가죽어라, 갖다버리겠다’와 같은 말을 하는 행동이었다.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의 차가 가장 큰 항목은 ‘이 웬수야와 같은 욕설을 하는 행동’ 이다. 또한 ‘나가라고 쫓아내는 행동’ 은 유일하게 90% 미만으로 정서학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앞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정서학대의 결과 혹은 징후가 신체학대에 비해 발견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증거가 미약하고, 암묵적으로 행하는 언어적인 무시, 비난 등에 대한 목인이 아직까지 정서학대로 인식되는 비율이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IV-2-2> 아동학대의 이해 - 정서학대

단위: %(명)

구분	① 전혀 학대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④ 학대인 것 같다	⑤ 확실한 학대다	①+ ②	④+ ⑤	계(수)	$\chi^2(df)$
a.	-	22	7.5	29.2	61.1	22	90.3	100.0(1,000)	
학부모	-	3.0	11.6	40.0	45.4	3.0	85.4	100.0(500)	105.610(3)***
교직원	-	14	3.4	18.4	76.8	14	95.2	100.0(500)	
b.	0.1	3.0	12.6	30.7	53.6	3.1	84.3	100.0(1,000)	
학부모	0.2	3.0	16.0	32.6	48.2	3.2	80.8	100.0(500)	16.791(4)**
교직원	0.0	3.0	9.2	28.8	59.0	3.0	87.8	100.0(500)	
c.	-	0.7	4.6	23.6	71.1	0.7	94.7	100.0(1,000)	
학부모	-	1.0	6.4	26.2	66.4	1.0	92.6	100.0(500)	14.300(3)**
교직원	-	0.4	2.8	21.0	75.8	0.4	96.8	100.0(500)	
d.	-	0.3	1.2	9.8	88.7	0.3	98.5	100.0(1,000)	
학부모	-	0.6	2.0	12.4	85.0	0.6	97.4	100.0(500)	16.775(3)**
교직원	-	0.0	0.4	7.2	92.4	0.0	99.6	100.0(500)	
e.	0.2	1.5	6.9	25.4	66.0	1.7	91.4	100.0(1,000)	
학부모	0.4	2.2	7.4	32.0	58.0	2.6	90.0	100.0(500)	32.476(4)***
교직원	0.0	0.8	6.4	18.8	74.0	0.8	92.8	100.0(500)	
f.	0.1	0.8	5.8	27.0	66.3	0.9	93.3	100.0(1,000)	
학부모	0.2	0.8	8.4	31.4	59.2	1.0	90.6	100.0(500)	27.429(4)***
교직원	0.0	0.8	3.2	22.6	73.4	0.8	96.0	100.0(500)	

(표 IV-2-2 계속)

구분	① 전혀 학대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④ 학대인 것 같다	⑤ 확실한 학대다	①+ ②	④+ ⑤	계(수)	$\chi^2(df)$
전체	01	14	64	243	678	15	921	100.0(6,000)	
학부모	0.1	1.8	8.6	29.1	60.4	1.9	89.5	100.0(3,000)	
교직원	0.0	1.1	4.2	19.5	75.2	1.1	94.7	100.0(3,000)	

** $p < .01$, *** $p < .001$

주: 1) a.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설을 하는 행동 b. 나가라고 하며 쫓아내는 행동 c.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행동 d.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고 말하는 행동 e.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 f. 너처럼 못하는 애는 처음 봤다고 말하며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행동

2) 음영색은 정서학대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유형을 나타냄.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고, 신체적·정서적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방임이다. 방임은 부모 혹은 책임 있는 성인이 영유아를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책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방임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할 수 있어서 학부모와 교직원의 민감도가 중요하다.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방임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행동'이 97.1%로 가장 높게 방임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놔두는 행동'이 다음 순으로 90%이상 높게 방임의 유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IV-2-3 참조).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빈번하게 결석하는 행동'은 70.6%로 방임의 유형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임의 유형에서도 학부모에 비해 교사들이 방임의 모든 유형들에서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갖고 놀아도 방치하는 행동' 항목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비율차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특히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빈번하게 결석하는 행동'에서도 학부모에 비해 교사가 방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그 차이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표 IV-2-3〉 아동학대의 이해 - 방임

단위: %(명)

구분	① 전혀 학대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④ 학대인 것 같다	⑤ 확실한 학대다	①+ ②	④+ ⑤	계(수)	$\chi^2(df)$
a.	-	1.9	11.2	34.0	52.9	1.9	86.9	100.0(1,000)	
학부모	-	2.0	16.8	41.6	39.6	2.0	81.2	100.0(500)	78.49(3)***
교직원	-	1.8	5.6	26.4	66.2	1.8	92.6	100.0(500)	
b.	-	0.6	5.0	28.6	65.8	0.6	94.4	100.0(1,000)	
학부모	-	0.4	5.4	35.6	58.6	0.4	94.2	100.0(500)	25.98(3)***
교직원	-	0.8	4.6	21.6	73.0	0.8	94.6	100.0(500)	
c.	0.3	2.7	11.4	28.2	57.4	3.0	85.6	100.0(1,000)	
학부모	0.4	3.2	14.2	35.4	46.8	3.6	82.2	100.0(500)	46.04(4)***
교직원	0.2	2.2	8.6	21.0	68.0	2.4	89.0	100.0(500)	
d.	0.1	0.2	2.6	13.6	83.5	0.3	97.1	100.0(1,000)	
학부모	0.2	0.2	4.8	16.4	78.4	0.4	94.8	100.0(500)	28.45(4)***
교직원	0.0	0.2	0.4	10.8	88.6	0.2	99.4	100.0(500)	
e.	0.1	3.2	16.2	34.7	45.8	3.3	80.5	100.0(1,000)	
학부모	0.0	3.4	21.2	41.4	34.0	3.4	75.4	100.0(500)	59.85(4)***
교직원	0.2	3.0	11.2	28.0	57.6	3.2	85.6	100.0(500)	
f.	0.7	6.9	21.8	26.3	44.3	7.6	70.6	100.0(1,000)	
학부모	1.0	9.6	26.6	28.8	34.0	10.6	62.8	100.0(500)	48.74(4)***
교직원	0.4	4.2	17.0	23.8	54.6	4.6	78.4	100.0(500)	
전체	0.2	2.6	11.4	27.6	58.3	2.8	85.9	100.0(6,000)	
학부모	0.3	3.1	14.8	33.2	48.6	3.4	81.8	100.0(3,000)	
교직원	0.1	2.0	7.9	21.9	68.0	2.2	89.9	100.0(3,000)	

*** $p < .001$

주: 1) a. 아이가 위험한 것(칼, 쇠파이프 등)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행동 b.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행동 c. 어두워질 때까지 자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동 d.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행동 e. 잘못된 행동을 해도 모른 채 하는 행동 f. 유치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동
2) 음영색은 가장 높게 인식하는 유형임.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최근 들어 가장 민감하게 인식되는 학대유형이다. 신체적, 정서적학대와 방임 등과 같이 성학대는 영유아의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체·정서 발달, 성격형성에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심각한 학대이다. 성학대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5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90% 중반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V-2-4 참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성학대로 나타난 유형은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는 행동'이다. 특히,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는 행동'과 '아이가 싫어하는 데도 억지로 몸을 만지는 행동'은 학대가 아닌 것 같다고 부정하는 비율이 0%로 나타났다. 즉, 이는 모든 학부모와 교직원이 학대로 의심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5가지 유형에 대해 모두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유형에서도 교직원이 학부모에 비해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른들이 옷을 벗고 신체를 보여주는 행동'은 가장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차가 큰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아동학대의 이해 - 성학대

단위: %(명)

구분	① 전혀 학대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④ 학대인 것 같다	⑤ 확실한 학대다	①+ ②	④+ ⑤	계(수)	$\chi^2(df)$
a.	0.5	1.8	8.2	19.1	70.4	23	89.5	100.0(1,000)	
학부모	0.8	2.8	12.4	28.2	55.8	3.6	84.0	100.0(500)	1025(4)**
교직원	0.2	0.8	4.0	10.0	85.0	1.0	95.0	100.0(500)	
b.	-	0.8	2.1	11.4	85.7	0.8	97.1	100.0(1,000)	
학부모	-	1.2	2.8	16.2	79.8	1.2	96.0	100.0(500)	286(3)**
교직원	-	0.4	1.4	6.6	91.6	0.4	98.2	100.0(500)	
c.	-	-	1.4	7.6	91.0	-	98.6	100.0(1,000)	
학부모	-	-	1.8	10.6	87.6	-	98.2	100.0(500)	1425(2)**
교직원	-	-	1.0	4.6	94.4	-	99.0	100.0(500)	
d.	-	-	1.6	9.3	89.1	-	98.4	100.0(1,000)	
학부모	-	-	1.8	14.0	84.2	-	98.2	100.0(500)	269(2)**
교직원	-	-	1.4	4.6	94.0	-	98.6	100.0(500)	
e.	-	0.6	2.8	12.5	84.1	0.6	96.6	100.0(1,000)	
학부모	-	1.0	4.4	17.8	76.8	1.0	94.6	100.0(500)	406(3)**
교직원	-	0.2	1.2	7.2	91.4	0.2	98.6	100.0(500)	
전체	0.1	0.6	3.2	12.0	84.1	0.7	96.0	100.0(5,000)	
학부모	0.2	1.0	4.6	17.4	76.8	1.2	94.2	100.0(2,500)	
교직원	0.0	0.3	1.8	6.6	91.3	0.3	97.9	100.0(2,500)	

** $p < .01$, *** $p < .001$

주: 1) a. 어른들이 옷을 벗고 신체를 보여주는 행동 b.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동 c.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하는 행동 d.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동 e.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동

2) 음영색은 가장 높게 인식하는 유형임.

2)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유치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학대 유형을 토대로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14가지 유형의 아동학대를 보기로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IV-2-5 참조).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의 14개 예시 유형 중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몸에 있는 상처 등 유아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는 데도 교사가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에 대해 유일하게 80%이상 학부모와 교직원이 동일하게 학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직원과 학부모가 인식하는 유치원의 아동학대를 살펴보면, 교직원이 아동학대로 80%이상 인식하는 유형은 '평소에 깨우는 습관이 있는 유아가 친구의 팔을 깨물어 자국을 남겼다. 교사는 "친구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라고 말하며 깨물린 친구에게 유아의 손을 물게 한다',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속적으로 가져오지 않는 유아를 다른 활동에도 참여시키지 않는다', '유아의 창작물(그림, 만들기 등)에 대해 "이 것 밖에 못해? 동생 반 아이가 한 것 같아."라고 말한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몸에 있는 상처 등 유아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는 데도 교사가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와 '창고와 같은 컴컴한 방을 도깨비(또는 무서운 아저씨)가 나오는 방이라고 하며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그 방에 가야한다고 겁을 준다'의 5가지 유형이다.

이에 비해 학부모가 유치원의 아동학대라고 80%이상 인식하는 유형은 '평소 편식이 심한 유아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자 교사는 "한번은 먹어야지"라고 말하며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 넣어준다. 그리고 토하려는 유아에게 "그냥 삼켜!"라고 말한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몸에 있는 상처 등 유아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는 데도 교사가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와 '잘못을 한 유아를 앞으로 불러내어 친구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공개하여 무안하게 한다' 등의 3가지 유형이다.

이 같은 14개 유형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는 대부분이 교직원이 학부모에 비해 아동학대로 민감하게 인식하는데 비해, 학부모가 80%이상 학대라고 인식한 유형 중의 두 유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가 동일하게 인식하는 유형도 있으나, '평소 편식이 심한 유아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자 교사는 "한번은 먹어야

지”라고 말하며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 넣어준다. 그리고 토하려는 유아에게“그냥 삼켜!”라고 말한다’와 ‘잘못을 한 유아를 앞으로 불러내어 친구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공개하여 무안하게 한다’에서는 교직원에 비해 학부모 인식이 유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최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유치원 상황과 연결해 볼 때, 교사의 입장에서는 생활지도라는 측면에서 행해질 수 있으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안함을 주는 교사의 행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표 IV-2-5〉 아동학대의 이해 - 유치원

단위: %(명)

구분	① 전혀 학대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④ 학대인 것 같다	⑤ 확실한 학대다	①+ ②	④+ ⑤	계(수)	$\chi^2(df)$
a.	1.0	11.9	24.4	36.7	26.0	12.9	62.7	100.0(1,000)	
학부모	1.2	13.2	26.8	38.2	20.6	14.4	58.8	100.0(500)	16.009(4)**
교직원	0.8	10.6	22.0	35.2	31.4	11.4	66.6	100.0(500)	
b.	1.4	15.6	30.4	32.1	20.5	17.0	52.6	100.0(1,000)	
학부모	2.2	17.0	31.4	34.2	15.2	19.2	49.4	100.0(500)	21.233(4)**
교직원	0.6	14.2	29.4	30.0	25.8	14.8	55.8	100.0(500)	
c.	0.8	6.5	13.2	38.6	40.9	7.3	79.5	100.0(1,000)	
학부모	1.6	8.2	16.0	41.4	32.8	9.8	74.2	100.0(500)	36.458(4)**
교직원	0.0	4.8	10.4	35.8	49.0	4.8	83.8	100.0(500)	
d.	2.8	16.4	27.2	32.9	20.7	19.2	53.6	100.0(1,000)	
학부모	3.4	16.8	28.0	37.8	14.0	20.2	51.8	100.0(500)	36.602(4)**
교직원	2.2	16.0	26.4	28.0	27.4	18.2	55.4	100.0(500)	
e.	7.1	26.6	21.0	23.8	21.5	33.7	45.3	100.0(1,000)	
학부모	8.4	31.0	22.2	22.6	15.8	39.4	38.4	100.0(500)	26.061(4)**
교직원	5.8	22.2	19.8	25.0	27.2	28.0	52.2	100.0(500)	
f.	0.4	5.6	19.3	43.3	31.4	6.0	74.7	100.0(1,000)	
학부모	0.6	7.4	26.2	45.2	20.6	8.0	65.8	100.0(500)	69.434(4)**
교직원	0.2	3.8	12.4	41.4	42.2	4.0	83.6	100.0(500)	
g.	1.7	13.2	32.2	31.4	21.5	14.9	52.9	100.0(1,000)	
학부모	2.6	13.8	38.0	32.8	12.8	16.4	45.6	100.0(500)	51.313(4)**
교직원	0.8	12.6	26.4	30.0	30.2	13.4	60.2	100.0(500)	
h.	0.4	4.2	17.1	43.1	35.2	4.6	78.3	100.0(1,000)	
학부모	0.4	2.8	16.6	48.6	31.6	3.2	80.2	100.0(500)	15.513(4)**
교직원	0.4	5.6	17.6	37.6	38.8	6.0	76.4	100.0(500)	

2) 아동학대 뉴스 “강제로 먹이고 밀치고’…부산 유치원서 아동학대(2015. 10. 16). MBN 뉴스

(표 IV-2-5 계속)

구분	① 전혀 학대가 아니다	② 학대가 아닌 것 같다	③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④ 학대인 것 같다	⑤ 확실한 학대다	①+ ②	④+ ⑤	계(수)	$\chi^2(df)$
i.	21	122	31.1	32.3	22.3	14.3	54.6	100.0(1,000)	
학부모	24	11.8	36.8	32.8	16.2	14.2	49.0	100.0(500)	27.70(4) ^{***}
교직원	1.8	12.6	25.4	31.8	28.4	14.4	60.2	100.0(500)	
j.	0.9	6.7	22.3	39.0	31.1	7.6	70.1	100.0(1,000)	
학부모	0.8	5.2	20.4	44.2	29.4	6.0	73.6	100.0(500)	12.951(4) [*]
교직원	1.0	8.2	24.2	33.8	32.8	9.2	66.6	100.0(500)	
k.	0.3	4.7	16.8	44.0	34.2	5.0	78.2	100.0(1,000)	
학부모	0.2	4.4	19.4	47.4	28.6	4.6	76.0	100.0(500)	16.345(4) ^{**}
교직원	0.4	5.0	14.2	40.6	39.8	5.4	80.4	100.0(500)	
l.	-	1.7	12.5	42.8	43.0	1.7	85.8	100.0(1,000)	
학부모	-	1.4	15.0	48.8	34.8	1.4	83.6	100.0(500)	29.573(3) ^{***}
교직원	-	2.0	10.0	36.8	51.2	2.0	88.0	100.0(500)	
m.	0.3	4.9	16.6	42.3	35.9	5.2	78.2	100.0(1,000)	
학부모	0.2	3.4	13.2	45.4	37.8	3.6	83.2	100.0(500)	15.166(4) ^{**}
교직원	0.4	6.4	20.0	39.2	34.0	6.8	73.2	100.0(500)	
n.	0.7	5.1	16.0	37.1	41.1	5.8	78.2	100.0(1,000)	
학부모	1.0	6.2	21.6	37.6	33.6	7.2	71.2	100.0(500)	37.012(4) ^{***}
교직원	0.4	4.0	10.4	36.6	48.6	4.4	85.2	100.0(500)	
전체	1.4	9.7	21.4	37.1	30.4	11.1	67.5	100.0(14,000)	
학부모	1.8	10.2	23.7	39.8	24.6	12.0	64.3	100.0(7,000)	
교직원	1.1	9.1	19.2	34.4	36.2	10.2	70.6	100.0(7,000)	

** $p < .01$, *** $p < .001$

- 주 :1) a. 다른 친구에게 장난감을 던진 유아에게 “너도 한 번 장난감에 맞아 볼래?”라고 말한다.
- b. 밥을 안먹는 유아에게 “안 먹는 친구는 놀이 못해!”라고 말하며,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다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 c. 평소에 깨무는 습관이 있는 유아가 친구의 팔을 깨물어 자국을 남겼다. 교사는 “친구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라고 말하며 깨물린 친구에게 유아의 손을 물게 한다.
- d. 평소 장난감을 잘 정리하지 않는 유아에게 다른 친구들의 장난감을 대신 정리할 때까지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 e. 잘못된 행동을 한 유아를 5분 이상 격리시킨다(생각하는 의자, 복도 등).
- f.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속적으로 가져오지 않는 유아를 다른 활동에도 참여시키지 않는다.
- g. 등하원 시간 전후로 혼자 남아 있는 유아에게 TV를 시청하도록 하게 한 후 교사는 교실에서 30분 이상 업무처리를 한다.
- h. 평소 편식이 심한 유아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자 교사는 “한번은 먹어야지”라고 말하며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 넣어준다. 그리고 토하려는 유아에게 “그냥 삼켜!”라고 말한다.

(표 IV-2-5 계속)

- 주 :1) i.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아에게, “참 잘했어요.”라고 말하며 교사가 유아에게 억지로 뽀뽀를 한다.
 j. 유아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주변 사물을 큰 소리가 나게 쾡하고 치면서 이야기 한다(예시: 편식하는 유아가 간식을 안 먹고 있을 때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행위).
 k. 유아의 창작물(그림, 만들기 등)에 대해 “이 것 밖에 못해? 동생 반 아이가 한 것 같아.”라고 말한다.
 l.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몸에 있는 상처 등 유아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는 데도 교사가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m. 잘못을 한 유아를 앞으로 불러내어 친구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공개하여 무안하게 한다.
 n. 창고와 같은 컴컴한 방을 도깨비(또는 무서운 아저씨)가 나오는 방이라고 하며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그 방에 가야한다고 겁을 준다.
 2) 음영색은 가장 높게 인식하는 유형임.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6>와 같다. 학부모는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74.6%로 높은 반면, 교직원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82.2% 높아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인식의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유치원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어느 정도 그렇다	④ 매우 그런 편이다	①+ ②	③+ ④	계(수)	M	SD	t
전체	11.5	42.3	40.9	5.3	53.8	46.2	100.0(1,000)	2.60	0.759	
학부모	0.8	24.6	64.2	10.4	25.4	74.6	100.0(500)	2.84	0.598	2.633**
교직원	22.2	60	17.6	0.2	82.2	17.8	100.0(500)	1.96	0.63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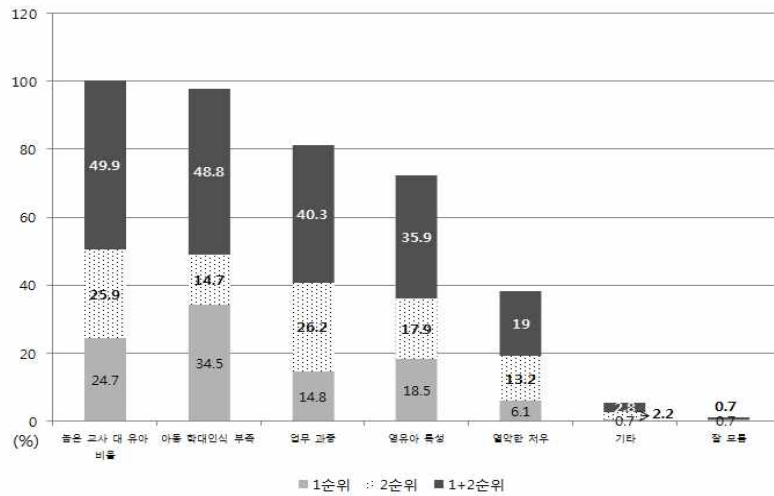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응답을 살펴보면, 학부모는 ‘아동학대 인식 부족’, ‘교사의 업무과중’, ‘열악한 처우’ 순으로 제시한 반면, 교직원은 ‘높은 교사 대 유아비율’, ‘영유아특성’, ‘업무과중’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학부모에 비해 교직원이 ‘영유아특성’을 원인으로 제시한 비율이 약 41%이상 높게 나타나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2-7〉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순위 응답)

단위: %(명)

구분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	아동 학대인식 부족	업무 과중	영유아 특성	열악한 처우	기타	잘 모름	계(수)	$\chi^2(df)$
1순위	24.7	34.5	14.8	18.5	6.1	0.7	0.7	100.0(1000)	
학부모	18.2	50.4	16.0	5.2	10.0	0.2	0.0	100.0(500)	222.479 (6) ^{***}
교직원	31.2	18.6	13.6	31.8	2.2	1.2	1.4	100.0(500)	
2순위	25.9	14.7	26.2	17.9	13.2	2.2	0.0	100.0(974)	
학부모	24.4	12.5	30.2	9.9	21.6	1.4	0.0	100.0(496)	102.101 (5) ^{***}
교직원	27.4	16.9	22.0	26.2	4.6	2.9	0.0	100.0(478)	
1+2순위	49.9	48.8	40.3	35.9	19.0	2.8	0.7	100.0	
학부모	42.4	62.8	46.0	15.0	31.4	1.6	0.0	100.0	
교직원	57.4	34.8	34.6	56.8	6.6	4.0	1.4	100.0	

*** $p < .001$



[그림 IV-2-1]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

아동학대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 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유치원 관리자에게 말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교직원에서도 동일한 결과였으나, 학부모는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V-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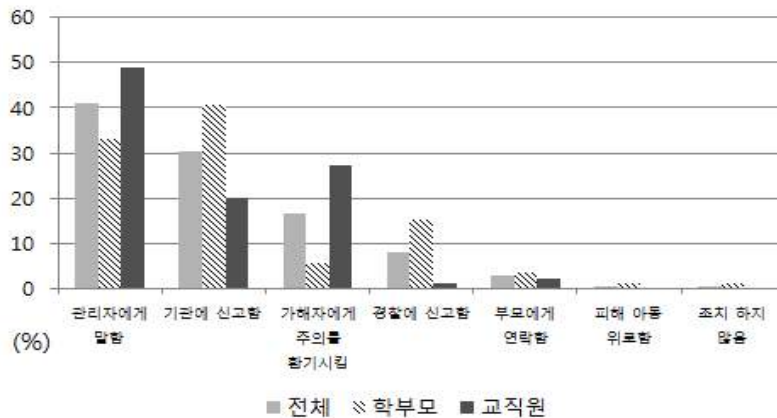
〈표 IV-2-8〉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단위: %(명)

구분	관리자에게 말함	기관에 신고함	가해자 에게 주의를 환기 시킴	경찰에 신고함	부모 에게 연락 함	피해 아동 위로함	조치 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40.9	30.3	16.5	8.2	3.0	0.6	0.5	100.0(1,000)	190.901(6)***
학부모	33.0	40.6	5.6	15.2	3.6	1.0	1.0	100.0(500)	
교직원	48.8	20.0	27.4	1.2	2.4	0.2	0.0	100.0(500)	

*** $p < .001$

구체적으로 보면, 학부모에게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 혹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 유치원 외부의 관련 신고 기관을 활용하는 비율이 50% 넘게 나타난 반면, 교직원에게서는 유치원 관리자에게 말한다는 비율과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비율이 약 75%이상으로 나타나서, 아동학대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2]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사항

나.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에 대한 의견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인 것의 적합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높은 비율로 동의하였다.

〈표 IV-2-9〉 신고의무 대상자로서 교사의 적합성

구분	단위: %(명)			$\chi^2(df)$
	예	아니오	계(수)	
전체	90.6	9.4	100.0(1,000)	24.846(1)***
학부모	86.0	14.0	100.0(500)	
교직원	95.2	4.8	100.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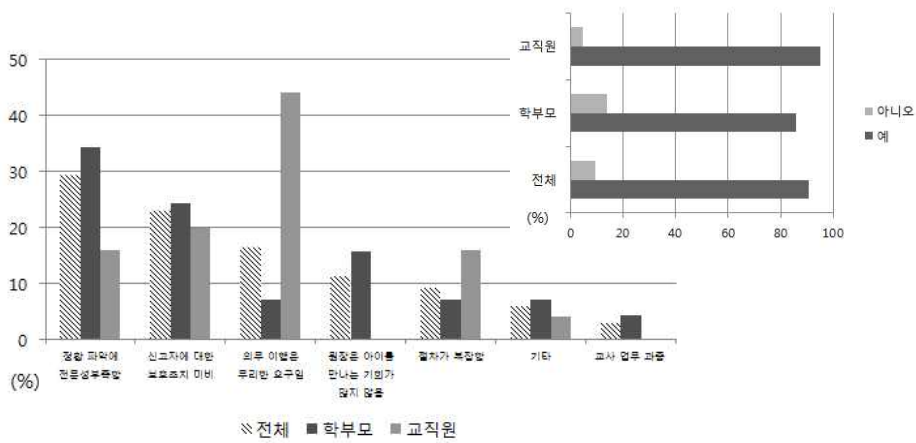
*** $p < .001$

그러나 신고의무 대상자로서 교사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학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는 데 교사가 비전문가임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 반면, 교사는 의무로까지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표 IV-2-10〉 교사가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구분	단위: %(명)								$\chi^2(df)$
	정황 파악에 전문성 부족함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비	의무 이행은 무리한 요구임	원장은 아이를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음	절차가 복잡함	기타	교사 업무 과중	계(수)	
전체	29.5	23.2	16.8	11.6	9.5	6.3	3.2	100.0(95)	23.907(6)**
학부모	34.3	24.3	7.1	15.7	7.1	7.1	4.3	100.0(70)	
교직원	16.0	20.0	44.0	0.0	16.0	4.0	0.0	100.0(25)	

** $p < .01$



[그림 IV-2-3] 신고의무대상자로서의 교사 적합성 여부와 부적합성이유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 가를 조사한 결과, 교직원이 학부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신고절차를 안내 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그 경로는 교직원은 교육과 연수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학부모는 신문 등과 같은 매스컴, 원장님 설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1〉 신고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및 경로

단위: %(명)

구분	아니오		예		안내 경로					
	비율	명수	비율	명수	교육 및 연수	원장님 설명	신문, 방송 등	관련기 관자료	대학교과 수업	기타
전체	46.2	(462)	53.8	(538)	77.3	7.4	7.2	6.1	1.5	0.4
학부모	78.2	(391)	21.8	(109)	12.8	29.4	33.0	21.1	3.7	0.0
교직원	14.2	(71)	85.8	(429)	93.7	1.9	0.7	2.3	0.9	0.5
$\chi^2(df)$	411.980(1)***				341.981(5)***					

*** $p < .001$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목격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목격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목격한 아동학대 유형을 조사하였더니 전체적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이는 교직원에서도 동일한 결과였고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었으며 학부모에게서는 신체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IV-2-12〉 아동학대 목격 여부 및 목격 시 아동학대 유형

단위: %(명)

구분	아니오		예		아동학대 유형					
	비율	명수	비율	명수	정서적 학대	신체 학대	중복 학대	방입	성학대	기타
전체	81.2	(812)	18.8	(188)	33.3	26.7	18.4	14.4	6.3	0.9
학부모	75.2	(376)	24.8	(124)	28.1	28.9	20.3	15.2	7.4	0.0
교직원	87.2	(436)	12.8	(64)	47.8	20.7	13.0	12.0	3.3	3.3
$\chi^2(df)$	23.582(1)***				-					

*** $p < .001$

목격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교사, 보조교사 순으로 나타났고 교직원 역시 교사의 비율이 높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표 IV-2-13 참조).

〈표 IV-2-13〉 아동학대 행위자

단위: %(명)

구분	교사	보조교사	잘 모름	원장 (갑)	기타	이사장	운전 기사	계(수)	$\chi^2(df)$
전체	66.0	14.9	10.6	4.3	2.1	1.6	0.5	100.0(188)	
학부모	70.2	16.9	4.8	6.5	0.0	1.6	0.0	100.0(124)	27.329(6)***
교직원	57.8	10.9	21.9	0.0	6.3	1.6	1.6	100.0(64)	

*** $p < .001$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윗분에게 말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원장이나 이사장 등에게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는 방법으로 초기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는 해당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은 가해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비율이 35%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관이나 부모에게 연락한다는 비율은 학부모 응답 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아동학대 조치(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윗분 에게 말함	가해자 에게 주의를 환기시킴	부모 에게 연락함	기관에 신고함	조치를 하지 않음	피해 아동 위로 함	경찰에 신고함	계(수)
전체	36.3	19.4	13.1	11.8	7.2	7.2	5.1	100.0(188)
학부모	36.2	12.3	15.3	14.1	6.1	9.2	6.7	100.0(124)
교직원	36.5	35.1	8.1	6.8	9.5	2.7	1.4	100.0(64)

주: 음영색은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냄.

위와 같이 목격한 아동학대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결과, 학부모는 신고 시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부담, 제도적 장치를 몰라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교직원의 경우는 심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하였다는 비율이 높았고, 기타로 응답한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 응답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모르거나 부모나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없었다.

〈표 IV-2-15〉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심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제도적 장치를 알지 못해서	기타	부모나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계(수)	$\chi^2(df)$
전체	265	265	235	147	88	100.0(34)	
학부모	20.0	32.0	32.0	4.0	12.0	100.0(25)	13.906(4)**
교직원	44.4	11.1	0.0	44.4	0.0	100.0(9)	

** $p < .01$

주: 음영색은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냄.

아동학대 목격 시, 가장 높은 비율의 조치인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두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이후의 조치 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16>와 같다.

〈표 IV-2-16〉 원장, 경찰, 기관의 조치

단위: %(명)

구분	원장의 조치							계(수)	경찰이나 기관 조치			계(수)
	a	b	c	d	e	f	g		h	i	j	
전체	40.7	17.4	12.8	10.5	9.3	8.1	1.2	100.0(86)	43.2	48.6	8.1	100.0(37)
학부모	30.5	22.0	18.6	11.9	3.4	11.9	1.7	100.0(59)	45.2	54.8	0.0	100.0(31)
교직원	63.0	7.4	0.0	7.4	22.2	0.0	0.0	100.0(27)	33.3	16.7	50.0	100.0(6)
$\chi^2(df)$	23.175(6)**								17.168(2)***			

** $p < .01$, *** $p < .001$

주: 1) a. 가해자 문책함. b. 부모와 후속조치를 상의함. c. 가해자와 피해아동분리 시킴. d. 소문 나지 않게 주의시킴. e. 기타. f. 피해아동 위로함. g. 기관, 경찰에 신고함. h. 원장이 부모와 수습하도록 유도함. i. 법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함. j. 기타.
2) 음영색은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냄.

원장의 조치를 보면, 학부모가 신고한 경우에는 가해자 문책과 부모와 후속 조치는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직원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 문책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위로 혹은 기관,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또한 경찰이나 기관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나 기관에서는 학부모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비율이 원장과 부모가 함께 수습하도록 유도하는 비율과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직원의 경우는 부모와 원장이 함께 수습하도록 유도하는 비율이 약 30%정도였으나, 기타 비율이 50%이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유치원 아동학대를 목격하였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관리자에게 보고, 관련 기관 신고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부모는 관련 기관에 신고와 경찰에 신고를 합한 비율이 약 50%에 달하는 반면에 교직원 은 해당 기관의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비율이 약 54.8%로 나타났다.

〈표 IV-2-17〉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치

단위: %(명)

구분	관리자 에게 보고함	기관에 신고함	가해자 에게 주의를 환기시킴	경찰에 신고함	부모에게 연락함	기타	피해 아동 위로	조치 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41.4	25.0	12.6	11.9	7.6	1.2	0.2	0.1	100.0(1,000)	
학부모	28.0	29.4	7.8	20.6	13.0	0.6	0.4	0.2	100.0(500)	177.375
교직원	54.8	20.6	17.4	3.2	2.2	1.8	0.0	0.0	100.0(500)	(7)***

*** $p < .001$

주: 음영색은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경우임.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신고 이후에 신뢰할 만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4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신고자를 위한 보호적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순으로 응답하였고, 교직원은 신고자를 위한 보호적 차원의 지원방안마련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18〉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 필요한 사항

단위: %(명)

구분	신고 이후에 신뢰할 만한 확실한 조치	신고자를 위한 보호적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기타	계(수)	$\chi^2(df)$
전체	46.5	29.6	23.4	0.5	100.0(1,000)	
학부모	48.2	24.0	27.8	0.0	100.0(500)	24.490(3)***
교직원	44.8	35.2	19.0	1.0	100.0(500)	

*** $p < .00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의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한 결과, 학부모는 교직원과 부모간의

신뢰부족, 관련 언론 보도 증가 순으로 응답했고 교직원의 경우는 관련 언론 보도 증가, 신고에 대한 교육확대 순으로 응답했다(표 IV-2-19 참조).

〈표 IV-2-19〉 아동학대 신고 증가의 원인

단위: %(명)

구분	관련 언론 보도 증가	신고에 대한 인식 확대	교직원과 부모 간의 신뢰 부족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	기타	계(수)	$\chi^2(df)$
전체	34.2	25.9	25.0	13.3	1.6	100.0(1,000)	
학부모	32.4	19.0	33.4	13.2	2.0	100.0(500)	48.561(4)***
교직원	36.0	32.8	16.6	13.4	1.2	100.0(500)	

*** $p < .001$

다. 아동학대 교육 및 예방에 대한 의견

1) 아동학대 교육 및 예방 교육 현황 및 요구

아동학대 교육 및 예방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을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학부모의 약 83.6%, 교직원의 10.4%정도가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참석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로의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IV-2-20〉 아동학대예방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 경험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참여 못한 이유				기타
			참석할 기회가 전혀 없어서	너무 바빠서	참석 방법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전체	53.0 (529)	47.0 (471)	46.1	27.0	21.9	4.5	0.6
학부모	16.4 (82)	83.6 (418)	43.8	27.0	23.7	5.0	0.5
교직원	89.6 (447)	10.4 (53)	64.2	26.4	7.5	0.0	1.9
$\chi^2(df)$	537.760(1)***		13.972(4)**				

** $p < .01$, *** $p < .001$

주: 음영색은 응답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냄.

세미나와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참여 횟수와 1회당 평균 참여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는 대부분 1회 참여하였고, 1회 참

여 평균 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높은 비율인 약 68.3%로 나타났다. 교직원은 1회와 2회 정도 참여한 비율이 동일하게 높게 나타나서 응답자의 각 41.3%가 참여하였으며, 1회 평균 참여 시간은 1~2시간이 약 6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직원의 경우, 매해 유치원 원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및 예방 교육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본 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IV-2-21〉 1년 동안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 횟수 및 1회당 평균 참여 시간

단위: %(명)

구분	참여 횟수				1회당 평균 참여시간				계(수)
	1회	2회	3회	4회	1시간미만	1~2시간	2~3시간	3시간이상	
전체	43.0	39.2	10.8	7.0	15.7	62.8	16.0	5.5	100.0(530)
학부모	52.4	28.0	15.9	3.7	20.7	68.3	11.0	0.0	100.0(82)
교직원	41.3	41.3	9.8	7.6	14.7	61.8	17.0	6.5	100.0(448)
$\chi^2(df)$	8.979(3)*				8.912(3)*				

* $p < .05$

주: 음영색은 높은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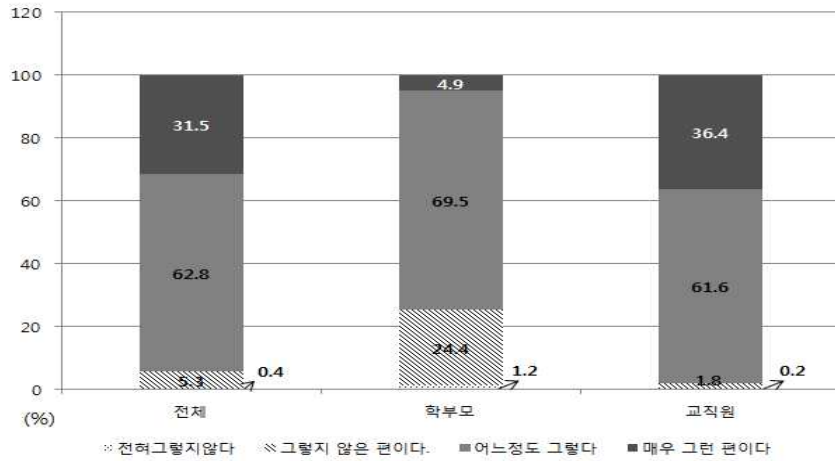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알게 된 정도는 학부모에 비해 교직원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이나 세미나 내용이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서로 다른 접근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2-22 참조).

〈표 IV-2-22〉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알게 된 정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①+②	③+④	계(수)	M	SD	t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런 편이다						
전체	0.4	5.3	62.8	31.5	5.7	94.3	100.0(530)	3.25	0.565	
학부모	1.2	24.4	69.5	4.9	25.6	74.4	100.0(82)	2.78	0.545	-8.858**
교직원	0.2	1.8	61.6	36.4	2.0	98.0	100.0(448)	3.34	0.524	

** $p < .01$



[그림 IV-2-4]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한 아동학대 인지 정도

학부모와 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방임을 위한 교육 혹은 세미나 참여기관은 <표 IV-2-23>와 같다. 학부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나, 교직원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가장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해당 유치원이다.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은 비율이 약 23% 정도로 나타나 낮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비해 교육 실시 기회가 적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이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표 IV-2-23>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기관(중복 응답)

단위: %(명)

구분	시·도 및 지역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원	기타	계(수)
전체	43.4	27.6	23.6	5.4	100.0(530)
학부모	33.0	43.6	23.4	0.0	100.0(82)
교직원	44.9	25.2	23.7	6.2	100.0(448)

주: 음영색은 높은 비율을 나타냄.

향후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가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약 80%이상, 교직원의 약 90% 이상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학부모의 약 15%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보여, 학부모의 다양한 생활패턴을 고려한 적극적인 맞춤형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표 IV-2-24〉 향후 학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chi^2(df)$
전체	86.1	3.0	10.9	100.0(1,000)	
학부모	80.4	4.2	15.4	100.0(500)	27.152(2)***
교직원	91.8	1.8	6.4	100.0(500)	

*** $p < .001$

아동학대 예방 교육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예방을 위한 지도방법'을 우선 순위로 제시하였다(표 IV-2-25 참조). 학부모는 다음으로는 '상담 및 관리 방법', '신고관한 정보' 순으로 나타났고, 교직원은 '실제사례', '상담 및 관리 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25〉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종류

단위: %(명)

구분	예방을 위한 지도방법	상담 및 관리 방법	신고 관한 정보	실제 사례	학대 개념, 내용	학대 척도 기준	아동 발달 특성	기타	계(수)	$\chi^2(df)$
전체	36.6	15.9	13.5	11.7	10.9	7.8	3.4	0.2	100.0(1,000)	
학부모	37.0	17.2	17.2	6.0	12.4	4.6	5.4	0.2	100.0(500)	65.974
교직원	36.2	14.6	9.8	17.4	9.4	11.0	1.4	0.2	100.0(500)	(7)***

*** $p < .001$

향후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학부모의 약 40.8%가 '발견 후 대처방법'이라고 응답했으며, 교직원의 약 46.6%는 '예방을 위한 지도방법'이라고 응답했다.

〈표 IV-2-26〉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단위: %(명)

구분	예방을 위한 지도방법	발견 후 대처방법	학대 부모의 면담방법 부모교육	정서적 피해로 인한 문제점	학대아동 에게 도움을 줄 정보	학대 아동 발견 방법	계(수)	$\chi^2(df)$
전체	40.1	34.3	9.3	5.7	5.4	5.2	100.0(1,000)	

(표 II-2-26 계속)

구분	예방을 위한 지도방법	발견 후 대처방법	학대 부모의 면담방법 부모교육	정서적 피해로 인한 문제점	학대아동에게 도움을 줄 정보	학대아동 발견 방법	계(수)	$\chi^2(df)$
학부모	33.6	40.8	4.0	7.6	8.2	5.8	100.0(500)	74.602
교직원	46.6	27.8	14.6	3.8	2.6	4.6	100.0(500)	(5)***

*** $p < .001$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해서 다양한 접근 형태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학부모의 약 55.4%, 교직원의 약 66.0%가 전문가 강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표 IV-2-27〉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단위: %(명)

구분	전문가 강의	동영상 자료	워크숍	잡지나 책 등의 문자매체	기타	계(수)	$\chi^2(df)$
전체	60.7	20.6	12.2	5.4	1.1	100.0(1,000)	
학부모	55.4	28.6	7.6	7.2	1.2	100.0(500)	
교직원	66.0	12.6	16.8	3.6	1.0	100.0(500)	59.131(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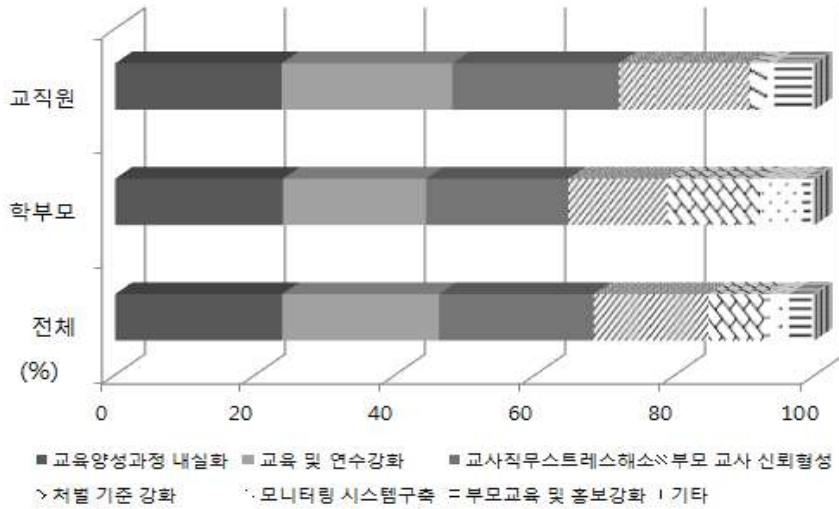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교사양성과정 내실화’, ‘교육 및 연수 강화’, ‘교사직무스트레스 해소’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도 전체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교직원은 교육 및 연수강화가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IV-2-28 참조).

〈표 IV-2-28〉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일

단위: %(명)

구분	교사 양성 과정 내실화	교육 및 연수 강화	교사 직무 스트레스 해소	부모 교사 신뢰 형성	차별 기준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모 교육 및 홍보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3.9	22.4	22.1	16.4	7.9	3.6	3.2	0.5	100.0(1,000)	
학부모	24.0	20.4	20.4	14.2	13.2	6.2	1.0	0.6	100.0(500)	
교직원	23.8	24.4	23.8	18.6	2.6	1.0	5.4	0.4	100.0(500)	75.709(7)***

*** $p < .001$



[그림 IV-2-5]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일

2) 아동학대 예방 조치로써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의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먼저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표 IV-2-29 참조). 학부모의 약 84%가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교직원의 약 43.4%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CTV 설치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IV-2-29〉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유치원 CCTV설치에 대한 의견

구분	단위: %(명)			계(수)	$\chi^2(df)$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59.8	27.0	13.2	100.0(1,000)	243.639(2)***
학부모	84.0	10.6	5.4	100.0(500)	
교직원	35.6	43.4	21.0	100.0(5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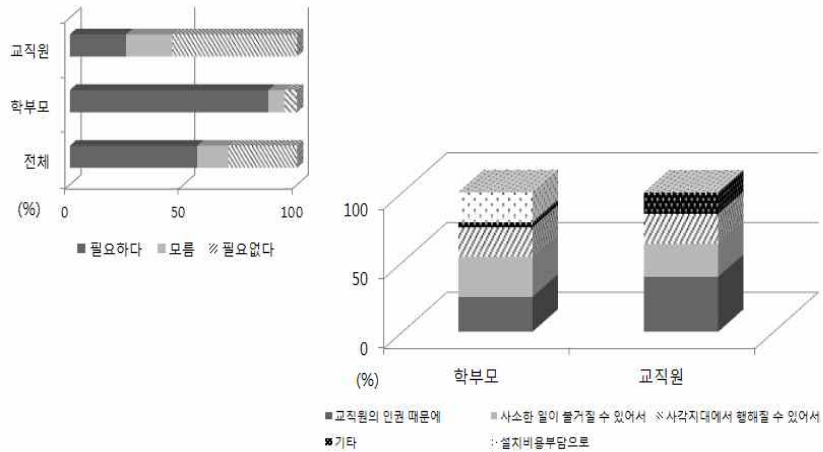
이와 연계하여 유치원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약 87.4%가 동의한 반면, 교직원의 약 54.8%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 CCTV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는 학부모는 '사소한 일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 '교직원의 인권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직원은 '교직원의 인권 때문', '사소한 일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란 의견도 학부모와 교직원에서 약 20% 이상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는 CCTV 설치비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설치비용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2-30참조).

〈표 IV-2-30〉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와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단위: %(명)

구분	필요하다	모름	필요없다	필요없는 이유					계(수)
				교직원의 인권 때문에	사소한 일이 불거질 수 있어서	사각지대에서 행해질 수 있어서	기타	설치비용 부담으로	
전체	56.1(561)	13.7(137)	30.2(302)	38.1	24.2	21.5	14.2	2.0	100.0(1,000)
학부모	87.4(437)	7.0(35)	5.6(28)	25.0	28.6	21.4	3.6	21.4	100.0(500)
교직원	24.8(124)	20.4(102)	54.8(274)	39.4	23.7	21.5	15.3	0.0	100.0(500)
$\chi^2(df)$		407.7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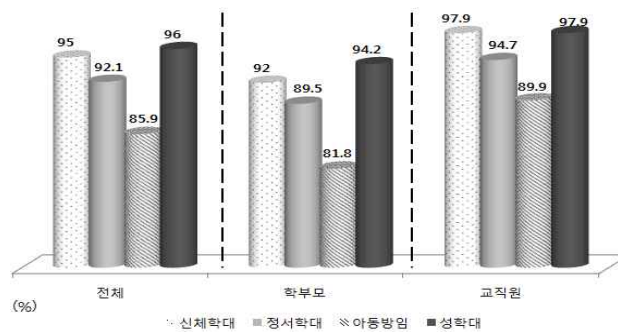
*** $p < .001$



[그림 IV-2-6]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부정적 의견

3. 소결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과 조치 현황, 예방교육 등을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학부모에 비해 교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아동방임 및 성학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유형의 세부 내용에서도 대체적으로 교사가 학부모에 비해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전체적인 경향을 요약하면 [그림 IV-3-1]과 같다.



[그림 IV-3-1]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

둘째,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유형을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직원이 학부모에 비해 전체적으로 아동학대를 높은 비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부모가 억지로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고 판단되거나, 아동이 친구들과 앞에서 무안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직원에게 비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교직원은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될 때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신고대상자이다. 이러한 의무에 대해 교직원과 학부모는 적합하다고는 생각하나, 교직원은 의무로까지 부과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서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하고 있었다.

넷째,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부족,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등을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아동학대를 목격하여 신고를 한 경우, 학부모는 관련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사는 해당기관의 장 즉, 유치원장에게 보고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유치원의 학부모와 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매우 높았으며, 학부모와 교직원은 아동학대 및 상담, 아동학대 발견시 조치방법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직원은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였다. 교직원에 비해 학부모는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크게 앞섰다.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교직원은 교직원의 인권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제시한 반면, 학부모는 사소한 일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학대에 대해 학부모에 비해 교직원의 교육이 상당히 잘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명시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교육의 의무규정으로 인해 유치원장은 매해 아동학대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계획하여 해당 관할 시도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매해 규정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 그 영향으로 인해 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유형 인식에서 부모와 차이가 있었던 두 항목은 생활지도와 관련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적 측면의 훈계 혹은 지도로 판단한 반면, 학부모는 교사의 무리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건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사는 생활지도 측면에서 한 행위가 대부분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영유아를 위한 생활지도 방법을 영유아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교사들이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영유아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성격적·기질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부모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교사

가 상대적으로 학부모에 비해 높은 비율로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있지만, 학부모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다. 즉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나름의 기준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부모들을 대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아동학대 이해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부모교육 및 홍보 강화는 다양한 전략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유치원의 부모 참여 혹은 부모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요구와 상황을 파악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맞벌이 혹은 외벌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 전문가 강의 혹은 워크숍 등 부모교육을 위한 여러 형태들을 조사하여 요구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이는 교사에게도 동일하다. 교사들은 전문가 강의를 선호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실제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제 사례가 포함된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워크숍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부모와 교사들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교직원들은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부모에게서는 관련 기관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 절차를 인식하고 활용하게 될 때 불신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가 신고절차와 조치 이후의 대응 방안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혹은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CCTV 설치이다. 유치원에 앞서 대상이 유사한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무화되었다³⁾. 이에 유치원에서도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설치가 입법화 되었으나, 여전히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CCTV 설치가 갖는 긍정적·부정적 여론으로 인한 논쟁과 함께 CCTV를 어떻게 활용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3) 영유아보육법 제 15조의 4항(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의 2~9항 등.

대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원과 아동의 인권적인 측면, CCTV의 기술적인 측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논의되어 유치원의 CCTV 설치 관련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논의 및 제언

본 장에서는 2014~15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심층분석 주제인 유치원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6년간 수행되었던 '유아교육정책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 유아교육정책의 향후 방향 및 과제

가. 유아교육의 공적 인프라 확대

1) 공립유치원의 지속적인 확충

2012년 시·도 교육청의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에 의한 신증설이 조항에 포함되면서(교육과학기술부, 2012)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으나 최근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바 있다(교육부 공고 제2015-187호, 교육부 2015. 9. 16). 이에 관련 단체에서는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를 외면하고,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보도자료, 2015. 9. 18). 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호는 해마다 증가하여, 전국의 공립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은 평균 2.11대 1로 사립유치원(1.14대 1)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전민일보, 2015. 9. 13), 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정책의 추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 5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 추진

2014년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비율은 52.3:47.7로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다소 높으나 학급 수, 원아 수, 교원 수에서 70%이상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국의 단설유치원 비율은 전체 유치원의 2.6%, 전체 국공립유치원의 원아분담률이 22.7%에 불과한 상황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국공립 분담률 68.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90% 이상이 병설유치원이고, 병설유치원의 70% 이상이 1, 2학급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는 병설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 전임 원감 배치, 일정 규모의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이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내실화화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원아분담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민간의존율이 90%에 달해 국공립 확충 계획과 더불어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을 기반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회계제도의 사용, 정보공시제,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이 도입·시행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공공형 제도를 구체화하여 유아교육의 공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나. 유아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배분

1) 무상교육으로의 유아학비 현실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 속에서 어린이집 3-5세를 위한 누리과정 지원액은 현실적으로 운영체제가 상이한 두 기관에 동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시간 대비 지원액의 차이에서 오는 부모와 현장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2015년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책임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KNS 뉴스통신, 2015. 7. 30).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은 국고보조금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최근 유치원 취원율 상승의 원인을 누리과정 재정지원의 불확실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정부가 유아교육에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기에 충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교육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또한 2014년 말부터 제기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논란으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처럼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정부지원의 최소 시간을 설정하고, 이후 시간은 차등 지원하는 방안과 원비 상한제 등 부모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방과후 과정 차등 지원-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선별 지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비율과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기준, 취원아의 67.5%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있다(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7%(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을 상회하고 있다.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과 맞물려 있다. 현재 모든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방과후 과정의 운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취업모, 취약계층 등의 양육 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를 전제로 방과후 과정을 정립하고, 방과후 과정 이용대상의 자격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교원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1) 교원 1인당 유아 수의 지속적인 감축

유치원의 학급규모는 최대 학급규모와 면적에 대한 기준으로 규정되고 있다.

학급당 원아 수에 대한 규정은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규정되어(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6조), 시·도별로 편차가 큰 상황이다. 최근 10년 간 유치원의 교원 1인당 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기는 하나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의 감소 추이가 큰 상황이다. 교사 1인당 유아 수 또한 OECD(2014) 평균과 비교해보면 OECD 평균(2012년 기준) 14.0명, EU21 평균(2012) 13.0명에 비해 우리나라(2012년 기준)는 16.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로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감소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2014년 기준 사립유치원 교원은 24세 이하가 35.8%, 25~29세가 28.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평균 연령대가 더 높았다. 경력별로도 사립유치원은 5년 미만 경력 교사가 60.8%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 경력 교사는 국·공립유치원이 36.5%로, 사립유치원(5.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저연령, 저경력 교사가 지배적인 이유는 처우와 근로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교사의 이직의도 원인은 보수, 원장, 적성 순으로 직무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전일우, 2003)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로조건의 개선이 시급함을 반증한다. 또한 교사의 이직은 유아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사립유치원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단계 중 유아교육에 해당하는 0단계의 분류범주 5에서 교원의 자격을 교직 이수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신은수·박은혜, 2012에서 재인용) 유보통합 추진의 교사양성·자격체제 정비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3)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의무화 및 컨설팅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원내외 장학, 컨설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설립유형별 교원의 연수 현황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 참여율이 국·공립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의 근무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더불어 자율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연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질 관리 체제의 안정적 정착

1) 유치원평가 제도의 방향성 재고

유아교육기관의 모니터링과 질을 평가하는 것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유아의 발달과 웰빙을 위해 교사를 조력할 수 있다(OECD, 2015). 실제로 질적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교실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Reach and Risk Report, 2011-2012; Rand, 2008; Yazejian, & Iruka, 2014, 장혜진·송신영, 2014에서 재인용). 많은 나라에서 모니터링의 한 방법으로 기관대상 평가에 접근하고 있다. 평가에 해당하는 용어가 나라마다 다르지만⁴⁾ 외부평가⁵⁾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4년 2월 발족한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3단계 추진과제 중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1단계 과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2014년 12월 개발하였다. 보도자료(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4.12.16)에 따르면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공통 핵심사항을 점검·평가하고, 현장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사항 위주로 지표를 간소화하였다.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통한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2015년 10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시범운영 중에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평가안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시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국가의 유아교육보육 기관 대상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찰하고, 시사점 도출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내부평가자로서 교사, 학부모의 평가 참여방안 마련

유아기는 부모의 결정과 판단, 양육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유

4) 영국에서는 inspection, evaluation, 노르웨이에서는 inspection, 홍콩과 뉴질랜드에서는 review, evaluation으로 명명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관대상 '평가'로 총칭함.

5) OECD(2015)에 의해 외부평가는 외부에 있는 평가자가 기관을 모니터링하는 실체를 말함.

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부모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동반자이므로, 협력이 잘 이루어 질 때 양질의 교육적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많은 주(Iowa, Colorado, Georgia, Massachusetts 등)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QRIS 질 관리 체제 지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OECD에서 보고한 Starting Strong III(2012)에서도 누리과정의 질적 발전을 위해 부모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거나 부모를 교육과정 운영 평가에 참여시키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2012년 4월부터 '5세 누리과정 부모 체험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단계적으로 구성·운영하여 누리과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부모의 눈으로 진단하고 보완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부모참여 활동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발하여 평가인증시 가점을 부여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유치원 평가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며 전년도 평가결과 중 부모 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부모참여를 유도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 유아교육 지원체계 확대 및 역할 강화

1) 유보통합 고려한 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2014년까지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예산을 감소하는 있는 추세로 협력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어린이집과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활성화되어 있다(김은영 외, 2011).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가 낮은 지역 등 지역별로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 유아교육지원 체계로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역사회 유아교육 지원체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체험시설 이용을 어린이집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 학부모의 만족도와 요구가 높다. 육아종합정보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유아교육진흥원이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영유아, 학부모들을 위한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앙, 지역, 유치원 차원으로 나누어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도 개선, 행정 체계들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역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공조를 위해 노력한다. 단위 유치원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중앙	제도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플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중장기 플랜과 연계한 계획 수립 ▪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아동보호센터 등과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아동학대 관련 법적 근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에 아동학대 관련 근거 조항 추가
지역	관할 기관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문가 양성 ▪ 아동학대 교육 및 홍보 강화
유치원	서비스 질 제고 및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질 제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 교원의 전문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의 자격 검증 강화 - 신규교사 인턴제 도입 - 아동학대 관련 연수 의무화, 인성교육 강화 등 ▪ 부모와의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자원봉사 활용

가. 중앙정부 차원: 제도적 기반 구축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

호주에서는 2009년 아동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들을 학대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 Protecting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s-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이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호주연방정부, 2009). 이 장기 계획에는 현재 호주 아동이 처해져 있는 위기 상황, 아동권 존중을 위해 필요한 변화와 국가 차원에서 아동보호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아동보호 시스템을 제시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절차를 갖고 있다. 한편 영국의 NSPCC와 같은 국가 수준의 아동학대와 방임을 관리하는 주체는 출생에서부터 아동기 전반에 대한 아동학대와 방임을 매해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고, 사례 제시 등을 통해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있다(NSPCC, 2015). 아동학대는 개인, 가정, 기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아동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 제도적 기반 위에 다양한 지원 체계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나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단이 되어 단기적인 정책이 추진되기 보다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아동학대 발생 이후 사후관리를 세심하고 배려있게 진행하여 아동학대 피해자, 가해자 뿐 아니라 모든 관련 주체들이 일상으로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이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외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피해자인 어린 유아의 회복 뿐 아니라 기관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정책의 주된 목표는 아동학대 발생 비율을 매해 줄여나가는 데 있다. 따라서 2000년 초반까지 아동학대가 가

정의 문제였다면 그 이후로 사회적·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Youth and Family Centres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체계 과정에서 가족지원, 아동지원 등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또한 Children Act의 법령을 근거로 아동학대와 방임의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기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회복지기관과는 별도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위한 기관의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양혜원, 2013).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권리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3) 아동학대 개념과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지만, 최근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시간 유치원에 머무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유사한 시설인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2015년 5월 19일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한 정의와 처벌규정이 명시되면서, 유치원에서도 이와 같은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5. 5. 19).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의 개념은 대상과 범위, 그 결과를 매우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폭넓은 법해석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구체적인 아동학대 상황을 정의하고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인 성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발생 시, 구체적인 처벌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법집행에서 명확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 처벌이나 행정조치 등을 위해 법률을 검토하고 적용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건의 주체인 '아동'이다. 학대피해자인 아동의 주체성이 인정되고,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전략 모색

본 연구의 조사결과, 최근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직원은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였다. 교직원에게 비해 학부모는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크게 앞섰다.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교직원은 교직원의 인권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제시한 반면, 학부모는 사소한 일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CCTV 설치이다. 유치원에 앞서 대상이 유사한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무화되었다⁶⁾. 이에 유치원에서도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설치가 입법화 되었으나, 여전히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여전히 있다. 그러나 CCTV 설치가 갖는 긍정적·부정적 여론으로 인한 논쟁과 함께 CCTV를 어떻게 활용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아동의 인권적인 측면, CCTV의 기술적인 측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논의되어 유치원의 CCTV 설치에 관한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건강사회서비스안전부(Department of Health, Social services and Public safety)에서는 12세 미만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사(childminding)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minimum standards)을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하나로 CCTV에 대한 내부 방침이 정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 보호 대책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CCTV는 경찰의 범죄수사를 돕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덴마크, 아일랜드 등에서는 아동 보호시설에의 CCTV 설치는 아동의 보호 기능이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개인 사생활보호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3월 14일 국가인권위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오마이뉴스, 2015. 8. 26). CCTV 설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앞서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최소한의 자질 검증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원의 인권보장, CCTV 관리 지침 준수 등을 전제로 유치원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 15조의 4항(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의 2~9항 등.

나. 지방정부 차원: 관할 기관 운영지원 및 지역사회 공조 강화

1)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실화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명시된 아동학대 예방 관련한 교육의 의무규정으로 인해 유치원장은 매해 아동학대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계획하여 해당 관할 시도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매해 규정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 그 영향으로 인해 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방교육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내용과 방법의 실질적이 개선이 요구된다.

영국의 NSPCC의 주요한 활동 중에서 우리나라 유치원 만 5세를 포함하는 primary에 재학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육을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NSPCC는 primary school의 신청을 받아 학교의 조회시간이나 별도의 워크숍 시간 등을 할애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만5세를 포함하는 초등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와 방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교육 및 예방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 학부모의 약 83.6%, 교직원의 10.4%정도가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참여 못한 이유로는 참석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아동,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로의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본 연구의 조사결과,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해서 다양한 접근 형태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학부모의 약 55.4%, 교직원의 약 66.0%가 전문가 강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직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모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교사들은 전문가 강의를 선호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수-학습 실제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제 사례가 포함된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워크숍 등의 아동학대 전

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3)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행태이므로 이로 인한 아동의 부적응행위나 이상행동을 포착하거나 징후가 의심되면 즉각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교육부·충남교육청, 2015).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목격한 아동학대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결과, 학부모는 신고 시 부과 될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부담, 제도적 장치를 몰라서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교직원의 응답에서 제도적 장치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음을 고려할 때 부모 대상의 아동학대 발생 시 구체적인 절차나 매뉴얼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아동학대방지법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와 유사하게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김잔디, 2014).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 가를 조사한 결과, 교직원이 학부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신고절차를 안내 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그 경로는 교직원은 교육과 연수가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학부모는 신문 등과 같은 매스컴, 원장님 설명 순으로 나타나 부모 대상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가정의 부모 혹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홍보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한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행의 의무를 유치원장이 갖고 있어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매해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아동복지법, 2015). 본 연구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인식 관련 모든 보기 항목에서 교직원이 학부모에 비해 높은 평균점 즉, 학대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학부모는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74.6%로 높

은 반면, 교직원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82.2% 높아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인식의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훈육과 아동학대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우려가 교직원의 사기를 저하하지 않도록 기관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단위 유치원 차원: 서비스 질 제고 및 신뢰형성 노력

1)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어린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와 직원의 특성, 열악한 물리적 환경, 질 낮은 프로그램 등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학대 및 방임에 까지 이르게 한다. NAEYC는 1996년에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교사들을 비롯한 유아교육전문가들이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position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자격 있는 교직원을 채용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유치원의 실내와 실외 환경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 구조 즉, 사적이고 숨겨진 공간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환경 개선 뿐 아니라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과정적 측면에서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관련한 교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 신규 교직원 인턴제 등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2) 교직원 채용 시 확인절차 강화

NAEYC(1996)에 의하면 유치원은 모든 종류의 교사들을 채용할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교직원들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한 이전의 어떠한 형태든지 전력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범죄와 폭력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이전의 근무지 고용자, 어린이의 부모들, 선생님들로부터 적어도 3명

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유치원은 이를 세심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수습기간을 가져야 하며 수습기간동안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어린 유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평가 받아야 한다. 교직원 채용에서 확인절차에 더해서 유치원은 역량 있는 교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급여, 근무시간 등 좋은 처우를 위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전력과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아동복지법, 2015), 요식행위를 그치는 경우도 많다.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포괄하여 대상으로 확대하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3) 부모와의 신뢰관계 형성 노력

본 연구의 조사결과, 교직원이 상대적으로 학부모에 비해 높은 비율로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있지만, 학부모와의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나름의 기준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부모들을 대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아동학대 이해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부모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부모와 소통을 통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부모자원봉사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의 부모참여 통로를 마련하여 부모와 교직원 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결어

본 보고서는 2009-2015년까지 6개년 동안 유아교육정책 변화를 고찰하고, 10년 단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부처인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당해년도 유아교육정책의 핵심 이슈인 주제를 심층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 제목과는 달리 유아교육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하는 annual report 성격에 가깝다. 정책의 큰 변화가 발생한 시기에는 이전의 유아교육정책의 성과(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2년,

2013년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인 마무리되고,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 해당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 하기도 하였다. 보고서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포괄하고 있어, 유아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보고서이기도 하다. 6년 간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이를 현장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각 시·도 교육청(2014).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현황. 보고자료.
- 각 시·도 교육청(2014). 국·공립유치원 취원아 수. 보고자료.
- 각 시·도 교육청(2014). 방과후 과정 등록 취원아 수. 보고자료.
- 각 시·도교육청(2015). 지자체 지원 사업 현황. 보고자료.
- 강동욱(2014).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법학논총, 21(1), 443-473.
- 강동욱문영희(2011). 아동학대-법과제도. 청목출판사.
- 교육과학기술부(각년도). 유아교육 예산 편성현황-세부사업. 내부자료.
- 교육부(2013). 각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 교육원 운영현황. 내부자료.
- 교육부(2014). 3주기 유치원평가 중앙연수 자료.
- 교육부(2014).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14). 방과후 과정 관련 현황. 내부자료.
- 교육부(2014).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 교육부(2015). 제3주기(1년차) 유치원 평가. 내부자료.
-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2015). 행복한 어린이, 안전한 유치원생활 건강·안전 관리길라잡이.
-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기현·장화정·김경희·장희선(2014).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종조치 관련 요인 분석.
- 김미숙·김기현·양심영·유비(2015). 지역사회기반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 연계 촉진요인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49, 85-115.
- 김상용·장화정·양혜원·정혜욱(2012).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용역보고서.
- 김상원·이양희(2014). 아동기 학대경험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 아동과

- 권리, 18(1), 27-47.
- 김영옥·이기숙·신은수·문미옥·박은혜·장명림·정미라·이화룡·조부경·우명숙·문무경·조형숙·최운정·김진영·김은영·서현(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광주광역시교육청.
- 김은설(2010). 2010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 김은설·이윤진·김경미(2011).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 김은설·황성온·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0).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잔디(2014).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법학, 22(2), 475-501.
- 김현숙·신은수·유영의·전홍주·노재은(2007). 연령별 적정학급규모를 통한 유아의 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연구. 정책연구개발사업 2007-위탁-37. 교육인적자원부.
- 도남희(2015).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를 진단하다. 육아정책 Brief, 37호.
- 마송희·지성애(2000). 유아학대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1), 117-137.
- 박은혜·신은수(2012). 2011 국제표준교육분류 0단계(ISCED 0단계)에 기초한 누리과정의 유아교육제도로서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16(2), 341-356.
- 박지민·이종원(2014).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 비교. 아동과 권리, 18(3), 217-229.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2013).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송길연·장유경·이지연·정윤경(2005). 발달심리학. 서울: 세계이지러닝코리아.
- 신은수·박은혜(2012). 유아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구성 요인 분석: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정 비교를 기반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3), 71-91.
- 안재진(2002).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시 학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전행정부(각 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 양영임·우남희(2005).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연구. 아동권리연구, 8(4), 661-690.
- 양혜원(2013). 아동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 - 영·미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27(1), 245-276.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6). 일반논평.
- 윤호열(2015). 유아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관련 요인- 교육신념과 교사효능감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29, 580-610.
- 윤희숙·김인경·권형준(2013).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KDI FOCUS.
- 이무선(2015). 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경희법학, 50(1), 49-82.
- 이미훈(2014).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모와 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 이승희(2014). 시론: 아동학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부경신문, 725호, 2014.11.10. p.11.
- 장화정·윤은영·박은혜(2013). 영아대상 방임의 실태 및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1(3), 99-113.
- 장혜진·송신영(2014).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비교 연구- 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전일우(2003). 사립유치원 교사의 이직의도 원인 및 이직계획 시기와 직무태도와의 관계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7(4), 39-52.
- 정웅성(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피해자학연구, 22(1), 189-213.

- 정채옥(2002).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0, 298-325.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3). 아동학대인식조사 보고서.
- 차영숙·문혜련(2009).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8, 61-80.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a).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b).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황성온·황우상(2012).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년도).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2014). 유아학비 시·도별 지원아 수.
- 한미현(2013).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한국보육진흥원 보고서(미간행)*.
- 호주연방정부(2009). Protecting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s-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
- Abrahams, N., Casey, K., & Daro, D. (1992). Teacher's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child abuse and its prevention. *Child Abuse and Neglect*, 16, 229 - 238.
- Commonwealth of Australia(2009). Protection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s-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www.ag.gov.au/cca). 2015. 2. 20 인출.
-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2010). Global progress towards prohibiting all corporal punishment.
- Gershoff, E. T. (2002). Corporal punishment, physical abuse, and the burden of proof: Reply to Baumrind, Larzelere, and Cowan (2002), Holden (2002), and Parke (2002).
- Higgins, D. j., & Katz, I.(2008). Enhancing service systems for protecting children: promoting child well-being and child protection reform in

- Australia. *Family Matters*, 80, 43-50.
- Knutson, J. F., DeGarmo, D., Koepl, G., & Reid, J. B. (2005). Care neglect, supervisory neglect, and harsh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ggress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Child maltreatment*, 10(2), 92-107.
- Marotz, L. R.(2012). *Health, safety, and nutrition for the young child*(8th ed.). Australia ; United States : Wadsworth Cengage Learning.
- NAEYC(1996).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to prevent child abuse. A position statemen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NAEYC(2009). Where we stand on child abuse prevention.
-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NSPCC). <http://www.nspcc.org.uk/services-and-resources/research-and-resources/child-abuse-and-neglect-in-the-uk-today/2015>. 7. 1 인출.
- Netherlands Youth Institute(2007). *Youth Policy in the Netherlands*.
- NSPCC(2009). The definitions and signs of child abuse. *Child protection fact sheet*. NSPCC inform(www.nspcc.org.uk/inform) 2015. 2. 20 인출.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 OECD(2015). *Education policy outlook 2015*.
- RAND education(2008). *Assessing child-care quality: How well does Colorado's qualistar 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 work*.
- Reach and Risk Report(2011-2012). Office of Child Development and Early Learning.
- Trickett, P. K., Mennen, F. E., Kim, K., & Sang, J. (2009). Emotional abuse in a sample of multiply maltreated, urban young adolescents: Issues of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Child Abuse & Neglect*, 33(1), 27-35.
- UK Government(2006). *Guidance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11).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ISCED).

Yazejian, N., & Iruka, I. U. (2014). Associations among tiered 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 supports and quality improv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in press.

[법령]

아동복지법 제 3조, 11조, 제17조 제3~6호, 26조, 제 35조.([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13259,20150327\)](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13259,20150327))). 2015. 5. 26 인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 4조, 제 5조.([http://www.law.go.kr/법령/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2341,20140128\)](http://www.law.go.kr/법령/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2341,20140128))). 2015. 5. 26 인출.

형법 제 2편.([http://www.law.go.kr/법령/형법/\(12898,20141230\)](http://www.law.go.kr/법령/형법/(12898,20141230))). 2015. 5. 20 인출.

영유아보육법 제 15조 제 4항.([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13323,20150518\)](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13323,20150518))). 2015. 5. 25 인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3조 제 1항.([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령/\(26525,20150915\)](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령/(26525,20150915))). 2015. 5. 26 인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 2~9항.([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00355,20150918\)](http://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00355,20150918))). 2015. 5. 26 인출.

유아교육법 제 2조.([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13226,20150327\)](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13226,20150327))). 2015. 5. 25 인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6조, 제 29조 제 1~2항. ([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시행령/\(25962,20150106\)](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시행령/(25962,20150106))). 2015. 5. 26 인출.

[뉴스 보도자료]

국무총리실(2013. 12. 4). 유보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 보도자료.

국무총리실(2014. 12. 16). “직장맘·저소득층에.. 0~5세 보육료 더 준다 - 취업여부·소득별로 보육료 차등 지원.. 무상보육 4년만에 대수술”(12.16, 한국경제) 관련 보도해명자료.

교육부(2015. 9. 17). 교육부 공고 제2015-18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뉴스1(2014. 7. 24). 부산 사립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파문확산.

동아일보(2015. 5. 1). “어린이집 CCTV 설치 9월부터 의무화”.

베이비뉴스(2015. 2. 11). ‘누리과정 예산 지원, 주체부터 명확히 하라’.

에듀뉴스(2015. 1. 5). 경기유아교육진흥원 폐지는 유아교육의 후퇴!.

오마이뉴스(2015. 8. 26). 교육부, 법 근거 없이 유치원에도 CCTV 설치?.

전민일보(2015. 9. 13). 사립보다는 공립 유치원 선호.

중앙일보(2014. 11. 7). 시·군·구 ‘무상보육으로 파산’... 정부 ‘추가지원 없다’.

한겨레(2015. 3. 9). 어린이집 예산 바닥... 교육감들 ‘누리과정 포기할 수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2015. 9. 18). 유아교육법시
행령(유아수용계획)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EBS 뉴스(2015. 1. 20).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봇물.

KNS뉴스통신(2015. 7. 3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누리과정예산 국고지원 촉구.

MBN뉴스(2015. 10. 16). ‘강제로 먹이고 밀치고’...부산 유치원서 아동학대.

Abstract

Outcom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in 2015 and Future Tasks

Eun-Young Choi, Jinwha Lee, Seungji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overall information on and to assess the outcom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2014, and to set future task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by analyzing related issues that require in-depth analysis. In conducting the research we analyzed annual education statistics reports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nual reports, internal reports from Ministry of Education, reports by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s well as other related documents. In addition via interviewing child-abuse specialists, kindergarten staff (principal, teacher, etc) and parents, we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erception of child abuse taking place at child care institutions. We also conducted a survey among kindergarten staff and parents on the state and their perception of child abuse. Furthermore, we held advisory conferences comprised of professionals and academics working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receive advice on research directions, survey contents and questions as well as policy suggestions. Numerous meetings on data collection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research collaboration were hel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overall current status analysis of 2014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number of kindergartens, the number of classes and kindergarten attendance rate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particular, the attendance rate for 5-year-old children, 60.0%, showed the greatest increase among age groups with a 3.6% increase. Nevertheless, the number of children enrolled in kindergartens was 652,546, a 5,642 decrease compared to 2013. The number of kindergarten staff at public kindergartens was 11,931 while the number of

staff at private kindergartens was 36,599, 3.1 times greater than the former. The percentage of children enrolled at public kindergartens increased 0.6% to 10.7% compared to 2013. Furthermore, children per kindergarten staff ratio continued to show a decrease becoming closer to the OECD average. As reported by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ial indicators, 0.291% of GDP was spen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2014, a continuous upward trend since 2010 when it was 0.127%, and 8.7% of total expenditure on education was spen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which more than doubled 3.5% in 2010. The amount of government funding for kindergarten tuition of 3 to 5 year old children was 143 billion won, and the ratio of total enrolled children to children receiving funding was 101.8%. 97.2% of kindergartens were reported to be providing after-school programs, and 67.5% of enrolled children participated in such programs, a rise compared to 2013. In 2014, the first year evaluation of the third kindergarten evaluation which included 2,635 kindergartens (29.9% of all kindergartens) was completed. The numbe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ollaborative networks which showed a decreasing trend until 2011 started to increase since 2012. There was also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development institutes with a total number of 14 in 2014. In addition there are 14 institutes for experience education as of 2014. Second, according to our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jects of 17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re was a great discrepancy in budget among the different regional offices. In addition, among the 17 offices, there were offices for which government funding in 2015 increased or decreased compared to 2014 as well as offices that did not receive any funding at all. Third,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of child abuse, relevant policy and current state of child abuse through in-depth analysis and researched, compared and analyzed the perception of general types of child abuse and child abuse treatments among kindergarten staff and parents of young childre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numerous future directions and task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expansion of public

infrastructur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ecuring and efficient allocation of funding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offering better compensation and working conditions for kindergarten staff, stable establishment of a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expansion of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pport systems. Furthermore, this study discussed and suggested policies to prevent child abuse at the central, regional and kindergarten level.

부 록

부록 1. 시·도별 지역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사업 예산(2015)

부록 2. 유치원 아동학대 인식조사표(교직원용)

부록 3. 유치원 아동학대 인식조사표(학부모용)

부록 4. 아동학대 관련 심층면담 분석 내용

부록 1. 시·도별 지역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사업 예산(2015)

1) 서울

〈부록 표 III-1-1〉 서울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동부	교원 연수	공·사립	유아의 인권 존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의 실제	675
		공·사립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프로젝트접근법	350
		공·사립	동료장학을 위한 수업 분석 방법	350
		공·사립	연령별 누리과정에 따른 그림책 적용 사례	291
서부	자율장학회 지원	공·사립	유치원 자율장학회 지원	3,250
		공·사립	방과후 과정 교원 연수	428
		공·사립	유치원 원장, 원감 연수	100
		공·사립	유치원 교원 독서 연수	996
		공·사립	질문이 있는 교실 운영을 위한 교원연수	656
남부	교원 연수	공·사립	신규교사 누리과정 연수	704
		공·사립	방과후과정 교사 연수	650
		공·사립	독서교육방법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3,306
		사립	사립유치원장 연수	782
북부	교원 연수	공·사립	교육과정 연수	5,450
		공·사립	유아생활법교육프로그램	-
		공·사립	질문이 있는 교실 연수	751
		공·사립	책과 함께 커가는 아이들' 독서연수	256
		공·사립	유치원 관리자 역량강화'연수	300
중부	교원 연수	공·사립	유아관찰 및 평가방법 교원연수	1,294
	유아교육자료개발	공·사립	안전교육자료 보급	2,280
강동 송파	교원연수	공·사립	원장 연수	1,484
		공·사립	인성교육 연수	486
	교원연수	공·사립	원감 및 방과후과정 교원 안전교육 연수	665

(부록 표 III-1-1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강동 송파	교원연수	공·사립	수업혁신지원 연수(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456
		공·사립	행정지원 연수(문서 및 생활기록부 작성)	241
강서	교원연수	공·사립	원장(감) 연수	1,350
		공·사립	2015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	70
		공·사립	신규교사 연수	1,348
		공·사립	에듀케어(종일제) 교사 연수	1,449
	유치원 교수학습 자료 선정 및 보급	공·사립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재·교구 선정 및 보급	5,500
	유치원 학부모 연수	공·사립	2015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학부모 연수	1,288
강남	교원 연수	공·사립	장학지원 계획 안내 및 교직원 안전연수	700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연수	688
		공·사립	누리과정의 질향상을 위한 연수	52
동작 관악	교원 연수	공·사립	독서교육, 질문이 있는 교실 관련 교원 연수	700
		공·사립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 연수	600
성동 광진	교원 연수	공·사립	안전교육 연수	922
	학부모 연수	공·사립 학부모	부모교육	796
성북	교원 연수	공·사립	원장 연수	1,280
	유치원 교원 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사 연수	2,507

2) 부산

〈부록 표 III-1-2〉 부산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서부	자율연수교육훈련	공·사립	연수경비, 명당 25천원	14,200
	교육자료활용전달연수	공·사립	연수경비, 명당 216천원	432
	지구별장학협의회운영	공·사립	협의회비, 원당 500천원	3,000

(부록 표 III-1-2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서부	수업연구대회	심사위원	심사수당	180
	수업컨설팅	공·사립	컨설팅수당, 협의회	6,110
	수업컨설팅워크숍	공·사립	교재제작, 원고료, 강사비, 행사비	1,932
남부	자율연수교육훈련	공·사립	연수경비, 명당25천원	16,100
	교육자료활용전달연수	공·사립	연수경비, 명당216천원	864
	수업컨설팅	공·사립	수당, 워크숍 및 협의회	5,800
	지구별장학협의회운영	공·사립	협의회비, 원당500천원	4,000
	수업연구대회	심사위원	심사수당	160
북부	자율연수교육훈련	공·사립	직무연수경비, 인 당 25만원 이내	18,000
	교육자료활용전달연수	공·사립	연수경비, 명당216천원	432
	수업컨설팅	공·사립	수당, 워크숍 및 협의회	5,170
	지구별장학협의회운영	공·사립	협의회비, 원당500천원	4,000
	수업연구대회	심사위원	심사수당	180
	자율연수교육훈련	공·사립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경비 지원	15,900
동대	교육자료활용전달연수	공·사립	연수여비 지원	432
	지구별장학협의회운영	공·사립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지구별 수업 공개 및 협의회 실시	3,500
	수업컨설팅	공·사립	수당, 워크숍 및 협의회	7,740
	수업연구대회	심사위원	수업연구대회 심사수당 지원	180
	자율연수교육훈련	공·사립	연수경비, 명당25천원	18,150
	교육자료활용전달연수	공·사립	연수경비, 명당216천원	864
해운대	수업컨설팅	공·사립	수당, 워크숍 및 협의회	8,670
	지구별장학협의회운영	공·사립	협의회비, 원당500천원	4,000
	수업연구대회	심사위원	심사수당	180

3) 대구

〈부록 표 III-1-3〉 대구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동부	동부유아교육발간 사업	공·사립	유아교육기본계획서	884
	장학자료발간 사업	공·사립	장학자료 발간	1,456
	교원역량개발지원 사업	공·사립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864
	현장중심장학활동 사업	사립	현장장학협의회 운영	1,000
	유아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	공립	순회교육 및 보결수업 지원	2,752

(부록 표 III-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서부	유치원현장장학협의회 운영	사립	현장장학협의회 운영비	1,000
	유아교육계획발간	공·사립	유아교육계획발간	384
	장학자료발간	공·사립	장학자료발간	2,386
	유치원교원역량개발지원	공·사립	교원 수업전문성 신장	949
	유아교육지원센터운영	공·사립	순회교육 및 보결수업 지원	4,384
	공립유치원신규교사-경력 교사고리맺기	공립	신규교사 업무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비예산
남부	유치원현장장학협의회 운영 지원	사립	현장장학협의회 운영비	1,000
	행복유아그림책프로젝트사업	공·사립	행복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비,학부모동아리운영비, 공연체험운영비	29,113
	유아교육계획발간	공·사립	남부유아교육계획 발간	1,491
	유치원교원역량개발지원	공·사립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742
	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	공립	보결 수업 및 순회 근무 지원	1,080
	달성	현장장학협의회운영지원	사립	사립유치원 현장장학협의회 운영
달성	유아교육기본계획서 발간	공·사립	달성유아교육계획 발간	1,600
	유치원교원역량개발지원	공·사립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711
	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	공립	보결수업 및 순회교육 지원	912
	유치원 신규교사 전문성 날개달기 멘토링제	공립	신규교사 업무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비예산

4) 인천

〈부록 표 III-1-4〉 인천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남부	유치원컨설팅장학지원	공·사립	유치원 컨설팅 장학운영	2,316
	장학자료발간	공·사립	유치원 장학자료 발간,보급	1,005
	교실수업개선	공·사립	수업연구발표대회 운영	180
	사립유치원교원자격연수	사립	교원 자격연수 교육비 및 여비 지원	15,327
	사립유치원교원직무연수	사립	교원 직무연수 여비 지원	440
	북부	유치원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	공·사립	수업중심유치원 운영비
유치원컨설팅장학지도		공립	유치원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 운영비	1,360
유치원수업연구발표대회		공·사립	유치원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	240
유치원운영계획서 발간		교육 지원청 공·사립	2015학년도 유치원 운영계획서 발간	850

(부록 표 III-14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북부	사립유치원 교원자격연수	사립	자격연수 교육경비, 여비 지원	18,177
	사립유치원 교원직무연수	사립	교원 직무연수 여비 지원	220
동부	유치원수업연구발표대회	공·사립 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1차) 운영 및 심사	240
	사립유치원교원연수지원	사립원장 원감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연수 지원	3,838
	사립유치원교원연수지원	사립원장 원감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연수 지원	6,122
	사립유치원교원연수지원	사립교사	사립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지원	17,004
서부	사립유치원교원연수지원	사립	사립교원자격, 직무연수지원	10,397
	교원연수지원	사립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지원	9,183
	교원연수지원	사립	사립1급 정교사 자격연수 지원	14,035
강화	유치원장학자료발간	공·사립	유아교육지원계획서 발간	500
	유치원교사수업연구발표대회	공·사립 교사	수업연구발표대회 심사 및 운영	135

5) 광주

〈부록 표 III-1-5〉 광주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동부	유치원교원연수지원	공·사립	1급 정교사 연수 지원	5,400
	교류체험지원	공립	도·농 중심유치원과 협력유치원 간 교육과정 교류학습	3,300
	방과후과정운영지원	공·사립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149,500
	방과후과정특성화 교육활동지원	공립	방과후과정 특성화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98,000
	독서문화추진사업	공립	유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11,27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정덕유치원	기계설비시설개선	30,00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정덕유치원	외벽보수공사	12,000
서부	유치원교원연수지원	공·사립	1급 정교사 연수 지원	19,200
	교류체험 지원	공립단설	도·농 교류체험지원	7,700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공·사립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239,200

(부록 표 III-1-5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서부	방과후과정 특성화교육활동지원	공립	방과후 과정 특성화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54,000
	독서문화추진사업	공립	독서문화 추진 사업비 지원	17,710
	유치원교육환경개선	공립	방수공사	34,368
	유치원교육환경개선	공립	담장시설	30,729
	유치원교육환경개선	공립	교실개조	60,540

6) 대전

〈부록 표 III-1-6〉 대전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동부	지역자율장학협의회주관학교 지원	공·사립 14개원	6지구 자율장학 운영비 지원	6,000
	유치원장학활동	공·사립	교수학습컨설팅 지원	8,620
	유치원종합컨설팅지원단운영	공·사립	종합컨설팅 지원	2,880
	유아교육지원연수	공·사립	교원연수 지원(열린강좌)	724
	자율연수협의회지원	공립	자율장학협의회 지원	1,000
	동부역점사업	공·사립	책과 친구하는 바른 인성교육	
	돌봄전담유치원운영	사립	온종일 및 저녁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지원	142,500
	3세대하모니교육	공·사립	3세대하모니 인력 운영 지원	61,740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비	공·사립	전년도 대비 원비동결 유치원에 대하여 방과후과정운영비 지원	1,366,000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사립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유아 교육비 지원	42,225
	공립유치원비정규직인건비	공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1,176,578
	사립교원인건비지원	사립	사립유치원교원 담임수당, 교직수당, 인건비보조	1,754,825
	사립단기대체교사인건비지원	사립	교원특별휴가 및 연수에 따른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0,950
서부	지역자율장학협의회주관학교 지원	공·사립 153개원	6지구 자율장학 운영비 지원	6,000
	자율연수협의회 지원	공립 57개원	공립교원 동아리운영 지원	1,000

(부록 표 III-1-6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서부	유치원 장학 활동	공·사립 153개원	교수학습컨설팅 지원	10,900
	유치원종합컨설팅지원단 운영	공·사립 153개원	종합컨설팅 지원	3,360
	유아교육지원연수	공·사립 153개원	교원의전문성신장을 위한 열린강좌 지원	904
	서부역점사업	공·사립 153개원	유초연계 꿈자람 과정 공감소통 레인보우	비예산
	3세대하모니교육	공·사립	방과후과정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63,000
	방과후과정운영비	공·사립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운영비, 전년 대비 원비 동결 유치원 운영비 지원	492,000
	유치원비정규직인건비지원	공립	업무실무원, 방과후과정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	2,543,157
	돌봄전담유치원운영	공·사립	온종일, 저녁 돌봄 운영비 지원	90,000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사립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	43,675
	학급신증설시설환경개선	학급증설 공립	교재교구비, 정보화기기 구입비,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265,000
	교원인건비지원	사립	사립 교원 담임수당, 교직수당, 인건비보조	2,450,532
	사립단기대체교사인건비지원	사립	교원 특별휴가 및 연수에 따른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0,750

7) 울산

〈부록 표 III-1-7〉 울산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강북	자원봉사자활동비	공립	3학급이상 공립유치원 행정업무지원자원봉사자활동 (상해보험포함)	48,220
	대체교사인건비	사립	사립유치원교사의 자격연수, 병가등발생시대체교사인건비지원	4,350
	방과후과정위탁강사활용	공립	방과후과정담당 강사 학기중1일5시간 방학중1일8시간활용	287,820

(부록 표 III-1-7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강북	유치원 장학활동 지원	공·사립	현장지원장학, 컨설팅장학	5,990
강남	자원봉사자활동비	공립	3학급이상 공립유치원 행정업무지원자원봉사자활동	48,220 (상해보험 포함)
	대체교사인건비	사립	사립유치원교사의 자격연수, 병가등발생시대체교사인건비지원	4,350
	방과후과정위탁강사활동	공립	방과후과정담당 강사 학기중1일5시간 방학중1일8시간활동	287,820
	유치원 장학활동 지원	공·사립	현장지원장학, 컨설팅장학	5,990

8) 경기

〈부록 표 III-1-8〉 경기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수원	유아교육활성화 연수	공·사립	교사 전문성 신장	870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공·사립	교사 전문성 신장	1,760
	유아교육자료개발	공·사립	실천중심장학자료개발	4,250
	교육과정운영 컨설팅 및 심사	공·사립	교육과정의 질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	1,500
	지역자체 돌봄유치원 운영	공립	돌봄유치원 운영지원	16,000
성남	교육과정연구회 지원	공·사립	교사연구회 운영비 지원	2,500
	교육과정연수 운영	공·사립	교원, 학부모, 장학요원 연수 지원	8,176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문	1,043
	협동장학 지원	공립	원장협의회, 원감협의회	600
	장학활동	공·사립	공개수업장학, 학급교육과정 컨설팅	6,624
	교육과정 컨설팅	공·사립	교육과정운영계획 편성운영 검토	2,065
안양 과천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공립	외벽누수공사	6,400
	유아교육지원	공·사립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6,900
	유아교육지원	학부모	학부모연수	921
	유아교육지원	공·사립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장학	4,716
	교원연수지원	공·사립	교원연수 운영	3,347
부천	교원연수지원	공·사립	유치원교육과정연수	2,289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공립	유치원지구별자율장학지원	4,000
	장학지원	공·사립	유치원 장학 지원	2,000
	유아교육기본계획제작	공·사립	유아교육기본계획 제작보급	2,000

(부록 표 III-1-8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광명	유초연계교육연수지원	공립	공교육력 강화를 위한 연수 활동 지원	1,500
	교육과정연수	공·사립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연수 지원	1,080
	교육과정점검	공·사립	교육과정편성운영내실화 지원	600
	광명유아기본계획발간	공·사립	교육과정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운영을 지원	712
	교육과정컨설팅	공·사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질적제고	1,100
	교육과정위원회	공·사립	지역현안과제 심의,자문	790
	협동장학지원	공·사립	협력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수업혁신 지원	1,900
	정보공시운영	공·사립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유치원 투명성 향상	800
	학부모연수	공·사립	학부모연수를 통한 유아교육의 중요성 인식 및 유아교육의 활성화	740
	공·사립유치원교사연수	공립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3,000
	장학자료개발	공·사립	현장중심의 수업혁신 지원	1,140
	창의지성교육컨설팅장학	공립	수업의 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1,000
안산	누리과정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공·사립	학습공동체별 운영비 및 연수지원	6,400
평택	한울타리 교과연구회	공·사립	누리과정 협력적 학습공동체 운영	1,200
군포	교육과정편성.운영 컨설팅	공·사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1,050
의왕	우수교육과정 공모전	공·사립	우수교육과정 공모전	674
여주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공립	지구별 교육과정 연구회	2,000
	유아교육지원	공·사립	장학활동지원	720
	유아교육지원	공립	유치원교사교육과정평가회	1,340
	유아교육지원	공·사립	유치원교사 역량강화연수	1,008
	유아교육지원	공·사립	장학자료개발보급	2,540
화성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공립교사	학습공동체 연수 지원	4,000
오산	교육과정위원회운영	공·사립	유치원교육과정 위원회	970
	유치원 교육과정 및 학급교육과정 공모대회	공·사립	공·사립유치원 교육과정 및 학급교육과정 공모	1,000

(부록 표 III-1-8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광주 하남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공립	유치원교사의 교육과정 연구회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 모색	2,000
	유아교육지원	공·사립	정보공시, 장학지원, 교육과정편성 및 배움중심 교수학습방법을 교원연수통해공유하여유치원 교육의질 제고	1,982
양평	교육과정연구회 지원	공·사립	교실수업혁신을위한연구지원 으로교원의전문성향상	5,455
	유아음악교육연구회 지원	공립	음악과 함께하는 교사교육	1,000
이천	유아교육계획수립	공·사립	2016년 유아교육계획수립	300
	교육과정컨설팅	공·사립	교육과정컨설팅	700
	신규교사 멘토링	공·사립 신규교사	신규교사멘토링	400
	유치원동아리운영	공·사립	동아리운영	1,100
	교육과정연구회운영지원	공립	프로그램공유	2,100
	교수학습자료제작	공·사립	교수학습자료제작	1,300
	유아교육활성화	공·사립	수업역량강화, 공동연구	3,000
용인	누리과정 협력적 학습공동체 운영	공·사립	학습공동체 운영	6,500
	사립원장 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사립	지구별 혁신유치원 운영	3,000
안성	유치원 밖 누리과정 학습공동체	공·사립	협동적 연구활동을 통한 정보공유 및 교육현장 문제에 대한 의견교류	2,000
김포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공립	6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4,800
	김포유아교육협력지원	공·사립	각종 연수 지원	2,515
	유치원교육과정연구지원	공·사립	교육과정연구 지원	2,000
	유치원 컨설팅 활동 지원	공·사립	유치원 컨설팅 활동 지원	310
시흥	교원직무연수지원	공·사립	교육과정 및 교사역량강화연수	950
	병설유치원운영지원	공립	액티브설치	423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공·사립	교육과정컨설팅 및 학습공동체지원	2,800
의정 부	신규교사 및 사립유치원 교원 학습공동체 사업	공·사립	교수학습방법, 생활지도 및 상담기법 등 현장중심 학급교육과정 운영연구	2,765
동두 천	지구별장학지원	공립	지구별장학지원	3,000
	교원직무연수지원	공·사립	유치원교원연수	300
양주	교원직무연수지원	공·사립교사	정보공시운영사용자연수	300

(부록 표 III-1-8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고양	유아교육지원	공·사립	장학자료개발	4,600
	고양행복유치원	단설 2개원	고양행복유치원 운영	8,000
	창의인성유치원	3학급 이상 10개원	예절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
	교원연수비지원	공·사립	유치원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6,500
구리	전문적학습공동체	공·사립교원	교원 역량강화	6,500
남양주	남양주소방서연계 안전교육(심폐소생술)	공·사립교원	소방안전교육및 컨설팅	1,380
파주	교원연수지원	관내공·사립	유치원정보공시연수	550
	교원연수지원	관내사립	사립유치원컨설팅장학	3,000
	유아교육지원	관내공·사립	유치원교육과정질관리	1,810
	유아교육지원	관내공·사립	창의적재구성연수	1,600
	유아교육지원	관내공립	유치원지구별협동장학지원	2,000
	유아교육지원	관내사립	유치원지구별협동장학지원	1,000
	학부모맞춤교육참여	관내 사립	유치원운영위원회	500
	교원인사관리	관내공·사립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2,000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관내공립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312
	연천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권역별멘토링컨설팅사업	공·사립 공·사립	교사 교육과정운영 역량강화 권역별 신규,저경력교사 역량신장지원
	유.초연계교육과정 운영사업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 협력및 연계 편성 워크숍	400
포천	교육과정 컨설팅	공립	교육과정 컨설팅	120
	평가 대상 컨설팅	공·사립	맞춤형 컨설팅	370
	유치원교육과정 점검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정 점검	560
	협력네트워크 지원	공립	권역별 학습공동체 운영	4,000
가평	교육환경 개선	공립	교육환경개선사업	20,000
	교육과정 연수 운영	공·사립	유치원교사 역량강화 연수	1,100
	유치원 장학활동 지원	공·사립	유치원 컨설팅 지원	500

9) 강원

〈부록 표 III-1-9〉 강원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춘천	두레유치원 사업	공·사립	두레유치원 운영비 지원	6,000
원주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공·사립	방과후과정 운영비, 인거비	430,000
			지원	
	돌봄유치원 운영 지원	공립	돌봄운영비	20,000

(부록 표 III-1-9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원주	유치원 교원연수	국·공·사립	유치원교원연수, 소그룹협의회 운영	1,950
	창작동화구연대회	국·공·사립 교원	창작동화구연대회 지원	1,500
강릉	유치원교육환경개선사업	공립	교실환경 개선	131,160
	기관단체 협력사업	공립	엄마품온종일돌봄	20,520
	에듀-케어센터 운영 사업	공립	에듀-케어센터운영	30,528
	문화예술체험 운영 사업	공·사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	26,000
	교원역량강화지원 사업	사립	교원 동화구연대회	50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	공·사립	교원연수 및 장학지원	2,180
	유치원 교원 연수	공·사립	교원멘토링데이 운영	2,000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	공·사립	누리과정 인성교육 지원	2,000
	방과후과정운영 지원사업	공·사립	방과후과정 담당자 연수 및 사기진작	1,505
속초 양양	교원 업무 설명회	공·사립	교원 업무 전달 및 연구회 협의	10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린이극 체험	공립	어린이극 관람 체험	2,520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상반기)	공·사립	학급별 성폭력 예방교육(이동버스 운영)	2,000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하반기)	공립	학급별 성폭력 예방교육(인형극)	2,970
	통학버스 안전운영 교직원 연수	공·사립	도로교통공단강원지부 연계 운영자, 운전자 등 연수	300
	안전 교육 교원 연수	공·사립	누리과정 표준안 성교육 방법 및 약물 처리방법 연수	100
	교원 심폐소생술 교원 연수	공·사립	속초소방서 연계 비상 시 응급처치방법 연수	100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사립	유치원 교실 속 두뇌 교육	100
	창작동화구연대회 지원	사립교원	교사 창작동화구연대회지원	700
	찾아가는 유아 성폭력 예방 안전 교육	공립	이동형(버스)체험활동(생명탄 생의이해,내몸은소중해요)	400
홍천	좋은교사,행복한 유치원지원을위한 유치원탐방및문화체험	공립	신설단설유치원 및 연구유치원탐방 미술관문화체험	960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공·사립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52,000
횡성	유치원방학중종일제강사비 (횡성군청지원)	공·사립	강사비지원	26,000

(부록 표 III-1-9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평창	방학중방과후과정 강사비 지원	공립	방학중 방과후과정 강사비 지원	28,000
양구	차량 탑승도우미 인건비 지원	공립	차량탑승도우미 인건비	6,000
	시간제기간제 교원 인건비 지원	공립	교원 보조인력 지원	12,524
	방과후과정 환경개선비 지원	공립	방과후 시설 개선	2,400
	유원장 개선비 지원	공립	유치원 유원장 시설개선	2,000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비 지원	공립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운영	6,830

10) 충북

〈부록 표 III-1-10〉 충북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청주	으뜸수업 전개	국·공·사립 교사	4개 지구별로 수업스타 수업참관 및 수업교류	568
	지구별학부모교육	유치원 학부모	지구별 학부모교육	8,000
	유아교육종합계획	전체 (132개원)	운영종합계획보급	2,400
	소규모유치원교육활동공동 운영	1학급 소규모	1학급 12개원중심	14,000
	창의인성교육활동운영	창의 인성중심	창의인성교육 지원	14,000
충주	유치원학부모교육	공·사립	지구별유치원학부모교육	2,100
	소규모유치원 공동운영비	공립	1학급이하유치원 공동운영	5,600
	체육사랑 한마당잔치	공립	학부모,유아 체육행사	8,000
제천	장학자료 개발 보급	공·사립 34개원	장학자료개발보급	800
	유아교육종합운영계획	공·사립 34개원	운영계획서 보급	400
	지구별학부모교육	공·사립 3개지구	부모교육지원	3,000
	교재교구개발	공립3개원	교재교구개발 지원	3,000
	방학중방과후과정 운영	공립4개원	방학중방과후과정 운영지원	5,000

(부록 표 III-1-10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제천	수업연구발표대회	공·사립 35개원	수업연구워크샵	1,430
	컨설팅장학 여비	공·사립 35개원	유치원컨설팅트여비	2,240
	교원 직무연수	공·사립 35개원	유치원교원 직무연수	2,790
보은	유치원학부모교육	공립	학부모교육	1,000
	소규모유치원공동활동비	공립	유치원체육대회	1,500
영동	누리과정교재교구자료확충 지원	공립	누리과정교재교구자료확충	8,400
	소규모유치원 공동활동비	공립	소규모유치원 공동활동비	9,000
	학부모교육	공립	유,초,중,고 학부모교육	2,000
	유치원교원 직무 연수	공·사립	공,사립유치원교원 직무연수	700
진천	교재교구 자료개발	공·사립	유치원교육과정 제작	320
	유치원장학자료 개발 보급	공·사립	유아교육 실천중심 장학자료 제작	510
	학부모 교육	공립	지구별 유치원 학부모 교육	1,000
	소규모유치원 공동 활동 지원	공립	소규모유치원 공동활동비 지원	3,600
괴산 증평	2015.유치원 컨설팅장학	공·사립교사	2015. 유치원 컨설팅장학	1,291
	유치원 학부모 교육	공·사립학부모	2015. 유치원 학부모 교육	1,800
	유치원 운영 종합 계획	공·사립 교사	유치원 운영 종합 계획	256
음성	교육환경 개선	공립	교육환경 개선	25,000
	교재교구개발	공립	교재교구개발 지원	13,500
	학부모교육	공립	지구별 학부모교육	5,000
	소규모유치원 교육활동공동운영	공립	소규모유치원교육활동 공동운영	5,000
단양	종합운영계획	공립	계획서 제작	192
	연합체육대회	공립	체육대회 지원	3,500
	장학자료개발보급	공립	장학자료 발간	384
	유교원직무연수	공립	역량강화 연수	2,000
옥천	독서교육 지원사업	공립	학예행사지원	500
	연합체육대회지원사업	공립	체육대회지원	3,000
	소규모유치원공동활동비	공립	소규모유치원공동활동비	5,000

11) 충남

〈부록 표 III-1-11〉 충남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천안	소규모유치원	공립	소규모 공립유치원	6,000
	벨트형협력네트워크		협력교육과정 운영	
	엄마품온종일돌봄유치원	공·사립 10개원	엄마품온종일돌봄유치원 운영비 지원	30,000
보령	유아놀이한마당축제	공·사립 33개원	제17회 유아놀이 한마당 개최	5,400
	유치원교사역량강화연수	공립교원 80명	현장체험 연수 추진	3,360
	야간돌봄전담유치원운영	돌봄교실 운영 공립 3개원	공립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6,000
	유아교육지원센터운영	보령유아교 육지원센터	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	4,000
아산	장학자료개발	공·사립	유치원 장학자료	3,200
	컨설팅 장학 운영	공·사립	유치원 컨설팅 장학	5,000
	소규모공동교육과정운영	공립	소규모유치원 교육과정내실화	3,000
	유아놀이한마당 축제 지원	공립 원아	유아놀이 한마당 축제	8,100
	유치원 학부모 연수	공·사립 학부모	유치원 학부모 연수	2,260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공립·사립 교원	유치원 교원 직무 연수	7,480
	유아교육자료개발및보급	공·사립	유아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2,000
	교재교구비지원	공·사립	교재교구비 지원	40,000
서산	노후시설환경개선	대산초병설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그늘막	58,414
		서산서림유 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78,155
	전담유치원 운영	오산초병설 유치원	환경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20,000
		동암초병설 유치원	환경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20,000
		동암초병설 유치원	노후시설 환경 개선	20,000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공·사립	100만 화소이상 cctv 교체비	28,500

(부록 표 III-1-11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서산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	서산서립유치원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5,000
	통학차량 지원	서산서립유치원의 7개원	통학차량 지원	22,901
논산 계룡	실외그늘막 설치	공립(4개원)	실외놀이 그늘막	8,000
당진	당진교육사랑 유아축제	공·사립	유아축제 개최	14,000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	공·사립	안전교육 및 전문성 역량 강화	2,960
	유치원 예비 학부모 연수	예비학부모	유치원 안내 및 부모의 역할 연수	1,020
	동화발표대회 운영 지원	동화발표대회 본선 진출자	연구비 지원	300
	유치원 장학자료발간	공립교사	유치원 장학자료 발간	1,100
	유치원 자율장학 협의회 운영	공립 교사	권역별 자율장학 협의회비 지원	2,000
금산	금산유아교육연구회 지원	공·사립교원 금산유아교육연구회	교육정보 공유 및 연구	1,000
		공·사립 교원올타리 지구운영회	누리과정 연계 수업공개 및 수업방법개선을위한컨설팅과 연수	1,000
		공·사립 교원 푸른하늘 지구운영회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자료 제작 및 창의인성교육수업연수	1,000
부여	2015년 유치원 권역별 책무성 맞춤 지원 장학	공·사립	권역별협력네트워크(중심유치원) 단위의 컨설팅장학추진	1,000
	유치원 인문학콘서트	공립	유치원 인문학 콘서트	3,500
서천	유아놀이 축제 지원	공·사립 원아 및 학부모	유아놀이 축제 및 체육대회	3,500
	교원연수지원	공·사립교사	교원연수 지원	2,164
청양	유아놀이한마당	유치원원아 및 학부모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5,000
홍성	학교운영비	공립	공립유치원 기본운영비 교부	1,015,760
	유아학비	공·사립 전체	누리과정지원	2,527,200

(부록 표 III-1-11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홍성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공·사립 전체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83,584
	유아놀이한마당 축제지원	공립전원아 및 학부모	유아놀이한마당 축제운영	5,000
	동화발표대회 운영지원	공립 교사	동화대회, 지구별 장학 운영지원	1,200
	교원 연수지원	공·사립	유치원교사 각종 연수 지원	2,180
	유아교육지원센터운영	지역청 유아교육지 원센터	센터운영 및 자료구입 경비	1,960
	유치원 컨설팅 장학 운영	유치원 컨설턴트	유치원 컨설턴트 수당 및 협의회	650
	내포유치원 신설	내포유치원	신설유치원 개교경비	414,475
예산	유아놀이 한마당 축제	공·사립	유아, 학부모 참여 체육 (여는 마당, 놀이마당, 어울림마당, 마무리마당)	9,000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	공립단설(예 산유치원)	돌봄교실 석식 제공	2,500
태안	유아놀이한마당 축제	공립	원아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4,000
	교원 연수	공·사립	교원 각 종 연수 지원	1,853
	공립 원아모집 홍보	공립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홍보	355
	유아를 위한 샌드아트 동화나들이 공연	공립	유아발달에 맞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동화 공연 실시	2,750

12) 전북

〈부록 표 III-1-12〉 전북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전주	유치원 학습동아리	공립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2,100
	독서거점유치원	공·사립	유아 독서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연구	3,150
	어울림마당 행사	공립	유아 체육활동	6,100
군산	아동권리교육	공·사립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연수	400
	유치원교원 소그룹 독서연수연수지원 (기초2회실시)	공립	유치원 교사의 교실수업개선	2,175

(부록 표 III-1-12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군산	유치원교원소그룹 독서연수연수지원 (심화2회실시)	공립	유치원 교사의 교실수업개선	2,175
	유치원교원소그룹 독서연수연수지원 (심화확장 2회실시)	공립	유치원 교사의 교실수업개선	2,175
익산	2015년유치원꿈꾸리기축제	공립	2015년 유치원 꿈꾸리기 축제	16,000
	교사수업연구동아리 지원	공립	교사 수업연구 지원	500
	연합 익산꿈나무잔치 사업	공립	소규모 공립 연합체험활동 기획 제공	6,000
	공·사립교류활동 사업	공·사립	공·사립 간 우수사례 공유로 유치원교육의균형발달도모	-
정읍	수업혁신연수 사업	공·사립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연수	5,192
	전문성향상맞춤형연수 사업	공립	수업동아리 운영	3,310
	유아교육계획발간 사업	공·사립	연간교육계획 발간	600
	컨설팅장학 사업	공·사립	수업 및 맞춤형컨설팅운영	2,025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사업	공립	유아교육 홍보	1,250
	유치원축제지원 사업	공립	오케스트라, 레이저쇼, 악기체험	5,000
남원	독서교육 및 독서거점유치원 지원	공·사립	독서교육 4개원 거점유치원운영	6,000
	교육과정재구성,수업나눔 및교원연수운영	공·사립	누리과정및 수업혁신연수	5,300
	수업연구 교사동아리 지원	공립교원수 업연구회원	누리심미수업나눔	500
	자연생태체험교사동아리지원	공·사립교원 동아리회원	남원지역자연생태체험	2,000
	남원혁신특구 유치원6개배움두레지원	공·사립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및교원연수나눔	31,200
	공·사립유치원연합행사지원	공·사립	씨앗어울림한마당 축제	4,100
	남원문화 및 역사유적지 탐방	공·사립	남원 문화및 역사, 지리 탐방	2,180
	선진유아교육기관 및 역사박물관 탐방	공립	군산중앙,임실등지 2개원방문,근대역사박물관	1,177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	공립	컨설팅 수당	700
	교원연수지원	공·사립	누리과정 심화 연수	2,610
유치원 축제지원	공·사립	공·사립유치원 음악한마당	5,800	

(부록 표 III-1-12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완주	선진유치원 방문	공립	단설유치원 탐방	600
	교원수업기술나누기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정과 숲 생태교육활동 학습지도방법연수	3,152
	아이사랑 어울 한마당	공립	음악공연-신나는세계악기여행 문화공연-샌드아트및레이저,트 론댄스	5,000
진안	축제지원	공립	공립유치원 연합체육대회 지원	3,280
	교육과정 및 교원연수지원	공립	교육과정 지원과 워크숍,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5,008
무주	교원연수지원	공립	공립유치원 교원연수(안전, 교육과정) 지원	895
	유치원축제지원	공립	공립유치원 연합체육대회 지원	1,700
장수	축제지원	공립	유치원축제지원	3,800
	교육과정및 연수지원	공립	교육과정및 연수지원	1,825
임실	공립연합행사	공립	함께 키우는 감성여행 재미있는 숲속이야기	3,000
	교사 안전교육연수	공립	안전교육연수	-
	교사 누리과정 지원연수	공립	생태교육,누리과정지원	-
	수업연구동아리지원	공립 동아리회원	유아들과 함께 키워가는 감성생태교육	1,000
순창	공립 연합축제지원	공립	공립유치원연합행사지원	4,000
	교원 연구회지원	공립교사	유치원교사연구회지원	1,000
	교사 연수 및 컨설팅	공립교사	유치원교사 연수 및 컨설팅	2,625
고창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공·사립교 원	유치원 교원 및 방과후 전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	1,445
	우수유치원 탐방 연수	공립 교원	우수유치원 탐방	1,525
	유치원 축제	공·사립	유치원독서놀이한마당	5,230
부안	유치원 자연사랑 한울마당 축제지원	단병설	숲생태 한울	3,500
	교사 연수	공·사립 단병설	누리과정 심화연수 1차	2,006
	교사 연수	공·사립 단병설	누리과정 심화연수 2차	715
	교원 동화구연대회	공·사립 단병설	유치원 교원 동화구연대회	419

13) 전남

〈부록 표 III-1-13〉 전남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목포	교육환경개선	유치원	실외놀이시설 지원	60,000
	문화예술체험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문화체험지원	7,280
	교원자율연수	교원	교원 연찬회 및 연수지원	3,490
	유아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지역유아교육사안 협의 및 심의	600
여수	실천중심장학자료개발	교육지원청	실천중심장학자료개발보급	4,600
	컨설팅장학	유치원	유치원 컨설팅장학지원	5,600
	교원자율연구동아리운영	교원	자율연구동아리 운영 지원	1,000
	연구학교운영	유치원	시지정 연구학교 운영	3,000
	연구학교	공·사립	도서실 신규 조성	30,000
	장학자료 개발	공·사립	실천중심장학자료	3,100
	컨설팅장학	공·사립	컨설팅장학	
	유아교육위원회	공·사립	유아교육위원회 2회	800
	과학체험 한마당	공립	공립유치원 과학체험 한마당	5,000
	교원연찬회	공·사립	좋은수업 실천을 위한 교원 연찬회	2,600
	실외놀이시설	공립	실외놀이시설 지원	120,000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공립	유치원 교사 연구활동 지원	2,400
	어린이날 행사 참여 지원	공·사립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	1,000
	실외놀이시설 확충 지원(순천청 확보)	공립	실외놀이시설 확충	20,000
컨설팅 지원	공립	컨설팅 수당 지원	3,000	
순천	특색 사업 지원(시보조금)	공·사립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사립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지원	45,000
	교원 연수	공·사립	교원 연찬회	1,250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공·사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	3,960
	자료 개발		자료개발	
	교수학습활동 지원	공립	교수학습활동지원	4,600
	통학차량 지원	공립	통학차량지원	196,523
	부모교육	공립	유치원부모교육	1,210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공립	유아교육위원회운영	400
	유치원교육여건개선	공립	놀이기구확충	20,000
나주	인건비 지원	사립	교원인건비보조	158,640
	방과후과정비 지원	사립	방과후과정운영비지원	15,000
	학부모교육	공사립 유치원	유치원 부모교육	1,400
	시지정 연구학교 운영	광양중동초 병설유치원	유치원 연구학교 운영	3,000
광양				

(부록 표 III-1-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광양	통학차량 지원	공립 8원	통학차량 지원금 배부	234,250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공·사립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920
	사립유치원지원	사립	인건비 및 방과후과정 운영비	453,120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광양중마초 병설유치원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6,000
담양	화장실 보수공사	담양동초병설	화장실 보수	27,265
	컨설팅 운영	담양동초 병설외 13원	컨설팅 장학 30회	3,000
	군지정 연구학교	수북초병설	연구학교발표	3,000
	조합놀이대 설치	고서초병설	실외놀이시설	20,000
	장학자료개발	교원 10명	장학자료 발간	2,268
곡성	장학자료개발보급	국·공립	유아교육 및 인성중심 자료 개발	500
	교원역량강화지원	국·공립	유치원 교원 연수	900
	부모교육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교육	700
	컨설팅 지원	국·공립	유치원 컨설팅 운영	600
구례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	국공립	실천중심 장학자료 개발	1,600
	컨설팅장학 지원	공립	컨설팅장학 수당 및 여비 지원	1,000
	유아교육 콘텐츠 지원	공립	교육용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	500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공립	교과교육 연구회 운영	700
	공립유치원 연합 행사	공립	과학 체험 마당	3,000
고흥	유치원 놀이시설 구축	공립	놀이시설 설치	20,000
	유치원교사 독서연수	공·사립	그림책 활용 연수	300
	누리과정 컨설팅장학	공·사립	요청 과제별 컨설팅	3,000
	실천중심 장학자료	공·사립	동시동화자료	3,000
	교육환경개선	공립	실외 놀이시설 설치	20,000
	연구시범학교운영	공립	군지정 유아교육 연구학교 운영	3,000
	방과후과정운영지원 사업	국·공립	꼬부랑동동 프로그램 운영	12,000
보성	환경개선 사업	국·공립	실외놀이기구확충	40,000
	유아교육여건개선	국·공립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지원	111,540
화순	군지정 유아교육 연구학교 운영	공립	독서교육 연구학교 추진	3,000
	교육과정편성운영지원자료 개발	공·사립	장학자료 개발보급	2,660
	컨설팅 지원	공립 교원	누리과정운영	1,220
	유아교육위원회	공·사립	유아교육발전방향	400
	유치원부모교육	공·사립 학부모	자녀교육역량지원	1,390

(부록 표 III-1-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화순	교원 역량강화 지원	공·사립교원	역량강화 연찬회	1,510
장흥	자율 연구회 지원	공립	오카리나, 우클렐레 연수 및 유아 지도법 연수 활동	2,200
	교원 및 학부모 연찬회	공·사립 및 학부모	그림을 통한 아이 세상 만나기	700
	교육과정지원자료 개발	공·사립	누리과정 교육과정 지원 장학자료	1,760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공립	유, 초 공동이용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20,000
	컨설팅장학	공립	누리과정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등	774
	유아교육위원회	공·사립	2015년 누리과정 운영 관련	920
	실외놀이시설지원	공립	유치원 실외 놀이시설 지원	20,000
강진	군지정연구학교	강진중앙초 병설유치원	군지정연구학교	3,000
	실외놀이시설	음천초병설 유치원	실외놀이시설	20,000
	장학자료 개발	중앙초병설 유치원의 12개원	유치원 장학자료	1,000
해남	군연구학교 지원	공립	군연구학교지원	2,000
	도연구학교 지원	공립	도연구학교지원	5,000
	장학자료 개발	공·사립	장학자료 개발 지원	1,200
	컨설팅 지원	공립	컨설팅지원	2,603
	유아교육위원회 지원	공립	유아교육위원회 지원	-
	연합운동회 지원	공립	연합운동회 지원	3,500
	교원 연찬회	공·립	연찬회 지원	620
	실외놀이시설 지원	공립	놀이시설 지원	20,000
	통학비 지원	공립	통학비 지원	162,998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공립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27,500
	아침돌봄교실 지원	공립	아침돌봄교실 지원	3,000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공·사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93,612
영암	군지정 유치원 연구학교 지원	관내유치원	연구학교	3,000
	교수학습활동지원	관내유치원	연합과학축전	5,000
	장학자료개발보급	관내유치원	실천중심장학자료	3,000
	교원역량강화지원	관내유치원	연찬회 및 연수	700
	통학차량지원	관내유치원	차량임차 및 택시비	152,458

(부록 표 III-1-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영암	부모교육	관내유치원 학부모	학부모교육	850
	유치원환경개선	관내유치원	실외 및 실내비품확충	27,000
	유치원컨설팅	관내유치원	컨설팅	2,800
무안	소규모 협동학습 운영	병설유치원 15원	권역별 체험학습 공동 운영	3,000
	군지정 연구학교 운영	1원	애향심, 고운 마음 기르기	3,000
	유아교육위원회	1위원회	유아교육 일반 협의	600
	실외놀이시설 지원	2원	놀이기구 설치	40,000
함평	유치원 장학자료 개발	공립	교육과정 운영 지원 행복수첩 발간	2,000
	연구학교	공립	함평교육지원청 지정 창의성 교육 연구학교	2,000
	컨설팅 장학	공립	맞춤형 컨설팅 장학	1,300
	실외 놀이시설 지원	공립	놀이시설 교체	40,000
	장애인 인권보호 교육	공립	유치원 장애이해 교육	160
	장애인 인권보호 교육	공립	유치원 장애이해 교육	160
	연합운동회(10월 예정)	공립	나드리 어울림 한마당	4,000
	교원자율연구회	공립	유치원 교원자율연구회 지원	1,000
영광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공립	유치원 통학차량지원	10,000
	학부모 교육 사업	공·사립	공감과소통 감정코칭 연수	700
	경제체험사업	공·사립	행복나눔 아나바다 알뜰장터	600
	유아교육위원회	유치원	유아교육전반	400
	유아교육 컨설팅	공립	유아교육전반	1,500
	군지정 연구학교 운영사업	홍농유치원	연구학교 운영비지원	3,000
	교육과정	공·사립	2015. 장학자료	3,500
	편성·운영지원자료 사업			
	교사연수(교육과정, 안전, 감정코칭)사업	공·사립	교원역량강화연수	1,200
	다문화관련 이해교육사업	공립	다문화이해교육(놀이)	500
	유아독서관련컨설팅사업	홍농유치원	유아독서 이해교육	350
장성	교원 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연수	2,436
	실천중심장학자료	공·사립	실천중심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2,326
	컨설팅장학 운영	공립	유치원컨설팅장학 지원	3,380
	군지정연구학교 운영	공·사립	유치원 군지정연구학교 운영	3,000
	자율교과프로그램운영	공·사립	자율교과교육프로그램 운영	500
	교육과정 연수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1,500
완도	군지정 연구학교운영	노화초병설 유치원	꿈同異 체험미술활동을 통한'빙그레 웃는'아이들 기르기	2,500

(부록 표 III-1-13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완도	교원 연찬회 운영	관내공·사립 교원, 학부모	교원역량 강화 및 학부모 인식 개선	1,000	
	유아교육 컨설팅 운영	21개원	교수학습 개선, 교원전문성 신장 등 컨설팅 실시	2,500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유아교육위 원회	유아교육 발전에 대한 사항 등 심의	600	
	환경개선	2개원	실외 놀이기구 확충	40,000	
	환경위생관리	1개원	음용수, 공기질, 소독 등	2,718	
	통학차량지원	20개원	차량 임차 및 택시비 지원	174,000	
	연합운동회 지원	공립	권역별 어울림 한마당운영	7,500	
	진도	교수학습활동지원	원아 및 학부모	공립유치원 연합 운동회	3,300
		교원역량강화연수지원	유치원교원	유치원 교원 대상 연수	1,280
학부모교육		학부모	자녀교육 연수	500	
유아교육위원회운영		유아교육위 원	유아교육위원수당	600	
학급증설교재교구확충비 지원		석교초	석교초 교재교구 확충	10,000	
통학차량지원		관내 공립	관내 8원 유치원	65,650	
유치원실천중심장학자료		관내공·사립	원고료 및 자료제작	2,400	
사립교원인건비보조		관내사립	학급담임수당 및 인건비보조	59,880	
사립방과후과정운영비지원		관내사립	사립방과후과정운영비지원	6,000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관내 공립 교사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600	
연구학교 운영		관내 공립	연구학교 지정 운영	2,000	
신안		신안공립연합체육대회	공립	공립유치원연합체육대회	5,000
		유아교육자료개발보급	공립	유치원실천중심장학자료	2,870
		교육여건개선	놀이시설불 합격 6원	실외놀이기구 확충	120,000
		군지정 연구학교 운영	압해서초초 병설	군지정 유치원 연구학교 운영	2,500
	유치원 컨설팅	공립	유치원 교실수업개선	900	
교원연찬회운영	유치원교사	유치원교원연수	1,450		

14) 경북

〈부록 표 III-1-14〉 경북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포항	유치원 환경개선지원사업 교원연수	국·공립	소규모 환경개선비	10,000
		공·사립 교원	수업 역량 강화 연수	12,012
	누리과정 자료 보급	공·사립 교원	교실 수업 개선 지원	4,140
경주	교원연수	공·사립 교원	교육과정및 안전연수	3,454
	유치원동화구연대회	공·사립 교원	교원창작구연동화대회	1,500
	환경개선비지원	공립	환경개선비지원	5,500
김천	교원연수회지원	공립교사	유치원교사 교육과정 연수	1,457
	공립공동교육과정운영지원	공립	공 공동교육과정 운영	25,000
안동	교원연수	공·사립	수업 역량 강화 연수	1,750
		교원		
구미	교원연수	공·사립	교육과정연수	3,380
		교원		
영주	환경개선지원	공립	유치원교육여건개선	5,000
	교육과정운영	공립	유아교육활성화	1,382
영천	교육과정연수	공·사립	수업 역량 강화 연수	4,612
상주	교육과정연수	공·사립	수업 역량 강화 연수	4,030
	교육과정운영	공립	공립유치원홍보 및 교육과정운영	6,930
경산	교원연수	공·사립	유치원연수회운영	3,380
		공·사립	교원현장연수여비	3,600
	유치원교육여건개선	공립	유치원환경개선지원	1,800
의성	교원연수	공·사립	수업 역량 강화 연수	1,430
청송	교원연수	공·사립	수업 역량 강화 연수	1,000
영양	교원연수	공·사립	교육과정연수	500
		교원		
영덕	교원연수	공·사립	교육과정연수	1,500
		교원		
청도	교원연수	공·사립	교육과정연수	710
		교원		
고령	교원연수	공·사립	교육과정연수	500
		교원		
학부모	자원 봉사자 연수	학부모	자원 봉사자 연수	1,500

(부록 표 III-1-14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성주	교원연수	공·사립 교원	교육과정연수	2,900
칠곡	환경개선 지원	공립	교실환경개선	10,000
	교원 연수	공·사립	역량 강화	4,254
	공동체험학습비 지원	공립	공동체험학습	9,300
봉화	교원연수	공립	유치원교원연수	960

15) 경남

〈부록 표 III-1-15〉 경남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거제	교육과정 교원연수	공·사립 교원	교육과정관련 교원 연수	3,984
	지역특색화 장학자료 개발	공·사립	지역특색화 자료개발	4,802
	행복학교 지원	공립교원전원 사립희망자	행복유치원 관련 연수	1,000
	장학활동 지원	공·사립	지구별장학활동비 지원	6,900
	학부모연수	공·사립학부모 (희망자)	학부모역량강화	1,426
	교원연수	공·사립	유치원교원연수운영	1,735
사천	교사연구활동지원	공·사립	학습지도연구대회	450
	건강놀이지원	공립	유아건강놀이한마당	11,600
	장학활동지원	공·사립	지구별장학협의회 운영 및 컨설팅장학 운영지원	3,700
	교원 연수	공·사립 교원	안전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	2,182
김해	학부모 연수	공·사립 학부모	자녀 소통 및 독서지도 연수	2,082
	수업연구교사발표대회	공립교사 3명	수업연구교사 연구대회	800
	교구 및 시설환경 개선	공립	노후교구 교체 및 환경 개선	60,000
	장학자료 개발	공·사립	현장체험활동 운영 지원 자료	5,990
	장학활동 지원	공·사립	지구별 자율장학 활동	2,600
진주	유치원 학부모 연수	공·사립	학부모 및 교원연수	1,426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공·사립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3,800
	인형극 공연 지원	공·사립	지역거점유치원 인형극 공연	3,000

(부록 표 III-1-15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진주	노후교재교구 및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공립	노후교재교구 및 환경개선비 지원	24,200
	교육과정개발운영	공·사립	유치원교육과정	880
양산	노후환경개선비 지원	공립 중 신청유치원	노후 교육환경개선	15,000
	교원연수지원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원연수	1,668
통영	소인수협동유치원 지원사업	국·공립	소인수유치원 협동교육과정 운영	3,000
	지구별장학협의회 지원 사업	공·사립	유치원 지구별 자율장학 운영	1,000
	유치원교육여건개선 사업	공립	유치원교재교구지원비	3,000
	학부모 및 교원 연수 지원 사업	공·사립	학부모 및 예비학부모연수 교원 직무연수	1,138 3,640
	교원연구활동 지원 사업	공·사립	수업연구교사연구대회	750
	무상급식비지원 사업	공립	공립 유아 무상급식비 지원	19,123
창원	교육과정운영	공·사립	유치원교육계획설명회	3,060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공·사립	지구별자율장학및 소규모유치원 협력장학 협의회개최	4,800
	교실수업개선지원	공립2개원	유치원수업연구교사발표대회	1,300
	장학자료개발	공·사립	장학자료개발 보급	7,180
	역량강화교원연수	공·사립	안전교육, 행복유치원연수	3,578
	교원연수	공·사립	전문성 향상 및 다양한 정보 제공	970
	교육과정 운영	공·사립	장학자료개발	3,250
	장학활동	공·사립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운영	1,000
	학부모연수	공·사립 학부모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학부모 역할 강화	820
	소인수유지원협동 교육과정운영	17개병설	병설연합 체육대회 운영	4,000
	유치원 장학활동 지원	공립	유치원 장학자료 개발	560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공립	유치원교원연수	2,086
함안	유치원 장학활동 지원	공·사립	유치원 장학자료 개발	1,210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공립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	1,050
의령	교원연수지원	국·공립	유치원 교원연수	1,092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국·공립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 지원	290
	수업지원 장학활동	국·공립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2,000
	유아교육지원	공립	유치원연합운동회용품구입비	3,000
하동	교재교구비지원	공립	유치원교재교구구입비	1,000
	교원연수지원	공립	유치원 교원연수	800

(부록 표 III-1-15 계속)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창녕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국·공립, 사립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건설팅	220
	지구별 자율장학 활동 지원	국·공립, 사립	공개수업, 연수, 정보공유	800
	유아교육 연구 지원	국·공립	수업연구교사발표 참여 지원	530
거창	교원연수지원	국공립, 사립	유치원 교원연수	694
합천	학습활동연구대회	국·공립	학습활동연구	590
	유치원동화구연대회	국·공립	동화구연	590
	교원연수지원	공립	유치원 교원연수	800
남해	유아교육연구회 지원	관내유치원	연구회 활동 지원	500
	지역거점 유치원 운영	남해유치원	병설유치원 지원	8,000
	교원직무연수	관내유치원	유치원 자율 연수	1,220

16) 제주

〈부록 표 III-1-16〉 제주 지역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사업 예산

단위: 천 원

지역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2015년 예산
제주	컨설팅장학활동지원	공·사립	수당, 여비, 전문도서구입	3,444
	교원능력개발평가	2학급이상	시스템사용료 등 운영비	14,500
	시범운영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공립	시설환경개선지원	60,000
	유치원복합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	공립	노후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	175,000
	통학편의 및 운영비지원	공립	통학편의지원	82,400
서귀포	동화구연대회	공·사립원	유치원 교원 동화구연대회	1,670
	컨설팅장학활동지원	공·사립	수당, 여비	1,050
	교원능력개발평가	2학급이상	시스템사용료 등 운영비	1,000
	시범운영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공립	시설환경개선지원	40,000
	복합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사업	공립	노후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	75,000
통학편의 및 운영비지원	공립	통학편의지원	87,200	

부록 2. 유치원 아동학대 인식조사표(교직원용)

아동학대 관련 인식조사 [교직원]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연구과제인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의 심층 분석 주제인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교직원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 됩니다.

2015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본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승진 연구원 02)398-7762 ksj3963@kicce.re.kr

I. 아동 학대의 이해

1. 아동에 대한 아래의 행동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학대가 아니다 (1)	학대가 아닌 것 같다 (2)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3)	학대인 것 같다 (4)	확실한 학대다 (5)
①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이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동					
②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동					
③ 꼬집거나 할퀴는 행동					
④ 발로 차거나 깨무는 행동					
⑤ 빗자루,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동					
⑥ 밀쳐서 신체의 일부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행동					
⑦ 몸에 물건을 던져서 맞는 행동					
⑧ 팔이나 다리를 묶는 행동					
⑨ 밀폐된 공간 속에 가두는 행동					
⑩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⑪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찌르는 행동					

2. 아동에 대한 아래의 말과 행동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학대가 아니다 (1)	학대가 아닌 것 같다 (2)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3)	학대인 것 같다 (4)	확실한 학대다 (5)
①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설을 하는 행동					
② 나가라고 하며 쫓아내는 행동					
③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행동					
④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고 말하는 행동					
⑤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					
⑥ 너처럼 못하는 애는 처음 봤다고 말하며 저존감을 상하게 하는 행동					

3. 아동에 대한 아래의 행동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학대가 아니다 (1)	학대가 아닌 것 같다 (2)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3)	학대인 것 같다 (4)	확실한 학대다 (5)
① 아이가 위험한 것(칼, 쇠파행이 등)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행동					
②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행동					
③ 어두워질 때까지 자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동					
④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행동					
⑤ 잘못된 행동을 해도 모른 체하는 행동					
⑥ 유치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동					

4. 아동에 대한 아래의 행동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학대가 아니다 (1)	학대가 아닌 것 같다 (2)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3)	학대인 것 같다 (4)	확실한 학대다 (5)
① 어른들이 옷을 벗고 신체를 보여주는 행동					
②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동					
③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동					
④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동					
⑤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동					

5. 아래 상황은 유치원 생활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서술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잘 모르겠다 (3)	어느 정도 그렇다 (4)	매우 그런 편이다 (5)
① 다른 친구에게 장난감을 던진 유아에게 “너도 한 번 장난감에 맞아 볼래?” 라고 말한다.					
② 밥을 안 먹는 유아에게 “안 먹는 친구는 놀이 못해!”라고 말하며,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다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③ 평소 깨우는 습관이 있는 유아가 친구의 팔을 깨물어 자국을 남겼다. 교사는 “친구가 얼마나 아프지 아니?”라고 말하며 깨물린 친구에게 유아의 손을 물게 한다.					
④ 평소 장난감을 잘 정리하지 않는 유아에게 다른 친구들의 장난감도 대신 정리할 때까지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⑤ 잘못된 행동을 한 유아를 5분 이상 격리시킨다(생각하는 의자, 복도 등).					
⑥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속적으로 가져오지 않는 유아를 다른 활동에도 참여시키지 않는다.					
⑦ 등·하원 시간 전후로 혼자 남아 있는 유아에게 TV를 시청하도록 하게 한 후 교사는 교실에서 30분 이상 업무처리를 한다.					
⑧ 평소 편식이 심한 유아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자 교사는 “한 번은 먹어야지”라고 말하며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 넣어준다. 그리고 토하러는 유아에게 “그냥 삼켜!”라고 말한다.					
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아에게, “참 잘했어요.”라고 말하며 교사가 유아에게 억지로 뽀뽀를 한다.					
⑩ 유아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주변 사물을 큰 소리가 나게 쾅하고 치면서 이야기 한다.(예시: 편식하는 유아가 간식을 안 먹고 있을 때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행위)					
⑪ 유아의 창작물(그림, 만들기 등)에 대해 “이 것 밖에 못해? 동생 반 아이가 한 것 같아.”라고 말한다.					
⑫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몸에 있는 상처 등 유아에게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이는 데도 교사가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⑬ 잘못을 한 유아를 앞으로 불러내어 친구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공개하여 무안하게 한다.					
⑭ 참고 같은 검검한 방을 도깨비(또는 무서운 이저씨)가 나오는 방이라고 하며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그 방에 가야한다고 겁을 준다.					

3-1. 신고절차를 어떤 형태로 알게 되었습니까?

- ① 교육 및 연수 ② 원장님 설명 ③ 신문, 방송 등을 통해
 ④ 대학의 관련 교과 수업에서 ⑤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통해
 ⑥ 기타 (서술요망)

4.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내용입니다. 문항 내용을 읽으시고 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내용	인지여부	
	알고 있음	모름
① 유치원장,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 시,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비밀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3항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있다.		
③ 유치원장,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는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이상 받아야한다.		
④ 아동학대 예방 교육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련한 법령,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⑤ 유치원장은 유아의 친권자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를 발견한 경우, 지자체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유치원장은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전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다음은 아동학대 징후 등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해당자인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확인하시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V표 하십시오.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어느 정도 그렇다 (3)	매우 그런 편이다 (4)
① 만약에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신고한다면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② 만약에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신고한다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③ 만약에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발견된다면, 나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 것이다.				
④ 만약에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한다면, 신고를 할 때 신분이 노출될까봐 부담스럽다.				
⑤ 만약에 내가 근무하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나는 다른 유치원으로 이직할 것이다.				

6. 귀하께서는 근무하는 최근 1년 동안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의 것으로 기입함)

- ① 예 (6-1번으로) ② 아니오 (7번으로)

6-1.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신체 학대 ② 정서적 학대 ③ 성 학대
 ④ 방임 ⑤ 중복 학대 ⑥ 기타

6-2.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는 누구였습니까?

- ① 이사장 ② 원장(감) ③ 교사
 ④ 보조교사 ⑤ 운전기사 ⑥ 기타 (서술요망)
 ⑥ 잘 모름

6-3.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 ① 21-25세 ② 26-30세 ③ 31-35세 ④ 36-40세
 ⑤ 41-45세 ⑥ 46-50세 ⑦ 50세 이상 ⑧ 잘 모름

6-4.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목격하였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중복응답)

- ① 모른 척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6-4-1번으로
 ② 피해 아동을 위로하는 데서 그침 ⇨ 문 6-4-1번으로
 ③ 원장 혹은 원감 등 윗분에게 말함 ⇨ 6-4-2번으로
 ④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함 ⇨ 6-4-3번으로
 ⑤ 경찰에 신고함 ⇨ 6-4-3번으로
 ⑥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임을 말하며 주의를 환기시킴 ⇨ 6-4-4번으로
 ⑦ 피해 아동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함

6-4-1. 귀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입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②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③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④ 부모나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⑤ 기타 (서술요망)

6-4-2. 원장(원감 등)에게 말하였을 때,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① 모른 척 함
 ② 신고자인 저를 오히려 소문나지 않게 주의시킴
 ③ 가해자를 엄중 문책함
 ④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시켜 놓음
 ⑤ 아동학대 신고기관 혹은 경찰서에 신고함
 ⑥ 피해 아동을 위로하는 데서 그침
 ⑦ 피해아동 부모에게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상의함
 ⑧ 기타 (서술요망)

6-4-3. 귀하가 경찰이나 아동학대신고기관에 신고하였을 때,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① 유치원의 책임으로 원장이 개별적으로 부모와 수습하도록 유도함
 ② 법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함
 ③ 기타 (서술요망)

6-4-4.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상황임을 인지시켰을 때, 가해자의 반응과 선생님(원장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7. 만약 귀하께서 아동학대 현장 혹은 징후를 발견하게 된다면,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적합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장 혹은 원감 등 관리자에게 보고함
 ② 경찰에 신고함
 ③ 피해 아동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함
 ④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임을 말하며 주의를 환기시킴
 ⑤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함
 ⑥ 피해 아동을 위로하는 데서 그침
 ⑦ 모른 척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⑧ 기타 (서술요망)
8. 귀하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나 의심징후를 발견할 때, 즉각적으로 신고의무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② 신고 이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확실한 조치
 ③ 피해자 뿐 아니라 신고자를 위한 보호적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④ 기타 (서술요망)
9. 2014-2015년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직원(원장, 교사 등)과 부모 간의 신뢰 부족
 ②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
 ③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 증가
 ④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 확대
 ⑤ 기타 (서술요망)

III. 아동학대 교육 및 예방

1. 귀하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1-1번으로) ② 아니오 (1-5번으로)

1-1. 1년에 총 몇 회를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1회 <input type="checkbox"/> ② 2회 <input type="checkbox"/> ③ 3회 <input type="checkbox"/> ④ 4회 이상
1-2. 회당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1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1-2시간 <input type="checkbox"/> ③ 2-3시간 <input type="checkbox"/> ④ 3시간 이상
1-3.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③ 어느 정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그런 편이다
1-4.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어떤 기관을 통해 받았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①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시·도 및 지역 교육청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서술요망)

1-5. 아동학대예방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을 못 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참석할 기회가 전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② 참석할 기회가 있었으나 너무 바빠서 <input type="checkbox"/> ③ 참석할 기회는 있었으나 관심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④ 참석할 방법을 몰라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서술요망)
--

2. 향후 유아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2-1번으로) ② 없다(2-2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2-1.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한다면 어떤 내용을 교육받고 싶으십니까? 적어주십시오.

2-2.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주십시오.

3. 어떤 종류의 교육 및 세미나가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학대의 개념과 내용 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③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기관에 관한 정보 ④ 아동학대 상담 및 관리방법
 ⑤ 아동의 발달 특성 ⑥ 아동학대의 척도와 기준
 ⑦ 아동학대의 실제 사례
 ⑧ 기타 (서술요망)

4.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학대아동 발견 방법 ② 학대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③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④ 학대아동에게 도움을 줄 정보(전문기관 소개 및 홍보)
 ⑤ 학대부모의 면담방법이나 부모교육 ⑥ 학대 피해 아동의 정서적 피해로 인한 문제점
 ⑦ 기타 (서술요망)

5. 귀하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잡지나 책 등의 문자매체(아동학대 관련 책자) ② 동영상 자료
 ③ 전문가 강의 ④ 워크숍
 ⑤ 기타 (서술요망)

6. 지난 4월 30일,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7. 어린이집과 같이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7-1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 7-1. CCTV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직원의 인권 때문에 ② 설치비용의 부담 때문에
 ③ 사소한 일이 크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④ CCTV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⑤ 기타 (서술요망)

8. 최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아동을 확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시 영구 퇴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십시오.

9.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 및 연수강화(인성교육 등) ② 교사양성과정 내실화
 ③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④ 부모와 교사의 신뢰 형성
 ⑤ 부모교육 및 홍보 ⑥ 아동학대 처벌 기준 강화
 ⑦ 아동학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⑧ 기타 (서술요망)

IV.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는 시설 현황과 귀하의 연령, 학력, 경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 해 주십시오.

1.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2. 연령	<input type="checkbox"/> ① 만 20세 ~ 29세 <input type="checkbox"/> ② 만 30세 ~ 39세 <input type="checkbox"/> ③ 만 40세 ~ 49세 <input type="checkbox"/> ④ 만 50세 ~ 59세 <input type="checkbox"/> ⑤ 만 60세 이상
3. 근무 지역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세종 <input type="checkbox"/> ⑨ 경기 <input type="checkbox"/> ⑩ 강원 <input type="checkbox"/> ⑪ 충북 <input type="checkbox"/> ⑫ 충남 <input type="checkbox"/> ⑬ 전북 <input type="checkbox"/> ⑭ 전남 <input type="checkbox"/> ⑮ 경북 <input type="checkbox"/> ⑯ 경남 <input type="checkbox"/> ⑰ 제주
4. 기관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①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②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③ 읍면
5. 최종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 심화과정 졸/방송대학교 졸 <input type="checkbox"/> ③ 일반대학(4년제 졸)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원 졸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6. 최종 소지 자격	<input type="checkbox"/> ① 유치원 2급 정교사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1급 정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유치원 원감 <input type="checkbox"/> ④ 유치원 원장
7. 직위	<input type="checkbox"/> ① 원장 <input type="checkbox"/> ② 원감 <input type="checkbox"/> ③ 수석교사 <input type="checkbox"/> ④ 부장교사 <input type="checkbox"/> ⑤ 교사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8. 전공	<input type="checkbox"/> ① 유아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② 교육학 <input type="checkbox"/> ③ 아동학 <input type="checkbox"/> ④ 보육학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9. 교육경력	<input type="checkbox"/> ①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10년 이상 ~ 2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20년 이상 ~ 3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30년 이상 ~ 4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⑦ 40년 이상
10. 기관 설립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공립(병설) <input type="checkbox"/> ② 공립(단설) <input type="checkbox"/> ③ 사립(법인) <input type="checkbox"/> ④ 사립사인(개인)
11. 기관 규모	<input type="checkbox"/> ① 1학급 <input type="checkbox"/> ② 2학급 <input type="checkbox"/> ③ 3학급 <input type="checkbox"/> ④ 4 ~ 5학급 <input type="checkbox"/> ⑤ 6학급 이상
12. 담당 학급	<input type="checkbox"/> ① 만 3세반 <input type="checkbox"/> ② 만 4세반 <input type="checkbox"/> ③ 만 5세반 <input type="checkbox"/> ④ 혼합연령반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유치원 아동학대 인식조사표(학부모용)

아동학대 관련 인식조사 [학부모]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연구과제인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의 심층 분석 주제인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학부모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 됩니다.

2015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본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승진 연구원 02)398-7762 ksj3963@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에 대한 아래의 행동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학대가 아니다 (1)	학대가 아닌 것 같다 (2)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3)	학대인 것 같다 (4)	확실한 학대다 (5)
① 손이나 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동					
②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동					
③ 꼬집거나 할퀴는 행동					
④ 발로 차거나 깨무는 행동					
⑤ 빗자루,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동					
⑥ 밀쳐서 신체의 일부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행동					
⑦ 몸에 물건을 던져서 맞는 행동					
⑧ 팔이나 다리를 묶는 행동					
⑨ 밀폐된 공간 속에 가두는 행동					
⑩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⑪ 핀이나 뾰족한 도구 등으로 찌르는 행동					

2. 아동에 대한 아래의 말과 행동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학대가 아니다 (1)	학대가 아닌 것 같다 (2)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3)	학대인 것 같다 (4)	확실한 학대다 (5)
① 이 원수야 등과 같은 욕설을 하는 행동					
② 나가라고 하며 쫓아내는 행동					
③ 너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행동					
④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고 말하는 행동					
⑤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					
⑥ 너처럼 못하는 애는 처음 봤다고 말하며 저존감을 상하게 하는 행동					

3. 아동에 대한 아래의 행동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학대가 아니다 (1)	학대가 아닌 것 같다 (2)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3)	학대인 것 같다 (4)	확실한 학대다 (5)
① 아이가 위험한 것(칼, 쇠파이프 등)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행동					
②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행동					
③ 어두워질 때까지 자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동					
④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행동					
⑤ 잘못된 행동을 해도 모른 체하는 행동					
⑥ 유치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동					

4. 아동에 대한 아래의 행동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학대가 아니다 (1)	학대가 아닌 것 같다 (2)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3)	학대인 것 같다 (4)	확실한 학대다 (5)
① 어른들이 옷을 벗고 신체를 보여주는 행동					
②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동					
③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동					
④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행동					
⑤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행동					

5. 아래 상황은 유치원 생활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서술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귀하가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잘 모르겠다 (3)	어느 정도 그렇다 (4)	매우 그런 편이다 (5)
① 다른 친구에게 장난감을 던진 유아에게 “너도 한 번 장난감에 맞아 볼래?” 라고 말한다.					
② 밥을 안 먹는 유아에게 “안 먹는 친구는 놀이 못해!”라고 말하며,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다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③ 평소 깨우는 습관이 있는 유아가 친구의 팔을 깨물어 자국을 남겼다. 교사는 “친구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라고 말하며 깨물린 친구에게 유아의 손을 물게 한다.					
④ 평소 장난감을 잘 정리하지 않는 유아에게 다른 친구들의 장난감도 대신 정리할 때까지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⑤ 잘못된 행동을 한 유아를 5분 이상 격리시킨다(생각하는 의자, 복도 등).					
⑥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속적으로 가져오지 않는 유아를 다른 활동에도 참여시키지 않는다.					
⑦ 등·하원 시간 전후로 혼자 남아 있는 유아에게 TV를 시청하도록 하게 한 후 교사는 교실에서 30분 이상 업무처리를 한다.					
⑧ 평소 편식이 심한 유아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자 교사는 “한 번은 먹어야지”라고 말하며 수저를 입으로 가져가 넣어준다. 그리고 토하려는 유아에게 “그냥 삼켜”라고 말한다.					
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아에게, “참 잘했어요.”라고 말하며 교사가 유아에게 억지로 뽀뽀를 한다.					
⑩ 유아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주변 사물을 큰 소리가 나게 쾅하고 치면서 이야기 한다.(예시: 편식하는 유아가 간식을 안 먹고 있을 때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는 행위)					
⑪ 유아의 창작물(그림, 만들기 등)에 대해 “이 것 밖에 못해? 동생 반 아이가 한 것 같아.”라고 말한다.					
⑫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몸에 있는 상처 등 유아에게 아동학대의 징후가 보이는 데도 교사가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⑬ 잘못된 행동을 한 유아를 앞으로 불러내어 친구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공개하여 무안하게 한다.					
⑭ 창고 같은 낯선 방을 도깨비(또는 무서운 아저씨)가 나오는 방이라고 하며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그 방에 가야한다고 겁을 준다.					

3-2.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는 누구였습니까?

- ① 이사장 ② 원장(감) ③ 교사
 ④ 보조교사 ⑤ 운전기사 ⑥ 기타 (서술요망)
 ⑥ 잘 모름

3-3.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 ① 21-25세 ② 26-30세 ③ 31-35세 ④ 36-40세
 ⑤ 41-45세 ⑥ 46-50세 ⑦ 50세 이상 ⑧ 잘 모름

3-4.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목격하였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중복응답)

- ① 모른 척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3-4-1번으로
 ② 피해 아동을 위로하는 데서 그침 ⇨ 문 3-4-1번으로
 ③ 원장 혹은 원감 등 관리자에게 말함 ⇨ 3-4-2번으로
 ④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함 ⇨ 3-4-3번으로
 ⑤ 경찰에 신고함 ⇨ 3-4-3번으로
 ⑥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임을 말하며 주의를 환기시킴 ⇨ 3-4-4번으로
 ⑦ 피해 아동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함

3-4-1. 귀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 아동을 위로하는 데서 그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② 신고한다면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③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기관)를 알지 못해서
 ④ 부모나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⑤ 기타 (서술요망)

3-4-2. 원장(원감 등)에게 말하였을 때,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① 모른 척 함
 ② 신고자인 저를 오히려 소문나지 않게 주의시킴
 ③ 가해자를 엄중 문책함
 ④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시켜 놓음
 ⑤ 아동학대 신고기관 혹은 경찰서에 신고함
 ⑥ 피해 아동을 위로하는 데서 그침
 ⑦ 피해아동 부모에게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상의함
 ⑧ 기타 (서술요망)

3-4-3. 귀하께서 경찰이나 아동학대신고기관에 신고하였을 때,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① 유치원의 책임으로 원장이 개별적으로 부모와 수습하도록 유도함
 ② 법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함
 ③ 기타

3-4-4.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상황임을 인지시켰을 때, 가해자의 반응과 귀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4. 만약 귀하께서 아동학대 현장 혹은 징후를 발견하게 된다면,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적합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장 혹은 원감 등 관리자에게 보고함
 - ② 경찰에 신고함
 - ③ 피해 아동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함
 - ④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임을 말하며 주의를 환기시킴
 - ⑤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신고함
 - ⑥ 피해 아동을 위로하는 데서 그침
 - ⑦ 모른 척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⑧ 기타(서술요망)
5. 신고의무자가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나 의심징후를 발견할 때, 즉각적으로 신고의무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 ② 신고 이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확실한 조치
 - ③ 피해자 뿐 아니라 신고자를 위한 보호적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 ④ 기타 (서술요망)
6. 2014-2015년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직원(원장, 교사 등)과 부모 간의 신뢰 부족
 - ②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
 - ③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 증가
 - ④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 확대
 - ⑤ 기타 (서술요망)

III. 아동학대 교육 및 예방

1. 귀하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1-1번으로)
 - ② 아니오 (1-5번으로)

<p>1-1. 1년에 총 몇 회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① 1회 <input type="checkbox"/> ② 2회 <input type="checkbox"/> ③ 3회 <input type="checkbox"/> ④ 4회 이상
<p>1-2. 회당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① 1시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1-2시간 <input type="checkbox"/> ③ 2-3시간 <input type="checkbox"/> ④ 3시간 이상
<p>1-3.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③ 어느 정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그런 편이다
<p>1-4.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어떤 기관을 통해 받았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①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시·도 및 지역 교육청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서술요망)

<p>1-5. 아동학대예방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을 못 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① 참석할 기회가 전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② 참석할 기회가 있었으나 너무 바빠서 <input type="checkbox"/> ③ 참석할 기회는 있었으나 관심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④ 참석할 방법을 몰라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서술요망)
--

2. 향후 학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2-1번으로) ② 없다(2-2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2-1.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한다면 어떤 내용을 교육받고 싶으십니까? 적어주십시오.

2-2.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주십시오.

3. 어떤 종류의 교육 및 세미나가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학대의 개념과 내용 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③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의뢰기관에 관한 정보 ④ 아동학대 상담 및 관리방법
 ⑤ 아동의 발달 특성 ⑥ 아동학대의 척도와 기준
 ⑦ 아동학대의 실제 사례
 ⑧ 기타 (서술요망)

4.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학대아동 발견 방법 ② 학대아동 발견 후 대처방법
 ③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법 ④ 학대아동에게 도움을 줄 정보(전문기관 소개 및 홍보)
 ⑤ 학대부모의 면담방법이나 부모교육 ⑥ 학대 피해 아동의 정서적 피해로 인한 문제점
 ⑦ 기타 (서술요망)

5. 귀하가 생각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잡지나 책 등의 문자매체(아동학대 관련 책자) ② 동영상 자료
 ③ 전문가 강의 ④ 워크숍
 ⑤ 기타 (서술요망)

6. 지난 4월 30일,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7. 어린이집과 같이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7-1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 7-1. CCTV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직원의 인권 때문에 ② 설치비용의 부담 때문에
 ③ 사소한 일이 크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④ CCTV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⑤ 기타 (서술요망)

8. 최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시 영구 퇴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십시오.

9.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 및 연수강화(인성교육 등) ② 교사양성과정 내실화
 ③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④ 부모와 교사의 신뢰 형성
 ⑤ 부모교육 및 홍보 ⑥ 아동학대 처벌 기준 강화
 ⑦ 아동학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⑧ 기타 (서술요망)

IV.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사항에 V표 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아이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②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2. 응답자 연령	<input type="checkbox"/> ① 만 20세 ~ 29세			<input type="checkbox"/> ② 만 30세 ~ 39세			<input type="checkbox"/> ③ 만 40세 ~ 49세			
	<input type="checkbox"/> ④ 만 50세 ~ 59세			<input type="checkbox"/> ⑤ 만 60세 이상						
3. 부모 직업	직업 유형	농/임/어업	자영업	판매/영업/서비스직	생산기능/노무직	사무관리/전문직	주부	학생	무직/퇴직/기타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부모 최종 학력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석사) 졸업	대학원(박사) 졸업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5. 거주 지역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세종 <input type="checkbox"/> ⑨ 경기 <input type="checkbox"/> ⑩ 강원 <input type="checkbox"/> ⑪ 충북 <input type="checkbox"/> ⑫ 충남 <input type="checkbox"/> ⑬ 전북 <input type="checkbox"/> ⑭ 전남 <input type="checkbox"/> ⑮ 경북 <input type="checkbox"/> ⑯ 경남 <input type="checkbox"/> ⑰ 제주									
6. 가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맞벌이 <input type="checkbox"/> ② 외벌이									
7. 이용 기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공립(병설)				<input type="checkbox"/> ② 공립(단설)					
	<input type="checkbox"/> ③ 사립(법인)				<input type="checkbox"/> ④ 사립사인(개인)					
8. 재원 반	<input type="checkbox"/> ① 만 3세반			<input type="checkbox"/> ② 만 4세반			<input type="checkbox"/> ③ 만 5세반			
	<input type="checkbox"/> ① 만 3-4세 혼합반			<input type="checkbox"/> ② 만 4-5세 혼합반			<input type="checkbox"/> ③ 만 3-5세 혼합반			
9. 월 평균 가구 소득 (세금 공제 전 금액)	월 소득	150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600만원 미만	600만원 ~700만원 미만	700만원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아동학대 관련 심층면담 분석 내용

2015년 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는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의 심신고도 증가되고 있어 하루 평균 20여 건이던 전화는 50여 건으로 급증했다(EBS 뉴스, 2015. 1. 20)으며, 2014년 부산의 사립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뉴스1, 2014. 7. 24) 이후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유치원의 아동학대에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유치원 아동학대 현황과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형별 아동학대 사례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를 학대유형에 따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층면담 결과,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이전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유치원에서 벌어진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들은 많지 않았다. 다만 예전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부 교사들이 훈육의 방법으로 사용하던 체벌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경우가 있었다. 참고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신체학대 54.9%, 중복학대 20.9%, 정서학대 14.3%, 성학대 6.6%, 방임 3.3% 순으로(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신체학대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신체학대의 발생 빈도가 높은 상황이다.

가) 신체학대

신체학대 사용도구로는 각종 막대기, 자, 회초리 등 일상적인 도구가 신체학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최근 끈, 바늘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끈도 있었습니다. 끈을 묶어요. 좀 산만하다 하는 아이들을 끈을 묶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팀장)

예전에는 가벼운 체벌로 인식되던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조사에서 학대 행위자들

이 훈육이나 체벌의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김미숙 외, 2015),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임교사 때 경력이 많은 교사가 계셨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럴게도 하는구나.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주 오래 전인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시더라고요. (B 유치원, 2015.06.02. 교사 1)

나)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거부 또는 경멸적 행위, 공포감 조성 행위, 고립시키는 행위, 착취 및 타락시키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Trickett, Mennen, Kim, & Sang, 2009).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교사가 자신의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높기 때문에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교사의 감정이 실린 어투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아이를 맞이할 때 또 다른 아이가 와서 타이밍을 놓친 것이 차별은 아닌데, 아동학대라는 식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다 보고 싶다고 신고가 들어온 적은 있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팀장)

선생님들은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좀 더 다정하거나 세세하게 챙겨주는 부분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큰 애 같은 취급? 그런 게 좀 아쉽다고 해야 하나. 명령조? 사람이니까 당연히 감정이 실릴 수가 있는데, 이거 하지 말랬잖아! (C 유치원, 2015.06.03. 부모2)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정서학대의 경우,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에서 교사와 부모의 시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자칫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 발견 및 판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 방임

방임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으로 구분(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 2015)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중복학대(43%) 다음으로 방임(26.2%)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는 달리 어린이집에서의 방임은 전체의 3.3%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나타났으며, 이는 기관에서의 방임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교직원이나 부모는 언론에 보도된 사례 외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의 방임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산책을 가는데 유치원에 애만 놓고 가던가 하는 것들이라 그 외에는 방임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방임은 거의 건이 많지는 않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대리1)

아이들이 성 놀이하는데 왜 내버려뒀냐. 방임 아니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대리1)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에 의하면(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썩은 음식, 불균형적 음식을 행위자가 아동에게 제공했던 돌봄(교육적) 방임이 보고된 바 있다.

라) 성학대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 2015)로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현장에서 얘기된 경우도 많지 않았다.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어린이집 사례를 통해서 아동의 몸, 특히 생식기를 만지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이 학대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해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성학대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간혹 가다가 교사나 운전기사가 신고 되기도 하죠.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대리1)

이사장님도 신고 되기도 하고요. 성이 직접적일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소변을 보는데 아이들 앞에서 닦아줬다고 성 노출 아니냐고 신고 될 수도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팀장)

2)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아동학대 가해자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변인 및 부모변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동학대가 부모, 아동, 가족의 특성, 거주지역과 문화 등의 요소에 기

인하기 때문이다(송길연·장유경·이지연·정윤경, 2005). 아동학대를 하는 가해자들은 반복적으로 공포나 분노, 거절당한 경험이 있고, 자존감이 낮으며, 대인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고독하며,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아이를 원하며, 신뢰감이 부족하고, 부모로서 미숙하고, 가혹한 처벌을 훈육으로 사용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스트레스를 잘 참아내지 못하고, 약물이나 인터넷 등 쾌감을 주는 행위에 중독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닌다(Marotz, 2012). 교사가 지닌 교육신념의 유형이 기관 내 아동학대의 유발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Abrahams, Casey, & Daro, 1992; 윤호열, 2014에서 재인용)에 따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을 설명하는 변인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해아동 특성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피해아동 특성은 적응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전체의 35.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특성이 없는 경우도 15.9%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한편, 가해자(학대부모) 특성으로는 자신이 학대받는 과거력, 부모역할의 사전 경험 부재,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홍강희, 2015).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본 피해아동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아동의 행동 및 적응의 문제가 교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 의심을 받는 선생님한테 그 아동에 대해 물어보면, 좀 까다로운 아이였다, 너무 산만했다는 평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적응도 잘 못했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대리2)

해가 바뀌면 교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어떤 아이가 오느냐. 유명한 아이가 오면 맡았을 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팀장)

나)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어린이집에서의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의 평균 연령은 39.57세로 36-40세, 41-45세에 해당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심층면담을 통해 유치원

에서의 아동학대 가해자의 연령 특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연령에 따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연령 교사일수록 부모와의 관계 형성, 양육에 대해 이해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약간 무지하셨던 그런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다고 하면 수긍은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만 학대행위자로 신고가 되는 건 아니고 연령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대리2)

연륜 있으신 분들이 확실히 케어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구요. 취업으로 인해서 유아교육 시스템이 맞지 않아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팀장)

3) 아동학대와 훈육의 차이에 대한 인식

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아동이 '훈육'의 이름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아동의 지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2010). 즉, 체벌은 아무리 정도가 가법다고 해도 물리적 폭력이 사용되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야기하도록 의도된 모든 처벌로 정의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006). 미국 소아과 협회의 체벌 금지 이유는 체벌이 쉽게 학대로 발전되기 쉬우며,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행동수정의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는 연구 결과(Gershoff, 2002)에 근거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에서 학대행위자들이 훈육이나 체벌의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진술(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3)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층면담 결과, 교사와 부모가 생각하는 예전에 비해 훈육과 학대에 대한 경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신체적인 학대는 아니어도 유치원도 정서적인 학대는. 왜 밥 안 먹으면 너 동생 반에 보낼 거다. 이러는 거 정서적 학대라고 하더라고요. 몇 살 때까지 이거해라 하고 카운트하는 것도 정서학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학대를 하고 살았던 거죠. (C 유치원, 2015.06.03. 원감)

기본적인 사랑의 매는 없어요. 때리다보면 감정이 실려요. 초반에 남자에 돌이 물고 뜯고 싸우니까 저도 매를 들었었는데, 이게 한두 번 때리다보면 습관이 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무조건 매를 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체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A 유치원, 2015.06.01. 부모1)

정신적인 아이들의 수치심이나 몸에 가해지는 학대가 저는 학대라고 보고 훈육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는 게 훈육이 아닐까 하거든요. (A 유치원, 2015.06.01. 부모3)

아이 기준으로는 잘못된 게 아닌데 선생님 기준에는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깐 선생님도 내가 이걸 빨리 해치워야하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B 유치원, 2015.06.02. 부모1)

신체학대는 아니더라도 유치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훈육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던 타임아웃 같은 방식에 대해서도 훈육의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으나 타임아웃을 사용하더라도 시간 기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얼마 전예요. 생각하는 의자였어요. 방과후니까 혼합연령이잖아요. 담임선생님이 아닌데 혼합연령이니까 힘들잖아요. 애는 이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문제를 삼더라고요. 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랜 장시간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도 생각하는 의자를 써야할지 판단이 안서요. 솔직히. (B 유치원, 2015.06.02. 원장)

교사들이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어 하는데 그게 2분이라는 기준을 넘어가면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성인 입장에서 5분이야 참 쉽지만, 유아 입장에서 2분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A 유치원, 2015.06.01. 교사1)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었다던가. 그게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해둔 시간이 있겠지만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방치가. (B 유치원, 2015.06.02. 부모1)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교사로서 부담감이 큰 상황으로 식사지도 등 일상생활습관 등의 지도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 보도된 김치를 안 먹는 아이에 대해서 교사가 보였던 행동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교사는 그걸 먹는 게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A 유치원, 2015.06.01. 교사1)

올해 식사지도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김치 안 먹던 아이가 먹게 되고, 나물 안 먹던 애들이 먹게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그냥 먹이지 말아주세요. 버려주세요. 하니까 그런데 또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되니까요. (C 유치원, 2015.06.03. 교사1)

나)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교직원과 부모 모두 훈육과 학대의 구분은 아이의 입장에서 기분과 감정이 고려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개별 아동의 발달 수준, 성향 등을 고려해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정서적 학대라든지 말로 하는 학대는 드러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아이의 감정과 기분을 고려했을 때 그걸 말하고 전달하면 지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이의 기분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교사가 좋은 말을 하더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A 유치원, 2015.06.01. 교사1)

아동학대 기준에 이 아이가 기분 나빴으면 학대다 폭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더 조심스럽고 교육하는 입장에서 터치하거나 제지하거나 하지 않을 수는 또 없는 거니까. (A 유치원, 2015.06.01. 원장)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통제범위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고, 그 훈육의 제재라는 게 아이가 다소 발달이 느낄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여 질 때는 잘못된 게 될 수 있잖아요. (B 유치원, 2015.06.02. 부모1)

4) 아동학대 발생 원인

가) 낮은 사회적 인식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인식이 부모의 우려와 요구를 가중시키고, 결국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영유아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원인은 결국 자격 및 처우 등 근로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본보기보다는 베이비시터라고 부모개념으로 보는...초중고 선생님을 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더 내 돈 내고 내 아이 맡겼는데 똑바로 안보냐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대리2)

마녀사냥을 당하기 참 쉬운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성직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유아교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A 유치원, 2015.06.01. 교사1)

초등은 교사 수나 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아무래도 신고가 그렇게 어린이집보다... 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학대라고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대리1)

근무 여건이.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있고, 보수도 너무 적고. 그게 더 크죠. 환경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워낙에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프라이드도 강하지만, 누리고 있는 권리도 크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잘하는 거예요. (C 유치원, 2015.06.03. 원감)

영유아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보육교사는 교사자격 취득이 쉽고, 단기양성과정을 이수해서 돈벌이를 하고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도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 교육보다는 노동에 가까운 일로 치부하기 때문이라는 부모의 의견도 있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벌이로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친척이 보육교사인데 40이 넘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A 유치원, 2015.06.01. 부모2)

어쩌면 그 분들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교육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B 유치원, 2015.06.02. 부모1)

너무 쉽게 선생님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너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게 사명감이나 책임감은 없는 것 같아요. (B 유치원, 2015.06.02. 부모1)

나) 손쉬운 교사자격 취득

양성과정의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기 쉽다는 인식이 교사에 대한 자질 문제에 대한 우려로 표명되기도 한다. 교사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성기간이 필요하며, 교사자격 강화를 전제로 전반적인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시작점이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어떤 분은 아카데미를 나오고 어떤 분은 원장선생님을 알아서 40-50대에 오시면, 그 분들은 양육을 해봐서 또 자기들 말이 맞고. 배운 교사 분들은 이걸 아닌 거 같고 그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또 신입교사들은 위에 하던 방식대로 받게 되면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팀장)

처우가 개선되려면 선생님들도 자격이나 자질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너무 무분별하게 할 거 없는데 어린이집 선생이나 할까 하는 그런 자격이나 자질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처우 개선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대리2)

교사가 되려면 1년이나 6개월의 단기과정이 아니라 최소한 3~4년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생각해요. (A 유치원, 2015.06.01. 교사1)

다) 열악한 근로환경(업무과중, 장시간 노동 등)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유치원 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5.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길며, 사립유치원의 근무시간은 법인유치원이 49.2시간, 사립유치원이 48.2시간이었다(김은영·장혜진·조혜주, 2013). 사립유치원 교사의 장시간 근무, 기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생님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들이 너무 많으시다보니까 꾸중 받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단체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B 유치원, 2015.06.02. 부모1)

제가 자아비판을 하나 하면, 행사가 없어야 해요. 인천사건도 행사예요. (B 유치원, 2015.06.02. 원장)

교사 대 유아 비율은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현재 유치원은 시도 자체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상황이며,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은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법적 기준(만 3세 15명, 만 4, 5세 20명)을 초과하고 있다. 심층면담 대상(현장전문가, 교사, 부모)의 대부분이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과다한 것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지금 아동 수가 3세: 1대 18, 4세: 1대 24, 5세: 1대 28. 아무리 아동이 적어도, 교사가 두 명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적어도. (C 유치원, 2015.06.03. 교사1)

최대 24명 까지라는 건 최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최대를 수용하시죠. 그리고 투담임제를 하는 곳은 좀 괜찮다고. CCTV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05.27. 대리1)

아동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애가 셋인데 각자 성향이 다른 애들 26명이라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C 유치원, 2015.06.03. 부모3)

아이의 인원 당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B 유치원, 2015.06.02. 부모2)

여건이 허락하는 사립유치원들은 학급당 유아 수 기준에 따라 학급 편성을 하고, 정규교사나 보조교사가 함께 투입되는 방식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도 보조교사 등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학급당 유아 수의 법적 기준에 대한 중앙정부 수준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연구보고 2015-22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유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47-9 93370